

2011.9.30.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관련 수험안내서

“더 나은 미래 ! 더 큰 비전 ! 꿈을 가진 공무원을 찾습니다.”



행정안전부

1장 공직을 향한 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1. 행정안전부 채용담당부서 안내 12
2. 채용시험의 정의 13
3.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16
4. 수험정보 확인 및 문의처 19

2장 시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5.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 31
6. 시험 과목 34
7. PSAT(공직적격성평가)란? 38
8.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41
9. 한국사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7
10. 시험의 단계·방법 및 문제유형 48
11. 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51
12. 시험계획 및 시험장소 등 공고 53

3장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입니다

13. 응시결격사유 56
14. 국적 62
15. 학력 및 경력 64
16. 응시연령 65
17. 신체조건 67
18.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71

4장 이제, 응시원서 접수가 쉬워집니다

19.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안내 74
20. 응시원서 작성방법 75
21. 응시수수료 안내 및 결제방법 83
22. 원서접수 확인·취소 및 응시표 출력 86

5장 다양한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공직환경이 열립니다

23. 지역별 구분모집제 93
24. 장애인 구분모집제 100
25.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103

목 차

- 25.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 및 신청 안내 105
- 2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23
- 27. 지방인재채용목표제 126

6장 채용시험 가산특전,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 28. 채용시험 가산특전 132

7장 공정한 룰 ! 누구나 지켜야만 합니다

- 29. 응시자 준수사항 148
- 30.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처리 155

8장 시험시행 및 채점, 이렇게 진행됩니다

- 31. 응시지역 및 시험장 선정 159
- 32. 법전 배부 및 계산기 사용여부 161
- 33. 문제 공개 및 정답확정 절차 163
- 34. 채점방식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165
- 35. 면접시험 등록 및 서류제출 168
- 36.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171
- 37. 교정직 실기시험(체력검사) 실시 174
- 38. 면접시험 운영방식 및 합격자 결정기준 175
- 39. 최종합격자 발표 및 성적·통계 안내 182
- 40. 합격증명서 발급 184

9장 공직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 41. 채용후보자 등록·임용 및 임용유예 187
- 42. 시보임용 및 신규자 교육훈련 197

**1. 공직을 향한 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 채용시험 담당부서 현황



□ 부서별 주요 업무내용(업무흐름별)

구 분		주요업무	전화번호(02)
채용관리과	총괄담당	시험계획수립, 원서접수	751-1321~4
	집행담당	시험시행 준비 및 시험관리	751-1327~31
시험출제과	출제담당	시험문제 출제 및 면접위원 선정	2100-8539~8557
채용관리과	채점담당	답안지 채점 및 합격자발표, 통계관리	751-1338~43
인력기획과	제도담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시험제도	2100-8511~8512
	충원담당	채용후보자 등록, 임용유예	2100-8509~8510
균형인사 정보과	양성평등담당	양성평등채용목표제	751-1681
	지역균형· 저소득층 담당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저소득층 구분모집	751-1676
	장애인 담당	장애인 구분모집	751-1682

□ 찾아오시는 길



□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거쳐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 방법으로 시험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5조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는 공개경쟁(open competition)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특별채용시험

행정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기에 부적당하거나 공개경쟁 채용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필요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방법입니다. 특별채용의 요건 및 시험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채시험과 특채시험 ■

구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보다 우수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보장이 증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채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관련직위 또는 직무에 적합한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제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공무원법」 제28조, 31조, 35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2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30조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 학위, 근무경력 등 12가지의 자격요건별 특별채용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하한연령 외 자격제한 없음(일부직렬은 특정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지정/시험령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자격제한
시험 실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이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 6급 이하 14개직렬 중앙선관위, 기상·통계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소속장관이 실시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직, 기술직) 및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칭함

Q	【특채 시험과목】 9급 특채의 경우, 9급 공채시험의 시험과목과 동일한가요?
A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를 보시면 직렬별·계급별로 공채 시험과목과 특채 시험과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채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시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기관에서 발표하는 시험공고문의 통해 시험과목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Q	【교정직 특채】 교정직 특별채용 실시 여부 및 시험과목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현재, 6급 이하 특별채용시험 실시권한이 각 부처에 위임되어, 교정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은 법무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서 특별채용 시험과목을 자체적으로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교정기획과/02-2110-3364~5)로 직접 문의하거나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시험공고문 등을 통해 특별채용 실시여부 및 시기, 시험과목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Q	【특채시험 정보】 보건직 채용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A	우리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5급 이상 및 6급 이하 14개직렬(류)의 공채시험만을 실시하며, 나머지 6급 이하 직렬(류)에 대한 공채시험과 모든 직급의 특별채용시험은 소속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직의 경우 대부분 보건복지부 등에서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므로 보건직에 대한 채용정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부처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만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문의처는 p26~27 참조
Q	【현직공무원 특채응시】 현직공무원도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A	당해시험의 응시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현직공무원도 공채시험 또는 특채시험에 당연히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p>【가능직 특채자격 요건】 기능직 사무원 10급을 채용하면서, 직업상담사2급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p>
A	<p>「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의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를 참조하여 자격증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의 자격증소지자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렬·직류별로 특별채용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능직 사무원의 특채 자격요건으로 업무연관성이 없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응시자격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됩니다.</p>
Q	<p>【사회복지직】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을 늘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p>
A	<p>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일선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고 있으므로 광역 시·도의 인사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p>

□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시험

○ 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구분		직렬(류)	비고
5급 공개 경쟁채 용시험	행정직	행정직(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 교육행정)·사회복지직·교정직·보호직·검찰 사무직·출입국관리직	이 표에서 제시된 직렬 (류)이외의 직렬(류)은 수요 발생시에 각 부처 에서 직접 학위, 자격 증 등 응시요건을 한정 하여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기술직	공업직(일반기계·전기·화공)·농업직(일반농업)· 환경직(일반환경)·시설직(일반토목·건축)·전산 직(전산개발)·통신직(통신기술)·임업직(산림자 원)·해양수산직(일반수산)·기상직(기상)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외교통상직		

○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구분		직렬(류)	비고
7·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행정직	행정직(일반행정·교육행정)·세무직·관세직·통계직· 사회복지직·감사직·교정직·보호직·검찰사무직·마약 수사직·출입국관리직·외무영사직	이 표에서 제시된 직 렬(류) 이외의 직렬 (류)은 각 부처에서 수요발생시 공채 또 는 특채로 필요인원 을 선발하고 있음
	기술직	공업직(일반기계·전기·화공)·농업(일반농업)·임업 (산림자원)·시설직(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 설·도시교통설계)·전산직(전산개발)·방송통신직(전 송기술)	

○ 기타시험

- 견습직원(지역인재, 기능인재) 선발시험
-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 소속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특별채용시험

□ 소속장관이 실시하는 시험

○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기타의 채용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 중앙선관위(일반행정), 기상청(기상직), 통계청(통계직) 등
- 특별채용시험 : 직렬·직급에 상관없이 수요 발생시 수시로 시험 공고·선발

【참고】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법령 및 담당기관

구 분			관련법령	담당기관	
국가 공무원	행정부	일반직	3~9급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행정안전부 소속장관(각 부처)
			연구·지도직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소속장관(각 부처)
		특정직	검사	검찰청법 사법시험법	법무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외교통상부 중앙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법	경찰청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법	소방방재청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교육과학기술부
			군인	군인사법	국방부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
	경호공무원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실경호처	
	기능직	1~10급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소속장관(각부처)	
	입법부	일반직/기능직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국회사무처	
	사법부	일반직/기능직	법원공무원규칙	법원행정처	
		판사	법원조직법 사법시험법	법무부 법원행정처	
중앙 선관위	일반직/기능직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재판소	일반직/기능직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시·도청, 시·도교육청)	

Q	【다른 공채시험 기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시험 외에 공채시험을 주관하는 부처가 있나요?
A	우리부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주관하는 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직렬), 기상청(기상직렬) 등입니다. 다만, 공채시험의 실시 여부는 해당부처의 인력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도별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에서는 입법고시 및 8·9급 국회공무원을,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등기직 공무원을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직 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등)은 해당기관별로 채용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Q	【기능직 공채시험】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기능직 공무원 공채시험은 실시하지 않나요?
A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결원수요 발생시 시험실시기관에서 직무성격을 고려하여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모집요강을 정해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발표하는 시험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야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나 나라일터(http://goobs.mopas.go.kr)에서 수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지방직 공무원 채용】 지방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수험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 문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도에서 실시하는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시·도청(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 문의】 경기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12월 안에만 주민등록을 옮기면 시험응시가 가능한지요?
A	우리부에서는 5(등)급, 7급 및 9급 국가직공무원 공채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기도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은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의 거주지 제한규정은 각 지자체별로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응시자격기준은 경기도청 인사행정과(031-249-4045~7)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 2013년부터 본격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요건에서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단일화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 • 특별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1월 1일로 동일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 시험 담당부서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02-2100-3777) 문의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

- 연도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
- 5·7·9급 공채, 특채·전직시험 등 시험안내
- 시험계획 등 공고, 시험과목, 가산대상 자격증, 채용통계, 자주찾는 질문
- 응시원서 접수, 응시수수료 결제,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성적확인 등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 | 로그아웃 | 사이트맵 | [원격지원 >](#)

시험안내
원서접수
시험문제/정답
면접시험
채용후보자
자료실
온라인민원
마이페이지

[면접시험안내](#)
[면접시험등록](#)
[면접시험등록확인](#)

▶ 최근소식 및 공지사항

2011년도 견습직원(가능인재) 선발... 2011.08.09

2011년도 7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 2011.06.14

2011년도 국가공무원임용시험 장애인... 2011.01.03

2010년도 견습직원(가능인재) 선발... 2010.12.23

2010년도 견습직원(가능인재) 선발... 2010.12.10

2011년도 제7회 7급 견습공무원(... 2010.12.08

2010년도 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 2010.12.06

2010년도 하반기 사무직렬 가능직의... 2010.12.03

2010년도 5급 일반 승진시험 합격... 2010.12.03

201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 2011.01.25

▶ 원서접수

국가공무원임용 시험원서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GO >](#)

▶ 응시표출력

국가공무원임용시험 응시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GO >](#)

▶ 합격 및 성적조회

국가공무원임용시험 합격 및 성적조회입니다.

[GO >](#)

▶ 시험절차안내

국가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안내입니다.

[GO >](#)

● 시험일정

5급(행정직)	5급(외무직)	5급(기술직)	7급공채	9급공채		
원서접수	1차시험	1차합격자발표	2차시험	2차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6 ~ 8.27	2.26	4.20	6.28 ~ 7.2	10.12	11.11 ~ 11.12	11.23

합격증명서발급

관리판 발급서비스

나라일터

정부부처 인사커뮤니티

장애인구직신청

공무원시험 응시 장애인을 위한 구직신청



행정안전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16개 시도를 하나로 묶은 인터넷원서접수



기타 공무원 채용시험 기관

클릭! 간편으로 인사에 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담당업무 및 전화번호 | 찾아오시는길 | 이메일문의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무교동96) TEL: 02-2100-3399 E-mail : gong@korea.kr

COPYRIGHT © 2007-2008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LL RIGHTS RESERVED.

□ 기타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

Government Jobs 나라일터 당신의 열정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회원가입 | 즐겨찾기 | 사이트맵 | 행정안전부 | 인사실 홈페이지

채용정보 | 인사교류정보 | 고위공무원단커뮤니티 | 대체인력뱅크 | 질의응답(Q&A) | 개인서비스 | 기관서비스

채용정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채종	채종명	채종내용	신청기간	시험기간
채용	충청북도청내부	충청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08.27	09.08
채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험계획 재공고	08.27	09.07
채용	부산지방우정청	2011년 제2회 기술10급(일반직)공무원	08.26	09.08
채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간제 계약직(민간자격관리운영선외 연구원)	08.26	09.01
채용	(자)경기대전체	2011신규직원(계약직)채용공고	08.26	09.07
채용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08.26	09.06
채용	서울관악구청	인급 2011년 제1회 서울관악구청 주판	08.26	08.29
채용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전문계약직 마감(요건심사 지원)	08.26	08.26
채용	강릉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일반직 공무원 접합 희망자 모	08.26	09.01
채용	경북대학교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 제3회 계약직용채	08.26	08.31
채용	서울스노우원	발송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08.26	09.08
채용	성남지방우체국	성남지방우체국 주판 우체국력시험 채용 공고	08.26	08.31
채용	국악고등학교	전문상담원 채용	08.26	08.30
채용	국립부	국립전산정보원 시간제 일반계약직 공개모집	08.26	08.26

공지사항

구분	제목	작성일
공문	2011년 9월 수시인사교류 대상자명단	11.08.24
공문	인사교류정보 현황화 안내	11.07.26
공문	2011년 8월 수시인사교류 대상자명단	11.07.22
공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비우직 공무원의	11.07.08
공문	2011년 7월 수시인사교류 대상자명단	11.06.21
공문	2011년도 5등급 최우공무원 공개결정	11.06.20
채용	2011년도 3/4분기 5급 국가공무원	11.06.14

자주찾는질문

- 슬픈인재찾기, 지역인재채용제도를 아십니까? 관리자
- 나라일터 사이트의 글자가 작게 보일경우 관리자
- 채용공고 등록시 첨부파일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
- 개인회원(공무원) 전용페이지라는 메시지를 만나면 관리자
- 합격후사보인 공무원과 전산후사보인 공무원이 표류... 관리자
- 합격후사보인 공무원과 합격서기인 공무원간에 호감... 관리자

장부기관 GO | 지방자치단체 GO | 일반채용정보 | WORKNET 바로가기 | 정부인사포털 채용광고(-2008.7.20) | 인사임용과 채용정보 담당 02)2100-3809 | 인사임용과 교류담당 02)2100-3809, 1727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채용기관 홈페이지



○ 각 특별채용시험 실시기관 홈페이지

□ 지방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채용기관 홈페이지>시·도(교육)청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수험생이 자주찾는 시험 주관기관 현황

○ 공무원채용시험 실시기관

시험명	홈페이지주소	주관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국가공무원 (5·7·9급공채)	gosi.kr gojobs.mopas.go.kr www.mopas.go.kr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채용관리과	02-2100-8510 02-751-1323
국회 공무원	www.gosi.assembly.go.kr	국회사무처	총무과	02-788-2081
법원 공무원	exam.scourt.go.kr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286~7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공무원	www.nec.go.kr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인사관리과	02-503-6875
군무원	www.mnd.go.kr	국방부	인사관리팀	02-748-1678
	www.army.mil.kr	육군	인사운영실	02-505-7274
	www.navy.mil.kr	해군	인사운영처	02-819-1531
	www..airforce.mil.kr	공군	인사운영단	02-506-1642~5
경찰공무원	www.police.go.kr	경찰청 (각지방경찰청)	교육과	02-313-0587
소방직공무원	www.nema.go.kr	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	02-2100-5321
국가정보원직원	www.nis.go.kr	국가정보원	인력관리실	02-558-9600
초·중·등교사	www.kice.re.kr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고사관리본부	02-3704-3704

○ 주요 자격시험 실시기관

시험명	홈페이지주소	주관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시험	www.moj.go.kr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02-507-0485
공인회계사	CPA.fss.or.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관리팀	02-3786-7760
감정평가사	www.mitm.go.kr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팀	02-2110-8877
	www.kapanet.co.kr	한국감정평가협회	총무팀	02-581-2291
공인노무사	www.molab.go.kr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3-9742
	www.hrdkorea.or.kr	산업인력관리공단	검정1부	
직업상담사	www.molab.go.kr	고용노동부	자격제도과	02-503-9757~8
	www.hrdkorea.or.kr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실생활과학팀	02-3271-9295
사회조사분석사	www.nso.go.kr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2060
	www.hrdkorea.or.kr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실생활과학팀	02-3271-9295
사회복지사	www.mohw.go.kr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	02-2110-6199
	www.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시험부	02-786-0845
법무사	exam.scourt.go.kr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286~7
변리사	pt.uway.com www.kipo.go.kr	특허청	산업재산인력팀	042-481-5187
관세사	www.customs.go.kr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7
세무사	taxstudy.nts.go.kr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시계	031-250-2272~3

○ 중앙부처 인사담당부서 현황(특별채용시험 및 공채 대기자 임용 등 문의)

기 관 명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팩스)	주 소
감사원	www.bai.go.kr	2011-3278(2585)	110-706 종로구 가회로 112
방송통신위원회	www.bcc.go.kr	750-2932(2939)	110-777 종로구 세종로 20
민주평통사무처	www.nuac.go.kr	2250-2220(2233-6404)	100-856 중구 장충단길 133
국무총리실	www.pm.go.kr	2100-2165(2179)	110-760 종로구 세종로 55
법제처	www.moleg.go.kr	2100-2521(2781)	110-760 종로구 세종로 55
국가보훈처	www.mpva.go.kr	2020-5058(784-1087)	150-010 영등포구 방승길 13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2023-4126~9(4136)	137-040 서초구 반포동 648
금융위원회	www.fsc.go.kr	2156-9564(9559)	150-743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국민권익위원회	www.crc.go.kr	360-2661(3750)	120-705 서대문구 의주로 81
기획재정부	www.mosf.go.kr	2150-2253(502-0193)	427-760 과천시 중앙동 1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2100-8603(6144)	110-760 종로구 세종로 55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2100-7142(7923)	110-760 종로구 세종로 37
통일부	www.unikorea.go.kr	2100-5663(5659)	110-760 종로구 세종로 37
법무부	www.moj.go.kr	2110-3054(3499)	427-760 과천시 중앙동 1
국방부	www.mnd.go.kr	748-5092(5058)	140-023 용산구 이태원로 22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2100-3247(4023)	110-760 종로구 세종로 55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3704-9264(9269)	110-360 종로구 창경궁로 215
농림수산식품부	www.maf.go.kr	500-1564(507-4757)	427-760 과천시 중앙동 1
지식경제부	www.mke.go.kr	2110-5052~5(504-6405)	427-760 과천시 중앙동 1
보건복지부	www.mw.go.kr	2023-7062(7070)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
환경부	www.me.go.kr	2110-6586(504-0091)	427-760 과천시 중앙동 1
고용노동부	www.molab.go.kr	2110-7463(503-8381)	427-760 과천시 중앙동 1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2075-4542(4780)	100-777 중구 무교동 96
국토해양부	www.moct.go.kr	2110-8063(504-3257)	427-760 과천시 관문로88
국세청	www.nts.go.kr	397-1383(720-3866)	110-705 종로구 수송동 104

기 관 명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팩스)	주 소
관세청	www.customs.go.kr	042-481-7672(7679)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조달청	www.pps.go.kr	042-481-7020(472-2271)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통계청	www.nso.go.kr	042-481-2006~7(2460)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검찰청	icic.sppo.go.kr	535-1963(3480-2767)	137-730 서초구 반포로 706
병무청	www.mma.go.kr	042-481-2841(2849)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방위사업청	www.dapa.go.kr	2079-6612(6639)	140-833 용산구 용산고길 23
경찰청	www.police.go.kr	3150-0752(313-3809)	120-020 서대문구 의주로 91
소방방재청	www.nema.go.kr	2100-5062(5059)	110-760 종로구 세종로 55
문화재청	www.cha.go.kr	042-481-4643(4669)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농촌진흥청	www.rda.go.kr	031-299-2947~9(2953)	441-707 수원시 수인로 150
산림청	www.foa.go.kr	042-481-4042(472-3224)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중소기업청	www.smba.go.kr	042-481-4315~6(472-3310)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특허청	www.kipo.go.kr	042-481-5100(472-1402)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380-1609~10(359-6964)	122-704 은평구 통일로 194
기상청	www.kma.go.kr	2181-0343(0389)	110-101 동작구 기상청길 45
해양경찰청	www.kcg.go.kr	032-835-2823(3305)	406-741 인천시 연수구 가천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www.macc.go.kr	041-860-9038(9285)	339-703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2125-9762(9718)	100-842 중구 무교동길 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503-6875(507-2707)	427-010 과천시 중앙동 2-3
국회사무처	nas.assembly.go.kr	02-788-2081 150-701	영등포구 의사당로 1
법원행정처	exam.scourt.go.kr	02-3480-1216~7	137-750 서초구 서초3동 967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02-708-3517(3519)	110-250 종로구 가회로 15

○지방자치단체 채용담당부서 현황(지방직 공무원 채용)

지역	홈페이지 주소	일반전화 (FAX)	우편번호	주소
서울특별시청 (공무원교육원 전형실)	www.edu.seoul.go.kr/ exam	02-731-6221 (731-6053) 02-3488-2321~ 9	137-071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도로 2496-1 서울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
부산광역시청 (총무과)	www.busan.go.kr	051-888-2724 (888-2569)	611-735	부산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www.daegu.go.kr	053-803-2773 (803-2729)	700-714	대구시 중구 공평로 130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www.incheon.go.kr	032-440-2530 (440-2519)	405-750	인천시 남동구 시청앞길25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www.gicity.net	062-613-2861 (613-2839)	501-701	광주시 서구 내방로 410
대전광역시청 (행정지원과)	www.daejeon.go.kr	042-600-3085 (600-2059)	302-789	대전시 서구 향촌길 70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www.ulsan.go.kr	052-229-2441 (229-2439, 2419)	680-701	울산시 남구 중앙로 182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www.gg.go.kr	031-249-4045 (249-4049)	442-781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강원도청 (총무과)	www.provin.gangwon.kr	033-249-2547 (249-4024)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충청북도청 (총무과)	www.cb21.net	043-220-3032 (220-3039)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충청남도청 (총무과)	www.chungnam.net	042-251-2143 (251-2557)	301-763	대전시 중구 중앙로 155
전라북도청 (행정지원과)	www.jeonbuk.go.kr	063-280-2114 (280-2919)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
전라남도청 (행정지원과)	www.jeonnam.go.kr	061-286-3360~1 (286-4756)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1000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www.gyeongbuk.go.kr	053-950-2853 (950-3348)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
경상남도청 (총무과)	www.gsnd.net	055-211-2631 (211-2639)	641-702	경남 창원시 대방로 1
제주특별 자치도청 (인적자원과)	www.jeju.go.kr	064-710-2073~4 (710-2129)	690-700	제주시 문연로 2

○지방교육청 채용담당부서 현황(지방교육행정직공무원 및 초·중등교사 채용)

지역	홈페이지 주소	일반전화(FAX)	우편번호	주소
서울특별시교육청	www.sen.go.kr	02-3999-114	110-78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28
부산광역시교육청	www.pen.go.kr	051-8600-114	614-7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4
대구광역시교육청	www.dge.go.kr	053-757-8000	706-703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초로 38
인천광역시교육청	www.ice.go.kr	032-423-3303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광주광역시교육청	www.gen.go.kr	062-380-4500	502-704	광주광역시 서구 화랑로 116
대전광역시교육청	www.dje.go.kr	042-480-7979	302-703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63
울산광역시교육청	www.use.go.kr	052-210-5400	681-703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457
경기도교육청	www.ken.go.kr	031-249-0114	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강원도교육청	www.kwe.go.kr	033-253-5321	200-713	강원도 춘천시 심일로 108
충청북도교육청	www.cbe.go.kr	043-290-2000	361-70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
충청남도교육청	www.cne.go.kr	042-580-7114	301-705	대전광역시 중구 과례2길 40
전라북도교육청	www.jbe.go.kr	063-239-3114	560-89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25번지
전라남도교육청	www.jne.go.kr	061-260-0114	534-82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57번지
경상북도교육청	www.gbe.go.kr	053-603-3800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055-268-1100	641-719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49
제주도교육청	www.jj.e.go.kr	064-710-0114	690-7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1

○ 중앙부처 인사담당부서 현황(특별채용시험 및 공채 대기자 임용등 문의)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일반전화(FAX)	주소
감사원	www.bai.go.kr	2011-2420(2848)	110-706 종로구 가회로 112
국무총리실	www.pmo.go.kr	2100-2163(2179)	110-760 종로구 세종로 55
민주평통사무처	www.nuac.go.kr	2250-2220(2233-6404)	100-856 중구 장춘단길 143
법제처	www.moleg.go.kr	2100-2521(2781)	110-770 종로구 세종로 55
국가보훈처	www.mpva.go.kr	2020-5083(780-9489)	150-874 영등포구 방송길 13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2023-4133(4136)	137-756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www.fsc.go.kr	2156-9572(9559)	150-743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2100-6139(6144)	110-760 종로구 세종로 55
통일부	www.unikorea.go.kr	2100-5665(5659)	110-787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2100-7058(7914)	110-787 종로구 세종로 37
법무부	www.mo.go.kr	2110-3053(3499)	427-760 과천시 중앙동 1
국방부	www.mnd.go.kr	748-5086(5058)	140-023 용산구 이태원로 22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2100-3248(4023)	110-706 종로구 세종로 55
문화체육관광부	www.mct.go.kr	3704-9260(9269)	110-703 종로구 세종로 42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750-2946(2939)	110-777 종로구 세종로 20
보건복지부	www.mw.go.kr	2023-7061(7070)	110-793 종로구 율곡로 75
지식경제부	www.mke.go.kr	2110-5065(504-6450)	427-725 과천시 관문로 88
기획재정부	www.mosf.go.kr	2150-2256(502-0193)	427-725 과천시 관문로 88
농림수산식품부	www.mifaff.go.kr	500-1560(507-4757)	427-725 과천시 관문로 88
환경부	www.me.go.kr	2110-6583(504-0091)	427-760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www.molab.go.kr	2110-7468(503-8381)	427-760 과천시 관문로 88
여성부	www.moge.go.kr	2075-4541(4780)	100-777 중구 청계천로 8
국토해양부	www.mltm.go.kr	2110-6043(504-3257)	427-712 과천시 관문로 88
국세청	www.nts.go.kr	397-1243~8(720-3866)	110-705 종로구 수송동 104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일반전화(FAX)	주소
관세청	www.customs.go.kr	042-481-7672(481-7679)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조달청	www.pps.go.kr	042-481-7020(472-2271)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통계청	www.nso.go.kr	042-481-2009(2461)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병무청	www.mma.go.kr	042-481-2841~4(2849)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방위사업청	www.dapa.go.kr	2079-6612(6639)	140-833 용산구 용산동 2가 2-15
기상청	www.kma.go.kr	2181-0341(0389)	156-720 동작구 기상청길 45
경찰청	www.police.go.kr	3150-2732(3832)	120-704 서대문구 의주로 91
대검찰청	www.spo.go.kr	3480-2037(2767)	137-073 서초구 서초3동 1730-1
농촌진흥청	www.rda.go.kr	031-299-2947~9(2953)	441-707 수원 권선구 수인로 150
산림청	www.forest.go.kr	042-481-4042(472-3224)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중소기업청	www.smba.go.kr	042-481-4315~6(472-3258)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특허청	www.kipo.go.kr	042-481-5100~2(472-1402)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380-1609~10(357-4737)	122-704 은평구 통일로 19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www.macc.go.kr	041-860-9038(9285)	339-703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해양경찰청	www.kcg.go.kr	032-835-2723(3305)	406-741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3-8
문화재청	www.cha.go.kr	042-481-4643(4729)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소방방재청	www.nema.go.kr	2100-5054(5059)	110-760 종로구 세종로 55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2125-9761(9778)	100-842 중구 무교동길 41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360-2661(2679)	120-705 서대문구 의주로 8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503-6875(507-2707)	427-727 과천시 혼촌말길 30
국회사무처	www.assembly.go.kr	02-788-2081	150-701 영등포구 제물포길 48
대법원	www.scourt.go.kr	02-3480-1286~7	137-750 서초구 서초로 219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02-708-3456	110-250 종로구 가회로 15

Q	<p>【채용정보 확인】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p>
A	<p>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 접속하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재된 공고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시험실시기관의 담당부서에 직접 질의하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Q	<p>【고시, 7·9공채 시험정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5·7·9공채시험의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p>
A	<p>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면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시험시행일정, 시험과목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시험제도 안내, 직렬(류)·직급별 시험과목, 가산대상 자격증, 연간 채용통계 및 각종 공지사항 등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의문사항이나 개선·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질의응답(Q&A)을 통해 질의하면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p>

2. 시험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합시다

□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 확정

- 연도별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은 부처별(5급 공채시험 지역별 모집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년도 12월 말에 최종 확정
- 연도별·직렬별 선발 인원은 부처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다르므로, 매년 초(2011년의 경우 1월 1일)에 공고되는 임용시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지역·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단위 확인

- 행정직(일반행정) 등 일부직렬의 경우, 정부의 인력수급정책, 해당 부처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 모집할 수 있으며, 지역별 모집 대상 직급(렬)은 연도마다 다를 수 있음
- 7·9급 공채에서 검찰사무직 등 공안 분야를 제외한 직렬(류)에 대해서,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인 구분모집단위를 둘 수 있음
- 9급 공채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단위를 둘 수 있음

Q	【선발직렬 및 인원】 연도별 선발분야 및 인원은 언제, 어떻게 결정되니까?
A	다음 연도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은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예산결원 및 공채 선발 예정인원 등)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부처는 다음 연도 직렬(류)별·직급별 예산결원을 산출하고, 그 예산결원 중 공개경쟁채용방식으로 충원할 인원을 결정·통보합니다. 우리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을 12월 말경에 확정하고, 이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은 매년 초(2011년의 경우 1월 1일)에 공고되는 임용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시험시행 주기】 다음연도 9급 공채시험에서 출입국관리직을 선발하는지요? 출입국관리직은 격년제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	각 부처의 정원비중이 높은 직렬(류)의 경우, 거의 매년 선발하나 특정부처에만 한정된 직렬(예:출입국관리직)이나 정원이 적은 직렬의 경우는 결원발생률이 낮아 연도별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정확한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은 매년 초에 공고되는 임용시험계획 공고문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채용시험은 어디까지나 수요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시험실시 주기를 정해 놓고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직렬·류 개편에 따른 선발인원 변동 여부】 직렬개편으로 임업직이 4개로 나뉘어진 것 같은데, 그럼 선발인원이 4등분으로 할당되는 것인지요?
A	임업직렬은 종전 일반임업, 산림보호, 가공이용 등 3개 직류였으나, 2007년부터 산림조경(신설), 산림자원(기존 일반임업에서 명칭만 변경), 산림보호, 산림이용(기존 가공이용에서 명칭만 변경) 등 4개 직류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업직렬 중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공채 선발을 한 직류는 산림자원직류(기존의 일반임업직류) 하나뿐이었으며, 통상 임업직을 선발한다고 하면 산림자원직류를 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업직이 4개로 분리되었다고 하여 선발인원이 4개로 할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임업직(산림자원직류) 선발예정인원은 2010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조경직렬 선발여부】 임용령 개정으로 시설조경직류와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기공채에서 언제쯤 선발을 하게 되나요?
A	2006년 직렬(류) 개편 과정에서 시설조경직류와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된 것은 사실이며 이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반영되어 2007.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조경직류와 산림조경직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서 정한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공채대상직렬(류)이 아닙니다. 시설직렬 시설조경직류와 임업직렬 산림조경직류는 해당 부처(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공채 또는 특채시험을 직접 주관하여 선발하게 되므로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시험실시계획을 문의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Q	<p>【사회복지직렬 선발여부】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라서 사회복지직렬에 관심이 있습니다. 7·9급 공채에서는 사회복지직렬을 선발하지 않나요?</p>
A	<p>사회복지 관련 일선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직 9급 채용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의 경우에는 현재 5급 5급 공채시험에서만 채용을 하고 있으며 7·9급에서는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대부분 정책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선업무를 수행하는 9급은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지방자치단체에 채용계획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Q	<p>【국제통상·재경·법무행정직류 선발여부】 저는 9급 행정직렬 중 국제통상직류(재경, 법무행정직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왜 해당직류에 선발인원이 없나요?</p>
A	<p>9급 공채시험에서는 행정직렬의 일반행정직류만 선발하고, 행정직렬 중 국제통상·재경·법무행정직류는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의 9급 행정직렬은 대부분 일반행정직류에 해당하며, 기타 직류는 일부부처에만 한정되어 있고, 또 정원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5급 공채시험에서는 국제통상·재경·법무행정직류를 매년 일정인원씩 선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Q	<p>【직업상담직렬 선발여부】 2007년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직업상담직렬은 언제부터 선발할 예정입니까?</p>
A	<p>직업상담직렬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에 실시하는 공개채용시험의 선발대상직렬이 아닙니다. 직업상담직렬의 채용시험은(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 주 수요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시험실시여부 및 시기, 선발예정인원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Q	<p>【수의직렬 선발 여부】 저는 수의사로서 5급 공채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어느 직렬에 응시하여야 하나요?</p>
A	<p>귀하의 경우는 수의직렬에 응시하여야 하나, 현재 5급 공채시험에서는 수의직렬을 선발하고 있지 않으며,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수의직 수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 수요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p>

□ 시험별·직급별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및 공고문 참조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채용정보마당>시험과목 및 자격증」 확인
- 시험별 시험과목 수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5급 공채시험	행정직	3과목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필수과목 4, 선택과목 1
	기술직		필수과목 3, 선택과목 1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4, 선택과목 1
7급 공채시험		필수과목 7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9급 공채시험		필수과목 5	

□ 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 PSAT (공직적격성 평가)

- 제1차시험 과목(공통)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12년 부터

□ 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선택과목 배점비율

- 필수과목 : 100점 만점, 선택과목 : 50점 만점

□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 제2차시험 외국어 능통자 외국어 과목 합격결정 방법

- 영어 능통자 : 영어과목
 - 영어과목을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 어느 한 분야에서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에는 과락 처리
- 기타언어(러시아어, 아랍어 등) 능통자 : 해당 언어과목
 - 영어과목을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 직렬(류)별로 구분 출제하는 시험과목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 동일한 과목명이라도 직렬(류)별로 문제가 구분되어 다르게 출제되는 과목
[예] 행정직(일반행정) : 행정법A, 행정학A / 기타직렬 : 행정법B, 행정학B
행정직(재경) : 경제학A / 기타직렬 : 경제학B

【참고】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문제 통합출제

우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2008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문제를 통합 출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5개 시·도로부터 수탁 받아 출제하였습니다.

▶ 수탁출제 요청기관

-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문제출제

▶ 필기시험일 : 지방직 9급 2011. 5. 14(토) / 지방직 7급 2011. 10. 8(토)

- ※ 수탁외 지방자치단체 자체 출제시험에 대한 일정은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의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함

▶ 문제공개 : 행정안전부 출제 과목은 시험당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문제와 정답 공개

▶ 시험시간 및 문제형태 : 국가직과 동일

- 7급(140분) 10:00~12:20 / 9급(100분) 10:00~11:40
- 과목별 20문항, 4지 1택형

- ※ 지방직 공채시험의 공고 및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등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및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이용

【참고】 2011년 변경된 시험과목 안내

▶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제2차시험 선택과목 조정

- 2차시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2외국어 과목에 "아랍어"를 추가

기 존(제2차시험)	변 경(제2차시험)
필수(4): 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1):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필수(4): 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1):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 9급 공채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론 내용을 포함

기 존	변 경(제2차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회계관련 과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에 따라 2011년도 공무원시험부터 모든 회계 관련 과목에 국제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Q	【시험 과목】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분야별 시험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A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별 채용시험 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행정정보-법령정보’나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헌법, 한국사 평가방법】 5(등)급 공채시험에서 헌법과 한국사에 대한 소양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합니까?
A	한국사와 헌법은 기존 객관식 1차 시험 과목이었으나, 암기 중심 지식보다 종합사고력을 평가하고자 PSAT를 도입하면서 폐지되었으나, 공무원으로서 역사 및 헌법에 대한 소양을 검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한국사와 헌법 소양을 효과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사의 경우 2012년부터 5(등)급 공채 응시생들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을 획득하여야 하고, 헌법의 경우 2010년부터 수습사무관 교육에서 헌법교육 패스(Pass)제를 도입하여, 수습사무관이라면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헌법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총론의 출제범위】 행정법총론, 형법총론 등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각론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A	원칙적으로 총론부분에서만 출제됩니다. 그러나 총론과 관련이 되거나, 총론 이해에 필요한 사항은 각론의 내용이라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Q	【출제 범위】 경제학,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과목의 출제범위는?
A	경제학은 국제경제학, 국제법은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은 외교사 및 군축·안보 분야가 포함되어 출제됩니다. 아울러, 지방행정론에는 도시행정, 교정학에는 형사정책 및 행형학이 포함되어 출제됩니다. 시험범위에 관한 사항은 5급, 7급, 9급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Q	【○○학, ○○학개론의 출제범위】 7급 공채의 교육학과 9급 공채의 교육학개론은 출제범위가 다른 것인가요?
A	채용계급에 따라 출제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 출제범위 및 영역은 동일합니다.

Q	<p>【선택과목간 난이도 보안】 5(등)급 공채시험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가 너무 큼니다. 과목별 표준점수제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p>
A	<p>우리부에서는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같은 직렬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충원하고자 선택과목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과목으로 인한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의 수는 종전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축소하고, 배점도 필수과목의 50%로 하향조정하여 선택과목의 비중을 대폭 줄였습니다. 아울러 시험 때마다 시험위원들에게 선택과목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종종 이야기되는 표준점수제는 선택과목 응시인원의 편차나 선택자의 수준에 따라서 오히려 실력이 우수한 사람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5(등)급 공채시험 제2차시험과 같이 과목에 따라 소수의 선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험에서는 도입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Q	<p>【시험과목 구분출제】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니 재경직의 경제학과 다른 직렬의 경제학 출제 문제가 다르던데, 이렇게 직렬별로 출제를 달리하는 과목이 또있나요?</p>
A	<p>2010년의 경우, 경제학(재경/기타), 행정법과 행정학(행정/기타) 3과목, 2011년의 경우 경제학(재경/기타), 국제법(국제통상/기타), 행정법과 행정학(일반행정/기타) 4과목을 직렬별로 구분·출제하였습니다.</p> <p>이는 일부 답안지 매수가 많은 과목의 경우 채점위원 3명이 모두 채점하다 보면 채점기간이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렬별로 구분 출제·채점하기 위한 것입니다.</p>
Q	<p>【지방교육청의 수탁출제】 지방직 문제를 행안부에서 통합 출제한다면서요. 그럼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시험도 행정안전부에서 수탁 출제하시나요?</p>
A	<p>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직 공채시험의 일부 과목을 수탁출제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는 지방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다만, 지방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탁 요청한 경우(일반직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해당 시·도에서 행정안전부로 위탁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시·도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p>
Q	<p>【지방직 문제 수탁출제】 이제 지방직 시험이 5월과 10월로 나뉘어 같은 날에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럼 응시기회가 줄어들어 수험생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p>
A	<p>지방직 공채의 통합 수탁출제는 시·도의 희망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응시기회가 많은 것이 수험생에게 마냥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시·도가 각기 공채시험을 주관할 때, 시·도별로 중복합격자가 많이 발생하여 그 중복합격인원만큼 수험생은 합격 기회를 잃었고, 시험실시기관도 필요로 하는 인원을 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듯, 충분한 응시기회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인력충원 차질, 시험 행정의 비효율성, 수험기간의 장기화 등의 부정적인 문제도 함께 발생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

□ PSAT(공직적격성평가,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 특정과목의 전문지식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자료의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의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함

□ 추진경과

연도	시험명	시험과목	비고
2004년	외무고시	PSAT + 헌법, 한국사, (영어*)	처음시행
2005년	행정(행정)·외무고시	PSAT + 헌법, 한국사, (영어*)	확대도입
	행정(기술)고시	PSAT + 한국사, (영어*), 직렬별 선택 1과목	
2006년	행정(행정)·외무고시	PSAT, 헌법, (영어*)	한국사 폐지, 상황판단 독자출제
	행정(기술)고시	PSAT, (영어*), 직렬별 선택1과목	
2007년	행정·외무고시	PSAT, (영어*)	
2012년	5급 공채시험 ·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PSAT, (영어*), (한국사*)	

※ 영어 과목은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단, 제1차시험 총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2005년부터 견습직원(지역인재) 선발시험에 적용

□ 평가영역

구분	주요내용
언어논리영역	글의 이해, 표현, 추론, 비판과 논리적 사고 등의 능력 검정
자료해석영역	수치자료의 정리와 이해, 처리와 응용계산, 분석과 정보추출 등의 능력 검정
상황판단영역	상황의 이해, 추론 및 분석, 문제해결, 판단과 의사결정 등의 능력 검정

□ 문항 수, 시간 및 배점

영역	문항수	시간	배점
언어논리	40문항	90분	100점
자료해석	40문항	90분	100점
상황판단	40문항	90분	100점

Q	<p>【PSAT 출제경향】 5(등)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지험(PSAT)의 출제경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p>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논리영역 주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이론적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인문학, 과학 등 초급관리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지문으로 많이 사용했으며,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기위해 한국역사, 한국사상 관련 지문을 다수 활용하였습니다. • 자료해석영역 사회문화, 정치외교, 과학기술, 한국사 등 다양한 분야의 특정한 수치적 특징이나 규칙을 갖는 표, 그래프 등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의 이해, 적용, 분석, 종합평가 등 자료 해석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의 출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복잡한 형태의 자료보다는 주어진 자료 내 특정한 수치적 특징 및 규칙을 갖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상황판단영역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자들이 접하게 될 실제적인 상황,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 공공정책 등의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응시자들이 단순 수험준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교양지식과 시사상식, 다양한 경험습득이 문제해결에 유리하도록 평가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Q	<p>【PSAT 출제위원】 PSAT는 누가 어떻게 출제하나요?</p>
A	<p>PSAT는 특정 전공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학문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들에 의해 문제가 구성됩니다. 통상적으로 연구 분야나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PSAT가 추구하는 논리적·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도구개발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PSAT 문제는 한 사람에 의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험위원들이 문제의 출제 및 검토과정에 참여하여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p>
Q	<p>【PSAT 학습방법】 PSAT 준비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은 무엇입니까?</p>
A	<p>PSAT는 초등학교부터 공교육을 통해 꾸준히 습득해온 문제해결능력, 학습능력 등을 평가하므로 단기간의 집중학습으로 고득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실제 출제된 문제를 접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재된 기출문제, 모의평가문제 및 수험준비 안내서 등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p>
Q	<p>【PSAT 7·9급의 도입 여부】 PSAT의 7·9급 확대는 언제 이루어지나요?</p>
A	<p>PSAT를 7·9급 공채시험으로 확대·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PSAT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수험생들이 준비·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입니다. 참고로 5(등)급 공채시험의 경우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p>

Q	【자료해석영역의 문제유형】 자료해석의 경우, 단순계산 문제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관리자에게 계산능력이 필요한가요?																											
A	자료해석영역에서는 수치자료의 정리와 이해, 처리와 응용계산, 분석과 정보추출 등의 능력을 측정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각종 자료 중에는 상당한 양이 수치자료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수치자료를 선별하고 이를 통계처리·해석하여 자료 및 통계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업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료해석은 수적 감각을 가지고 주어진 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파악하여 수치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들이므로 당연히 수치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수적 계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계산은 정확한 계산이 아닌 자료의 흐름, 변동 규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자료해석영역에서 요구하는 해결방법은 대략적인 수치계산을 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입법고시 PSAT와 동일 여부】 5급 공채시험,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입법고시의 PSAT문제가 모두 동일합니까?																											
A	5급 공채시험,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에 출제되는 PSAT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지만, 입법고시는 국회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법고시와 5(등)급 공채시험 PSAT의 근본 취지는 같으나 세부적으로 출제시스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출제문제는 다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출제하는 5급 공채시험(행정직, 기술직)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제1차시험의 PSAT는 모든 직렬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Q	【PSAT】 PSAT 합격선을 알 수 있나요?																											
A	<p>5(등)급 공채 1차시험 합격선은 모집단위별로 결정되며, 합격자 발표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자료실 > 시험통계에 연도별로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p> <p>또한, 5(등)급 공채시험 PSAT 시행결과 평균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255 1512 1396 1691"> <thead> <tr> <th>구분</th> <th>2004 (외시)</th> <th>2005년</th> <th>2006년</th> <th>2007년</th> <th>2008년</th> <th>2009년</th> <th>2010년</th> <th>2011년</th> </tr> </thead> <tbody> <tr> <td>응시자 평균</td> <td>60.1</td> <td>61.9</td> <td>62.1</td> <td>56.6</td> <td>55.8</td> <td>58.9</td> <td>65.31</td> <td>61.66</td> </tr> <tr> <td>합격자 평균</td> <td>72.5</td> <td>71.7</td> <td>73.1</td> <td>69.2</td> <td>67.8</td> <td>71.3</td> <td>78.14</td> <td>74.92</td> </tr> </tbody> </table>	구분	2004 (외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응시자 평균	60.1	61.9	62.1	56.6	55.8	58.9	65.31	61.66	합격자 평균	72.5	71.7	73.1	69.2	67.8	71.3	78.14	74.92
구분	2004 (외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응시자 평균	60.1	61.9	62.1	56.6	55.8	58.9	65.31	61.66																				
합격자 평균	72.5	71.7	73.1	69.2	67.8	71.3	78.14	74.92																				
Q	【PSAT 자격시험제의 전환건의】 PSAT를 자격시험 제도로 전환하면 안 될까요?																											
A	PSAT는 신입관리자를 선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상대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고 있는 시험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논의는 될 수 있겠으나 현재 어떠한 검토나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5급 공채	일반	530	197	71	700	625	65(level2)	625
	청각2·3급	352	131	-	350	375	-	-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	일반	560	220	83	775	700	77(level2)	700
	청각2·3급	372	146	-	385	417	-	-

※ 청각장애 2·3급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5(등)급 공채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

- 해당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성적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

- 해당 5(등)급 공채시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
 - 2011년의 경우, 2009.1.1.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당해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1.1.21일)까지 발표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인정
- 해당 시험검정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시점

- 응시원서 제출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외국에서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 인정 기준 : 정규(정기)시험과 신규출제방식
- 인정 여부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과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및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에 한해 인정
 - 기타 국가의 TOEIC 및 G-TELP 성적은 한국과 일본(미국)에서 기 출제된 문제를 재사용함에 따라 불인정

구분	인정(신규출제)	불인정(기출문제 재사용)
토플(TOEFL)	모든 국가	-
토익(TOEIC)	일본	기타국가
지텔프(G-TELP)	미국	기타국가

□ 영어성적 등록·확인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하게 입력
- 응시원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시험검정기관에 시험성적 등을 조회·확인함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시험검정기관에서 성적표를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성적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함
 -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함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성명 사용

□ 영어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입력)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는 경우에는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Q	【영어성적 인정범위 및 제출방법】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및 영어성적표 제출방법은?
A	당해 5(등)급 공채시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해 인정됩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인 1.21까지 발표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인정됩니다.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시에 당해 시험명, 시험일자, 점수 및 등록번호 등을 표기하면, 우리부에서 입력사항을 근거로 해당 시험검정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다만, 민간영어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성적표 원본제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소명하여야 합니다.
Q	【영어성적 환산 여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점수로 환산이 됩니까?
A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취득점수는 별도로 환산하여 합산하지 않으며, 기준점수 이상만 되면 영어과목은 합격(패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영어성적 미보유시 원서접수 가능 여부】 원서접수일까지 취득한 성적이 없으면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합니까?
A	응시원서 접수일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하며 응시원서상에 시험명, 등록번호 및 점수 등을 기입하여야만 원서접수가 정상처리됩니다. 만약, 응시원서에 시험성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관계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에서 취득한 영어성적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도 인정되나요?
A	2011년도의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외국에서 응시한 TOEFL과 일본에서 시행한 TOEIC, 미국에서 시행한 G-TELP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출제방식(신규출제)이나 문제 난이도 측면 등에서 국내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유사한 일본의 TOEIC, 미국의 G-TELP 시험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	【수시시험 성적 인정 여부】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정기시험이 아닌 수시시험에 응시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받았습니까. 인정되는지요?
A	5(등)급 공채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Q	【영어과목 응시】 토익 등 영어성적이 없을 경우 제1차시험에서 영어시험을 보면 되나요?
A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5(등)급 공채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시험에서 별도로 영어과목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기준점수 이상의 영어 성적이 없을 경우 응시원서접수 자체가 불가능함)
Q	【성적 유효기간】 영어능력검정기관의 성적 유효기간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다르지 않나요?
A	민간 영어능력검정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성적의 유효기간(2년)과 5(등)급 공채시험에서의 성적 인정기간은 다릅니다. 가령, 2011년 시험의 경우 2009.1.1일 이후 실시된 정규(정기)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이라면 해당 시험 검정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영어능력검정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소명하여야 합니다.
Q	【G-TELP 수시시험 인정 여부】 G-TELP 수시시험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공인 성적표가 발행되는 시험인데 왜 인정되지 않나요?
A	우리부가 G-TELP 시험 주관기관인 지텔프코리아 시험관리팀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G-TELP 수시시험은 비록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으나, 신규출제방식이 아닌 기출문제 출제방식이기 때문에 시험의 공정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영어대체 7·9급 도입시기】 7급 및 9급에도 영어과목을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위 질문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Q	【G-TELP Level3 성적】 G-TELP Level3의 65점 이상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영어성적으로 인정되나요?
A	5(등)급 공채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G-TELP의 경우, Level2의 성적만을 인정합니다. 문의하신 Level3의 평가기준 및 영어구사능력이 Level2에 비해 하위단계이기 때문에 영어시험성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G-TELP 인정】 G-TELP는 GST(구술시험), GLT(등급시험), GWT(작문시험)의 세 가지 중 GLT(등급시험)만 보면 되는 것이지요?
A	GLT(등급시험) 레벨 2에서 평균 65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Q	【G-TELP 평균성적】 저의 G-TELP Level2 성적이, 문법 80점, 청취 51점, 독해 64점으로 총점이 65점입니다. 어느 한 분야가 65점 이하이면 인정되지 않는지요?
A	총점 평균점수가 65점 이상이라면, 측정분야별 점수가 65점 이하(청취 51점)이더라도 영어시험 성적으로 인정됩니다.
Q	【G-TELP 평균성적】 G-TELP 성적표상, 문법은 69점, 청취는 50점, 독해는 75점으로 평균을 내보면 64.66인데요, 성적표상의 평균점수는 반올림되어 65점으로 나와 있어요. 이 경우에도 5급공채시험의 영어성적으로 인정되나요?
A	해당 시험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성적표에 평균점수가 65점으로 나와 있다면, 5급 공채시험의 1차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에서 해당 검정기관에 평균점수를 조회하는데 65점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	<p>【FLEX 시험성적】 FLEX 시험성적에 쓰기과 말하기 영역까지 포함됩니까?</p>
A	<p>현재 FLEX시험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FLEX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읽기와 듣기영역 1000점 만점 기준에서 5급 공채는 625점 이상,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는 700점 이상입니다. 이때 쓰기과 말하기 영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p>
Q	<p>【장애인 듣기영역 제외 건의】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듣기를 제외한 성적만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는것이 가능한지요?</p>
A	<p>청각장애인 2·3급 수험생의 5(등)급 공채시험 지원 및 편의확대 차원에서 『2011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2011.1.1.)』를 통해 듣기부분을 제외한 청각장애인용 별도 기준점수를 공지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2011년의 경우 2009.1.1일 이후 실시된 정규(정기)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시험성적 중 듣기부분을 제외한 성적이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5(등)급 공채 제1차시험에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으로 인정됩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청각장애인용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공채시험 : 토익 350점, 텡스 375점, 토플(PBT) 352점, 토플(CBT) 131점 -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 토익 385점, 텡스 417점, 토플(PBT) 372점, 토플(CBT) 146점 </div> <p>청각장애인용 별도 기준점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영어 성적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청력손실이 심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면접시험을 필답으로 진행하고, 수화통역사배치, 보청기 등 사용허용 등의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p>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 2012년도부터 5(등)급 공채시험 제1차시험 과목에 ‘한국사’가 포함되고 시험이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등급)

시험명	검정시험 명	기준점수
5급 공채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

- 해당 5(등)급 공채시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
 - 2012년의 경우, 2009.1.1.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당해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인정
- 해당 시험검정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시점

- 응시원서 제출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사성적 등록·확인방법 및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는 ‘8.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참조

□ 시험의 단계 및 방법

○ 5급 공채시험 ·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 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3차시험 → 면접시험

○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3차시험 → 면접시험

※ 교정직(교정직류)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직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문제 유형(2011년의 경우)

○ 선택형 필기시험

- 5(등)급 공채시험(PSAT) : 5지 택 1형 / 40문항(1문항당 2분 15초)
- 6급이하 : 4지 택 1형 / 20문항(1문항당 1분)

○ 논문형 필기시험

- 논술형과 약술형 혼용
- 과목당 120분 내에서 문제내용에 따라 배정(논술형 60분, 약술형 20~30분)

□ 시험별 시험시간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5(등)급 공채	1차	10:00~11:30	13:20~14:50	15:40~17:10
	2차	10:00~12:00	14:00~16:00	-
7급공채		10:00~12:20	-	-
9급공채		10:00~11:40	-	-

Q	【시험의 단계 유예】 5급 공채 제2차시험까지 보고 군대를 가면 제3차시험은 군 체대 후 응시할 수 있습니까?
A	현행 채용시험 제도에는 시험단계를 유예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해에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면접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군복무 중이라도 시험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가 등 부대장 허가 하에 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Q	【제1차시험 성적의 효과】 5급 공채 제1차시험 성적은 제2차시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A	제1차시험을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6조)또한, 각 시험단계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및 제25조) 이러한 관련법령의 내용상, 제1차시험 성적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자료로 활용될 뿐, 제2차시험 성적 및 제3차 합격자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제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 5급 공채 제1차시험 면제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A	5급 공채시험 제1차시험 면제제도는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구, 외무고시)의 경우 2004년, 5급 공채시험(구, 행정고시)의 경우 200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 지방고등고시 포함)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제3차시험(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자는 당해 연도 이후에 시행되는 첫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시험기간 연장】 문제도 까다롭고 지문도 길어져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시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요?
A	‘10년부터 5(등)급 공채시험 PSAT의 영역별 시험시간이 각각 10분씩 늘어났으며, 시험문제 출제경향의 변화(문제 길이 및 종합적 사고력 측정을 위한 사례형 문제증가)를 반영하여 7·9급 필기시험 시간도 연장된 바 있습니다. 시험시간 연장을 통해 수험생들은 좀 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시험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시험시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	【출제형식】 국가고시의 출제형식을 알고 싶습니다.																			
A	<p>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256 535 1393 790">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제1차시험</th> <th>제2차시험</th> <th>제3차시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공채시험</td> <td>5(등)급 공채</td> <td>선택형(5지1택형), 40문</td> <td>논문형(논술형, 약술형)</td> <td>면접</td> </tr> <tr> <td>7·9급 공채</td> <td colspan="2">선택형(4지1택형), 20문 *제1·2차 병합</td> <td>면접</td> </tr> <tr> <td colspan="2">특채시험</td> <td colspan="3">※ 특채의 종류 등에 따라 시험 형식이 다양하므로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td> </tr> </tbody> </table>	구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제3차시험	공채시험	5(등)급 공채	선택형(5지1택형), 40문	논문형(논술형, 약술형)	면접	7·9급 공채	선택형(4지1택형), 20문 *제1·2차 병합		면접	특채시험		※ 특채의 종류 등에 따라 시험 형식이 다양하므로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구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제3차시험																
공채시험	5(등)급 공채	선택형(5지1택형), 40문	논문형(논술형, 약술형)	면접																
	7·9급 공채	선택형(4지1택형), 20문 *제1·2차 병합		면접																
특채시험		※ 특채의 종류 등에 따라 시험 형식이 다양하므로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Q	【문항 형식 보완】 7·9급 공채의 경우, 문항수가 20문항에 불과하고, 4지 1택형입니다. 변별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문항 수나 답항 수를 늘려 줄 것을 건의합니다.																			
A	<p>답항 수나 문항 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은행 전면 갱신에 따른 예산부담, 난이도 상승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수험생들의 부담이 수반됩니다. 우리부에서는 건의내용과 같은 의견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출제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와 높은 경쟁률에 따른 변별력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문항수나 답항수의 변화는 시험시행기관이나 수험생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 시스템에서의 변별력 확보 가능성과 기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Q	【책형】 문제지에 책형이 구분되어 있던데, 책형별로 문제가 다른 것인가요?																			
A	모두 동일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의 배열 순서만 다릅니다.																			
Q	【기출문제 확인】 5(등)급 공채시험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5(등)급 공채시험 기출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시험문제/정답” 메뉴를 선택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편성시 고려사항

- 연간 시행되는 시험종류 및 시행횟수 : 10종류 25여회(월평균 2회 이상)
- 출원예상인원 등을 고려, 시험준비, 문제출제 및 채점기간 등을 적정하게 산정
-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시험별 실시시기는 가급적 매년 정기화할 필요성 고려
-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공인회계사·사법시험 등 자격증시험 및 국가적 행사 등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시험일정 편성

□ 시험일정 확정 및 사전 안내

- 매년 초에 응시원서 접수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11월경에 확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사전 안내

Q	<p>【시험일정 조정】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이 토요일이던데, 앞으로도 계속 토요일에 시험이 시행되는지요?</p>
A	<p>2010년도부터 공무원 임용시험을 원칙적으로 토요일에 시행하고 있으며, 5(등)급 공채시험 제2차시험과 같이 여러 날 연속하여 실시되는 시험도 토요일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5일제 근무 실시, 국민의 휴식권 보장, 시험장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향후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험일정 편성시 매 연도마다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시험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Q	<p>【시험일정 편성】 9급 공채 필기시험일이 ○○○시험과 중복되는데, 시험일정을 변경해 줄 수 없나요?</p>
A	<p>현재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제외한 타기관 시험은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 우리부의 시험일정 편성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연간 10종류의 크고 작은 시험을 약 25여회에 걸쳐 시행함에 따라 문제출제, 시험시행 준비 및 채점 등의 일정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연속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시험일정을 편성함에 있어 타부처 주관시험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일정 수립시에는 제반 시험관리여건이 가능하다면, 지방 공무원시험이나 사법시험 등 타부처 시험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시험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연간 임용시험계획 공고

- 연도별 임용시험계획 공고는 매년 초(2011년의 경우 1월 1일)에 공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중앙일간지 광고
- ※시험계획 변경공고는 시험기일 7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공고
- 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은 전년도 11월~12월 초 사이에 확정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등을 통해 예비공고

□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 시험시행 7일 전 또는 전 단계의 합격자 발표일에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문」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

구분	제1차시험 장소 공고일	제2차시험 장소 공고일	제3차시험 장소 공고일
5(등)급 공채	시험시행 7일전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7·9급 공채	시험시행 7일전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Q	【다음연도 시험일정】 다음연도 시험일정은 언제쯤 공고되나요?												
A	응시원서 접수가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도별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 시행일정을 전년도 11월경에 사전확정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Q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장소 공고문은 언제, 어디서 확인하여야 합니까?												
A	<p>시험장소 공고일은 매년 초에 공고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에 포함되어 공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험장소 공고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시험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참고】 시험장소 공고일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256 900 1407 1041"> <thead> <tr> <th>구분</th> <th>제1차시험 장소 공고일</th> <th>제2차시험 장소 공고일</th> <th>제2차시험 장소 공고일</th> </tr> </thead> <tbody> <tr> <td>5(등)급 공채</td> <td>시험시행7일 전</td> <td>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td> <td>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td> </tr> <tr> <td>7·9급 공채</td> <td>시험시행7일 전</td> <td>-</td> <td>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td> </tr> </tbody> </table>	구분	제1차시험 장소 공고일	제2차시험 장소 공고일	제2차시험 장소 공고일	5(등)급 공채	시험시행7일 전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7·9급 공채	시험시행7일 전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구분	제1차시험 장소 공고일	제2차시험 장소 공고일	제2차시험 장소 공고일										
5(등)급 공채	시험시행7일 전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7·9급 공채	시험시행7일 전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Q	【시험장소 확인】 시험장소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A	<p>시험장소 공고문에는 시험장소 뿐만 아니라, 시험실 입실시간, 일자별 시험과목(5(등)급 공채 제2차시험의 경우), 응시자 준수사항 등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소 공고문의 내용은 수험생이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자신이 응시해야 하는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으로 가거나, 시험이 개시된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하여 낭패를 겪는 수험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본인이 착오가 없도록 시험장소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p>												

3.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

□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행정안전부 시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 함

check point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군 복무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 체납, 의가사제대 등은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Q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 벌금형(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요?
A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등도 공무원 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면접시험에서의 불이익 여부】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언제 있나요? 벌금형을 받은 경우,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은 없나요?
A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수험생 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며,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없으므로 면접시험에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Q	【가족 등의 전과】 가족 중 전과자가 있는데 혹시 면접시험이나 임용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A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은 수험생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라도, 형 선고를 받은 당사자만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람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임용 결격사유와는 무관합니다.
Q	【가석방과 임용결격사유】 징역형을 받고 형기 1년을 남겨두고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럼 가석방일로부터 5년만 경과하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의 가석방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 제1항)”, “가석방 기간은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한다(「형법」 제73조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에 의거, 귀하의 경우는 가석방 처분일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5년을 경과해야만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응시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면접시험 예정일입니다.

Q	<p>【불법 체류】 제가 유학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검찰사무직 또는 교정직 등 7급시험을 준비하는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p>
A	<p>불법체류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로 징역, 금고 등의 형의 선고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Q	<p>【세금 체납】 세금체납사실이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납부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p>
A	<p>세금 체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세금체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 임용 후에라도 세금체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 임용 전에 세금체납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면접시험 시행 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세금체납 사실)을 조사하거나, 해당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p>
Q	<p>【과산자로서 면책을 받은 자】 저는 지금 과산 선고 후, 면책을 받은 상태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p>
A	<p>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당연복권)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당연복권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p> <p>※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당연복권)</p> <p>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Q	<p>【소년범의 임용결격사유】 소년범으로 3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한 지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p>
A	<p>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소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인사관계법령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이때, 소년은 범죄행위시의 연령이 20세 미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범위에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선고유예기간 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p>
Q	<p>【선고유예기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고유예기간이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요?</p>
A	<p>형의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의 참작요소를 고려하여 개선의 정이 현저한 때,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용결격사유가 되는 선고유예 대상형별은 징역이나 금고이므로 자격정지의 선고유예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p> <p>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형법 제60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의 종류는 비교적 경미하고 또 개선의 정이 현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형법상의 선고유예기간만 경과하면 별도의 추가적인 경과기간 없이 바로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p>
Q	<p>【자격정지 선고유예】 “자격정지 10월을 선고유예한다”고 선고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해당하는지요?</p>
A	<p>“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란 법원에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격정지형의 선고가 유예된 경우라면 설사 그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로 보지는 않습니다.</p>

Q	<p>【형의 확정시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 중“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에 있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말하나요?</p>
A	<p>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사유 중 제5호 규정의“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받은 경우”란 재판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 재판의 효력은 그 판결의 내용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하게 되는것인 바, 효력의 확정시기는 상소제기 등의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하급심의 판결은 상소기간 등이 도과한 날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각각 확정됩니다.</p>
Q	<p>【구속기간의 결격사유기간 산입여부】 선고유예 판결전의 구속기간이 임용결격사유 해당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까?</p>
A	<p>판결확정일 전의 구속기간(미결구금일수)은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 본형에 산입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의 효력발생일 또는 선고유예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종확정일로부터 선고유예 면소기간인 2년을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p>
Q	<p>【군 미필자】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까? 그리고 군복무 중에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요?</p>
A	<p>군 복무 중인 경우에도 본인의 여건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합격하면 합격 후 임용유예신청을 하고 군복무 후 임용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중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게 되더라도 임용유예신청을하고 제대 후 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p>
Q	<p>【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예비군 동원훈련을 불참하여 벌금을 낸 경우, 병역법 제 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나요?</p>
A	<p>병역법 주관부서인 국방부에 확인해 본 결과,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으로 벌금을 납부한 경우는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p>

Q	<p>【제대일 1년 이상 남은 군복무자】 현재 군복무(공익근무요원, 산업체기능요원 등)중이고, 제대일까지는 1년 이상 남았습니다. 5(등)급 공채나 7·9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p>
A	<p>「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의 응시연령에 부합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군복무자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여건이허용하는 한(공가 등 부대장의 허가하에),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p>
Q	<p>【교정직 및 철도공안직 응시자의 벌금형】 경찰공무원과 같이 교도관과 철도공안직은 사법경찰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정직과 철도공안직의 경우벌금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응시자격이 박탈되나요?</p>
A	<p>교정직 공무원과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응시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의 응시자격기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교정직 공무원과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Q	<p>【사면법에 의한 사면】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나, 사면법에 의거 일반사면(특별사면)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까?</p>
A	<p>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정지된 자격도 당연히 회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결격자가 응시제한기간 중에 사면법에 의거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p> <p>다만,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 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효과로서의 자격정지는 그대로 남게 되어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되어야만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p>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

- 국적 취득 여부 판단일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외국인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공무원임용령」 제4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 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 등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복수국적자

- 국적법에 의한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의 경우 응시 가능하나,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공무원임용령상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가능 분야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중요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관계·통상교섭·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분야
5.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교정·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 및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사업에 관한 분야
7. 국민안전 및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한 경제·재정정책 등에 관한 분야
8.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 시설·지역, 비밀 문서·자재 등에 관한 분야
9. 기타 업무특성상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 영주권자

-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시험에는 국내거소신고된 재외국민에 대하여 지역별 구분 모집 응시자격 부여(9급에 한함)

Q	<p>【영주권자】 저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수험생입니다. 제가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p>
A	<p>외무공무원의 경우, 외무공무원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외무공무원법」 제9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공무담임권을제한받지 않습니다.</p> <p>* 「외무공무원법」 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p> <p>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p>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p> <p>제19조(복무)</p> <p>③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Q	<p>【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로 5급 공채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반드시 한국 국적을 재취득해야만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p>
A	<p>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지 않는다면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등 관계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p>
Q	<p>【귀화자】 귀화자도 7급 공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요?</p>
A	<p>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제한은 없습니다.</p>

- 행정안전부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됨
- 종래 시험 요건으로 해오던 학력제한은 1973년에 폐지되었음
 - 특히, 학력에 관하여는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삭제하여 면접시험위원 등 다른 사람이 학력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음

FAQ

자주찾는 질문

Q	<p>【고졸 응시자 불이익 여부】 고졸학력으로도 시험응시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만약 면접 볼 때 고졸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요?</p>
A	<p>학력과 관련해서는 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학력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서 학력란을 삭제하였으며, 면접시험에서의 합격당락은 오로지 면접시험 평가결과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p>
Q	<p>【특채에서의 학력제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관련전공 박사학위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던데요?</p>
A	<p>○○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아니라 특정 학력,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입니다. 현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별도의 학력제한이 없으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채용시험 실시기관에서 발표한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p>

□ 시험별 응시연령

-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
 -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
 -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 응시연령 적용 기준

-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 ※ 응시하한연령 계산 :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가 2011년인 경우, 응시하한 연령은 2011.12.31을 기준으로 계산(<예> 20세 이상 : '91.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상한연령 폐지

-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5·7·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됨(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 2008.10.20)
 - ※ 경찰(경찰청), 군무원(국방부), 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 계급질서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상한연령을 유지하고 있음

■ 응시연령 개정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20세 이상 32세 이하	5급	20세 이상
20세 이상 35세 이하	7급	20세 이상
18세 이상 32세 이하	9급	18세 이상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국가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법 상 정년은 60세임.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

Q

【시험령상의 응시연령 적용대상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응시 연령은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다른 분야의 공무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A

아닙니다.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일반직 3급 내지 9급, 기능직공무원)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 공무원도 다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연령을 정하고 있으므로 각 시험실시기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하여 궁금 사항을 확인하시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원칙적으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주요내용

- 신체검사 주관기관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신체검사 실시시기 : 공채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
- 실시의뢰기관 : 의료법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 합격여부 판정 : 피신체검사자 현재의 신체상태와 응시직종 등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과 비교검토하여 합격 여부 판정
- 채용금지 :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장애인은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할 수 있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 참조
- 채용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 : 1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 임용부처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단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 등은 채용신체검사의 불합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에 게시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요람’을 참조하시기 바람

□ 특수분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교정직과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던 별도의 채용신체검사규정은 폐지되었으며, 대신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 실기시험(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처(교정직-법무부, 철도공안직-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참조

Q	<p>【신체검사규정 개정】 최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p>
A	<p>현대의학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있는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010년 11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p>
Q	<p>【신체검사서 제출시기 및 유효기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시기는 언제이며,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p>
A	<p>신체검사서는 통상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부처가 배정되어 임용되기 직전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서접수 또는 면접시험일 현재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당시에 치유가 되어 더 이상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체검사서에서 합격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이 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은 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셔도 무방합니다.</p>
Q	<p>【소년보호직의 신체조건】 소년보호직의 신체제한 사항이 있었는데, 통합된 보호 직렬에도 신체제한 규정이 있습니까?</p>
A	<p>2006년 1월 11일자로 법무부 예규가 변경되어 기존의 소년보호직에만 별도로 적용되던 신체조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2007년부터 통합된 보호직 선발시에는 일반직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p>
Q	<p>【철도공안직의 신체제한요건】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에 적용되는 신체제한요건이 별도로 있습니까?</p>
A	<p>신장, 체중, 가슴둘레 등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에만 적용되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건교부 예규)은 2006.5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철도공안직의 경우도 일반직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면접시험 전에 별도의 체력검사를 실시하여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p>

Q	【교정직의 신체조건】 교정직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신체제한요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록색약은 불합격 판정대상입니까?
A	교정직 공무원 채용시에 적용되던 키, 몸무게, 시력 등의 신체요건은 2007.10월에 「교정직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없어졌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르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인 경우는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교정직의 체력검사】 교정직의 경우, 별도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고 들었어요. Q 언제부터 어떤 종목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A	2007.10월에 교정직 채용시에 적용되던 키, 몸무게 등의 신체제한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교정직(교정직류)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법무부령인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B형 간염 보균자】 B형 간염 보균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제한되나요? 일반적 Q 으로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A	B형간염은 직장 동료간 또는 고객·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 없으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성활동성 간염의 경우에는 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를 근거로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므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서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결핵 환자】 결핵은 채용신체검사규정상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나요? 해당된다면 무조건 공무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A	흉부관련 질환 중 단순 결핵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결핵증인 경우에만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용추천 후 임용을 위한 채용신체검사 결과,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등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검사 의사의 소견상 일정기간 요양 후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에서 제출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적절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Q	【과거의 병력】 군복무중 정신질환으로 의병제대 또는 특정질병으로 군면제판정의 경우도 신체검사 불합격 사유가 되나요?
A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목적은 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공직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나 현재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상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종합격 후 채용신체검사 당시에 질환이 치유가 되어 더 이상 불합격 판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용될 수 있습니다.
Q	【구체적 판정기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합격 여부 판정은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격 있는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판정기준을 보면 질병명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된다면 그대로 불합격 판정이 됩니다. 그러나 질병명과 더불어 ‘예후가 불량’, ‘난치’, ‘중증’,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 등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대로 불합격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지가 염려된다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에 게시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지참하고 가까운 종합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검사기관】 신체검사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신체검사가 가능한지요?
A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위한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면 어느 곳에서도 채용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2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병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상 의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실시여부는 보건의료원 등의 장의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에 대한 특례】 장애인의 경우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까?
A	일반적으로 임용권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전산직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응시자격이 부여됨

5급·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5급,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에도 인정됨

□ 자격증 소지여부 판단

-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였더라도 최종합격을 할 수 없음

□ 증빙서류 제출

- 2010년부터 필기시험(5급 공채는 제2차시험)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필기합격자 면접등록을 해야 함
- 전산직렬 합격자는 이때 자격증상 기록된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고 자격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음. 다만, 필기합격자 면접등록 마감일까지 자격증을 미취득한 경우 등 시험실시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자격취득확인서 등)를 제출

Q	【자격증 소지 판단시점】 전산직에 응시하려면 해당 자격증은 언제까지 취득해야 합니까?
A	전산직, 간호직, 사서직, 항공직, 의무직, 약무직 등 일부 직렬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 5에 정하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와 같이 채용에 반드시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렬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예: 면접시험이 최종시험일 경우에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Q	【7급 전산직 응시 자격증】 올해 7급 전산직을 응시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꼭 기사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까?
A	7급공채 전산직에 응시하시고자 한다면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중 1개의 자격증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하여야만 전산직 공무원으로 합격되어 임용될 수 있습니다. 9급공채 전산직의 경우는 위에 열거한 기사급 이상의 자격증,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중 1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Q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지정한 직렬은 어느 것인가요?
A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공채시험 직렬 중,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지정하는 직렬은 전산직뿐입니다. 전산직 이외의 공채시험 직렬은 별도의 관련 자격증이 없더라도 응시가 가능합니다.(예: 토목직류의 경우, 토목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7급공채시험에 응시 가능)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응시자격으로 규정하는 직렬(류) 및 대상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 5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접수가 쉬워집니다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회원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 실명확인 ⇒ 가입신청

1]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로그인 ⇒ “원서접수” 또는 “원서접수등록” 클릭



2 신규원서작성

5(등)급 공채시험

1. 시험 : 응시하려는 시험 선택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안내 | 원서접수 | 시험문제/정답 | 면접시험 | 채용후보자 | 자료실 | 온라인지원 | 마이페이지

원서접수

원서접수등록

원서접수등록

원서접수등록확인

응시료결제

원서접수화면입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에 원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동안에만 응시지역,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원서접수제출이 완료됩니다.
-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다시 접수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는 원서제출이 취소됩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지만,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후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기간 이후에 승인취소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번호는 응시원서접수 기간 중에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응시자에 한하여, 취소마감일 이후에 부여됩니다.
- 응시수수료(5급 10,000원, 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핸드폰결제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크기 3.5cm x 4.5cm(140 x 180 pixel) 기준,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2011.01.17 ~ 2011.01.21 (09 : 00 ~ 21 : 00)	원서접수
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외무)	응시원서 접수기간 2011.01.17 ~ 2011.01.21 (09 : 00 ~ 21 : 00)	원서접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	응시원서 접수기간 2011.01.17 ~ 2011.01.21 (09 : 00 ~ 21 : 00)	원서접수

2. 인적사항 확인 및 추가 기재사항 입력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안내 | 원서접수 | 시험문제/정답 | 면접시험 | 채용후보자 | 자료실 | 온라인지원 | 마이페이지

원서접수

원서접수등록

원서접수등록

원서접수등록확인

응시료결제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한글성명	반장권	*한자성명	潘長權
여권보유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영문성명	BAN JANG KWON
*주민등록번호			
*주소	100-777 우편번호검색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부 5층 채용관리과		
*전화번호	02 - 751 - 1326		
비상연락처			
휴대폰	010 - 8962 - 9328 (SMS 수신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E-mail	banjk @ korea.kr	직접입력	(E-mail 수신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등록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정보는 회원 가입시 등록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
- 한문성명, 여권보유, 비상연락처는 추가 입력

3. 사진등록

[사진등록시 유의사항]

1.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이내이며, 3.5 X 4.5(cm)의 jpg 포맷이고 용량은 100KB 미만으로 하셔야 합니다.
2. 얼굴은 정면으로 촬영해야하며 **얼굴크기**가 전체화면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3. 만약 사진파일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면접시험 및 입용**시까지 사용할 사진이므로 표준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PC의 언어옵션이 한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사진화일명이 한글이 아닌 숫자나 영문으로 되어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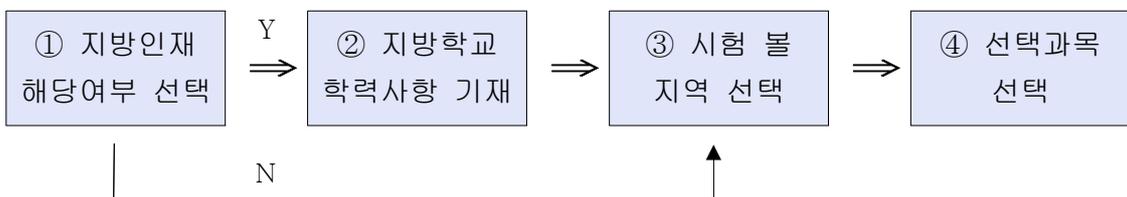
- 사진등록 클릭 ⇒ 사진열기 클릭 ⇒ 미리 준비한 사진 파일을 찾아서 선택 ⇒ 눈금 안쪽 더블클릭 ⇒ 사진등록 버튼 클릭

4. 직렬 선택

*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직렬	전국	<input checked="" type="radio"/> 행정직(일반행정:전국) <input type="radio"/> 행정직(법무행정) <input type="radio"/> 행정직(재경) <input type="radio"/> 행정직(국제통상) <input type="radio"/> 행정직(교육행정) <input type="radio"/> 사회복지직(사회복지) <input type="radio"/> 검찰사무직(검찰사무) <input type="radio"/> 출입국관리
	지역	<input type="radio"/> 행정직(일반행정:지역)

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선택

※ 적용대상시험: 5(등)급 공채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지역별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① 지방인재 해당 여부 선택

②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본인의 지방학교명, 재학기간, 전공학과 등을 표기

응시자는 본인이 지방인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아래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인재재용목표제 안내보기

지방인재에 해당합니까? 예 아니요

※ 아래 내용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소재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없는 지방대학 재학생 이거나휴학생인 자

2. 지방대학 중퇴가 최종학력인 자(지방대학 중퇴 후 서울소재 대학 편.입학 사실이 없어야 함)

3. 그외 지방인재(최종학교를 기재)

지방인재여부

학교명	기간	전공	학교소재지	졸업구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예시 : 연세대 원주캠퍼스, 재학(휴학), 200603(입학년월) ~ 200901(현재년월), 국어국문학, 강원

예시 : 충남대, 중퇴, 199903(입학년월) ~ 200206(제적년월), 국어국문학, 충남

예시 : 강릉제일고등, 졸업, 199903(입학년월) ~ 200302(졸업년월), 강원

허위사실 기재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응시자는 위 내용 1,2,3 중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지방인재 여부 표기 및 학력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내에 수정 가능함
- 지방인재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등을 재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③ 시험 볼 지역(제1차시험 응시희망지역) 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 중 1개 응시희망지역 선택

시험볼지역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④ 직렬별로 주어지는 제2차시험 선택과목 중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 선택

- 임용시험계획 공고문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의 시험과목을 확인하여 표기

선택과목 정보체계론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국제법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지방행정론

나. 지역별 구분모집 선택

- ① 근무예정지역 선택 : 지역별 구분모집 시·도를 선택
- ② 시험 볼 지역 선택 : 제1차시험 응시 희망지역 선택

지역구분모집 (근무예정지역)	※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2011.1.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 가능			
	<input type="radio"/> 서울	<input type="radio"/> 인천	<input checked="" type="radio"/> 경기	<input type="radio"/> 강원
	<input type="radio"/> 대전	<input type="radio"/> 충남	<input type="radio"/> 충북	<input type="radio"/> 광주
	<input type="radio"/> 전남	<input type="radio"/> 전북	<input type="radio"/> 대구	<input type="radio"/> 경북
	<input type="radio"/> 부산	<input type="radio"/> 울산	<input type="radio"/> 경남	<input type="radio"/> 제주
시험볼지역	<input checked="" type="radio"/> 서울			

-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제1차시험 응시지역 (근무예정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충남, 충북
제1차시험 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③ 직렬별로 주어지는 제2차시험 선택과목 중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 선택
- 임용시험계획 공고문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의 시험과목을 확인하여 표기

선택과목	<input checked="" type="radio"/> 정보체계론	<input type="radio"/>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input type="radio"/> 국제법	<input type="radio"/>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input type="radio"/> 정책학	<input type="radio"/> 지방행정론		

다. 전국모집 선택 : 기타직렬 응시자

- ① 시험 볼 지역 선택: 제1차시험 응시희망지역 선택

시험볼지역	<input checked="" type="radio"/> 서울	<input type="radio"/> 대전	<input type="radio"/> 광주	<input type="radio"/> 대구	<input type="radio"/> 부산
-------	-------------------------------------	--------------------------	--------------------------	--------------------------	--------------------------

5.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

장애인 편의지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시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기타장애

전맹(양안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도 10도 이내인 자로서 의사소견상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약시(양안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
 기타 시각장애(시각중복장애 및 안과 질환 등)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시험시간 1.2배 연장
 확대문제지(118%)
 확대문제지(150%)
 확대문제지(200%)
 확대답안지(A3 표기형)
 확대답안지(A3 기입형)
 확대답안지(B4 표기형)
 확대답안지(B4 기입형)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입력 (500자 이내로 구체적으로 기술)

- 장애인 편의제공 서비스 신청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간까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제반서류를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p105의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안내 참조)

6. 영어능력검정시험 :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입력

머학시험종류	TOEIC <input type="button" value="v"/>		
등록번호(수험번호)	<input type="text"/> (영어, 숫자만 입력가능)		
시험일자	<input type="text"/> (YYYYMMDD)	시험점수	<input type="text"/>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대하여 입력(2012~)

7. 저장하기 : 화면 하단“등록”()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메시지 후 결제창으로 연결

나. 지역별 구분모집 선택

- ① 근무예정지역 선택 : 지역구분 시·도 선택
- ② 시험 볼 지역 선택 : 필기시험 응시희망지역 선택
 -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되며, 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시험단위인 경우, 해당 시·도 중 하나의 지역 선택 (서울·인천·경기 ⇒ 서울·인천·경기 중 택1)

지역구분모집 (근무예정지역)	※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1.1.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0"> <tr> <td><input checked="" type="radio"/> 서울·인천·경기</td> <td><input type="radio"/> 강원</td> <td><input type="radio"/> 대전·충남·충북</td> <td><input type="radio"/> 광주·전남</td> </tr> <tr> <td><input type="radio"/> 전북</td> <td><input type="radio"/> 대구·경북</td> <td><input type="radio"/> 부산</td> <td><input type="radio"/> 울산·경남</td> </tr> <tr> <td><input type="radio"/> 제주</td> <td colspan="3"></td> </tr> </table>	<input checked="" type="radio"/> 서울·인천·경기	<input type="radio"/> 강원	<input type="radio"/> 대전·충남·충북	<input type="radio"/> 광주·전남	<input type="radio"/> 전북	<input type="radio"/> 대구·경북	<input type="radio"/> 부산	<input type="radio"/> 울산·경남	<input type="radio"/> 제주		
<input checked="" type="radio"/> 서울·인천·경기	<input type="radio"/> 강원	<input type="radio"/> 대전·충남·충북	<input type="radio"/> 광주·전남									
<input type="radio"/> 전북	<input type="radio"/> 대구·경북	<input type="radio"/> 부산	<input type="radio"/> 울산·경남									
<input type="radio"/> 제주												
시험볼지역	<input type="radio"/> 서울 <input type="radio"/> 인천 <input checked="" type="radio"/> 경기											

다. 전국 모집 선택

- ① 시험 볼 지역 선택 : 필기시험 응시희망지역 선택

시험볼지역	<input checked="" type="radio"/> 서울 <input type="radio"/> 인천 <input type="radio"/> 경기 <input type="radio"/> 강원 <input type="radio"/> 대전 <input type="radio"/> 충남 <input type="radio"/> 충북 <input type="radio"/> 광주 <input type="radio"/> 전남 <input type="radio"/> 전북 <input type="radio"/> 대구 <input type="radio"/> 경북 <input type="radio"/> 부산 <input type="radio"/> 울산 <input type="radio"/> 경남 <input type="radio"/> 제주
-------	---

라. 의무영사직렬 선택과목 선택 : 선택과목 중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 선택

- 5.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
- 6. 저장하기 : 화면 하단 “등록”()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메시지 후 결제창으로 연결

□ 응시수수료 안내

- 5(등)급 공채시험 : 10,000원
- 7급 공채 : 7,000원
- 9급 공채 : 5,000원

□ 인터넷 처리비용

- 휴대전화결제 처리비 : 5(등)급 공채시험 500원, 7급 350원, 9급 250원
- 카드결제 처리비 : 5(등)급 공채시험 330원, 7급 230원, 9급 160원
 - ※ 체크카드, 머니카드 등 직불성격을 갖고 있는 카드는 사용 불가
- 계좌이체 처리비 : 건당 187원

□ 응시수수료 결제방법

가. 결제창 접속 : 응시원서 접수시 “등록” 버튼 클릭 후 응시료결제 화면,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확인 메뉴 또는 마이페이지 메뉴
에서 “결제하기” 버튼 클릭 후 응시료 결제 화면

나. 결제 수단 선택 :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중 1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안내 | 원서접수 | 시험문제/정답 | 면접시험 | 채용후보자 | 자유실 | 온라인면접 | 마이페이지

원서접수 Application

응시료결제 | 국가공무원시험 원서접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서접수등록
원서접수등록확인
응시료결제

원서접수화면입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에 원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결제방법

휴대폰 결제방법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승인번호 메시지 수신 > 승인번호 입력 > 결제완료
※ 타인명의의 휴대폰으로 결제할 경우, 입력할 주민등록번호는 휴대폰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이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결제방법
이동은행선택 > 개인정보입력 > 결제확인 결제완료
※ 본인 통장만 가능

카드 결제방법
지불정보, 인증정보 입력 > 확인창 매출전표화면 > 결제완료
※ 체크카드, 커니카드 등 직불성격을 갖고 있는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지금부터 응시료 결제를 시작합니다.
2. 전자결제시 뒤편가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자결제 대행업체에서 결제가 되었다라도 [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메뉴를 선택하여 정상적으로 결제가 결제가 처리되었는지 결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결제 | 신용카드결제 | 계좌이체결제 | 결제하기

다. 응시수수료 결제

[휴대폰 결제방법]

-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승인번호 메시지 수신 ▶ 승인번호입력 ▶ 결제완료
- ※ 타인명의의 휴대폰으로 결제할 경우, 입력할 주민등록번호는 휴대폰 가입자의 주민등록 번호이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결제방법]

- 이용은행선택 ▶ 개인정보입력 ▶ 결제확인 ▶ 결제완료
- ※ 본인 통장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방법]

- 지불정보, 인증정보입력 ▶ 확인창 ▶ 매출전표확인 ▶ 결제완료
- ※ 체크카드, 머니카드 등 직불성격을 갖고 있는 카드는 사용할 수 없음

신용카드 카드 선택 ▶ 결제 정보 ▶ 인증 정보 ▶ 결제 완료

결제안전부 암호화 작동중

상 품 명 : 2010년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행정)
 구매자명 : 최영주 금액 : 10,330 원

일반결제

카드번호 [] - [] - [] - []
 유효기간 월 [] 년 []
 카드구분 개인 법인 해외
 비밀번호 []xx (앞 2자리)
 주민번호 xxxxxx-[] (뒤 7자리)
 할부기간 일시불 (5만원이상 할부가능)

> 입력 후,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현대(M포인트1%적립, 무이자할부시 적립제외)

결제가안될때

1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로그인,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확인 > 접수확인/수정 클릭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 | 로그아웃 | 사이트맵 | 고객센터 >

시험안내 | 원서접수 | 시험문제/정답 | 면접시험 | 채용후보자 | 자료실 | 온라인민원 | 마이페이지

원서접수내역 | 응시료결제내역 | 응시표출력 | 이의신청내역 | 합격/성적조회 | 개인정보수정 | 회원탈퇴

마이페이지
My Page

원서접수내역

원서접수내역조회

시험	응시번호	접수일자	결제여부	결제일자	접수확인	접수증출력	응시표출력	접수취소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10040556	2011-08-1	결제완료		접수확인/수정	접수증출력	응시표출력	접수취소

- 결제완료/결제하기 : 결제한 경우“결제완료”, 미결제 상태인 경우“결제하기”
- 접수확인/수정 : 접수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줌
- 접수증 출력
- 응시표 출력
- 접수취소 : 취소마감일까지 언제든지 취소 가능, 취소마감일이 지나면 글씨가 검정색으로 바뀌며 비활성화

2 접수내용 확인·수정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 | [로그아웃](#) | [사이트맵](#) | [원격지원 >](#)

시험안내
원서접수
시험문제/정답
면접시험
채용후보자
자료실
온라인지원
마이페이지

원서접수등록
원서접수등록확인
응시료결제
응시표출력

마이페이지
원서접수내역
원서접수내역 관련 내용입니다.

- 원서접수내역
- 응시료결제내역
- 응시표출력
- 이의신청내역
- 합격/상적조회
- 개인정보수정
- 회원탈퇴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 한글성명	반장권	* 한자성명	반장권
여권보유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 영문성명	ban jang kwon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100-777 [우편번호검색]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부 5층 채용관리과		
* 전화번호	[02] - [751] - [1326]		
비상연락처	[] - [] - []		
휴대폰	[010] - [] - [] (SMS 수신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 E-mail	banjk [] @ korea.kr	직접입력	(E-mail 수신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input type="radio"/> 행정직(일반행정:전국) <input type="radio"/> 행정직(재경) <input type="radio"/> 행정직(교육행정) <input type="radio"/> 경찰사무직(경찰사무) <input checked="" type="radio"/> 행정직(일반행정:지역)	<input type="radio"/> 행정직(법무행정) <input type="radio"/> 행정직(국제통상) <input type="radio"/> 사회복지직(사회복지) <input type="radio"/> 출입국관리
--	--

장애인 편의지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문보기 확대답안지 견본보기 확대문제지 견본보기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시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기타장애

전쟁(양안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도 10도 이내인 자로서 의사소견상 점차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약시(양안교정시력 0.04이상 0.30미만)
 기타 시각장애(시각중복장애 및 안과 질환 등)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시험시간 1.2배 연장
 확대문제지(118%)
 확대문제지(150%)
 확대문제지(200%)
 확대답안지(A3 표기형)
 확대답안지(A3 기입형)
 확대답안지(B4 표기형)
 확대답안지(B4 기입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허용

※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입력 (500자 이내로 구체적으로 기술)

*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2011.1.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 가능

<input type="radio"/> 서울	<input type="radio"/> 인천	<input checked="" type="radio"/> 경기	<input type="radio"/> 강원
<input type="radio"/> 대전	<input type="radio"/> 충남	<input type="radio"/> 충북	<input type="radio"/> 광주
<input type="radio"/> 전남	<input type="radio"/> 전북	<input type="radio"/> 대구	<input type="radio"/> 경북
<input type="radio"/> 부산	<input type="radio"/> 울산	<input type="radio"/> 경남	<input type="radio"/> 제주

사험분지역 서울

선택과목 정보체계론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국제법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지방행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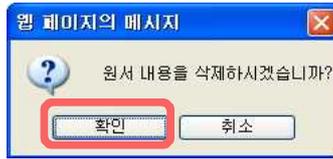
시험종류 TOEIC

등록번호(수험번호) 23445436 (영어, 숫자만 입력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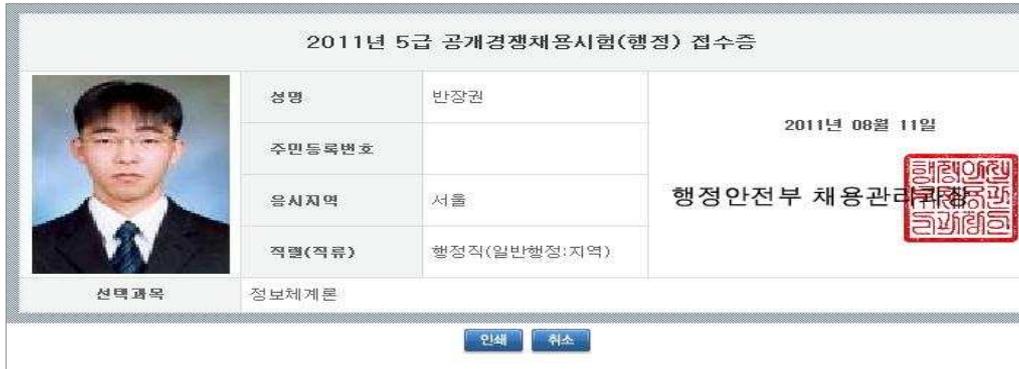
시험일자 20100115 (YYYYMMDD) 시험점수 800

- 응시번호 : 접수기간, 취소마감일이 지난 후 응시표 출력 기간에 확인 가능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수정이 불가능한 내용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

③ **접수취소** : 원서접수기간 및 취소마감일 종료 전에는 접수취소 가능



④ **접수증 출력**



※ 여백조정 : 응시표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이 잘려서 출력될 경우 오른쪽 여백을 조정 한 후 출력-“파일”⇒“페이지 설정”⇒ 왼쪽, 오른쪽 여백을 최소로 한 후 출력

⑤ **응시표 출력**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안내 | 원서접수 | 시험문제/정답 | 면접시험 | 채용후보자 | 지도실 | 온라인모의 |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My Page

응시표출력 | 응시표출력 관련 내용입니다.

- 원서접수내역
- 응시료결제내역
- 응시표출력
- 이의신청내역
- 합격/성적조회
- 개인정보수정
- 회원탈퇴

● **접수확인/결제/출력**

-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는지 확인
- 컬러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 흑백도 관계없음
- 응시표가 잘려서 출력될 경우 : 파일 -> 페이지설정 -> 여백을 모두 5로 조정한 후 출력
- 응시표의 이미지가 출력이 안될 경우 :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인쇄에 체크한 후 출력
- 점수를 따라 결취한 뒤 수험장에 지참할 것

2011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응시표

	성명	반장권	2011년 08월 11일 행정안전부 채용관리부
	주민등록번호		
	응시번호	10040556	
	응시지역	서울	
선택과목	정보체계론	직렬(직류)	행정직(일반행정:지역)

인쇄 취소

[필독사항]

- 응시원서에 기재된 응시지역의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시간 및 장소는 장소공고일에 공고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당일 공고된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에 접속하여 재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 통신장비(휴대전화,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는 시험기간 중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종료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및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험성적은 지정된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부정행위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서 정한 당해 시험의 정지, 무효, 합격결정 취소,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우편 접수】우편(창구) 접수가 가능한지요?
A	<p>2001년 인터넷 원서접수 시범도입이래, 인터넷 원서접수율 추이를 감안하여 2005년에 창구접수를, 2006년에 우편접수를 폐지하고, 인터넷 원서접수를 전면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현재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우편접수를 실시하지 않습니다.</p> <p>《인터넷 원서접수의 좋은 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수기간 중 응시직렬, 응시지역 등 접수내용 수정기회 부여 2. 원서접수 취소기간 신설 및 응시수수료 전액환불 3. 오후 21:00까지 야간접수 실시 4. 언제든지 응시표 재출력 가능 5. 시험정보, 합격여부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전자우편, 휴대폰) 제공 6. 수험생 인적사항이 인쇄된 답안지 제작·제공 등
Q	【응시지역 변경】제가 원서접수기간 중 선택한 응시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까?
A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중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응시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취소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번호 부여 및 시험장 임차 등 시험시행 준비관계로 응시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모집단위 이중접수】모집단위별 경쟁률을 고려, 응시직렬을 결정하고 싶은데 원서를 복수로 낼 수 없는지요?
A	응시원서의 이중접수를 허용하게 되면 허수 경쟁률의 증가로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증가되는 한편, 시험장 임차 등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이 파생되므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해당시험별 안내메뉴에서 관련통계를 클릭하면 과년도 직렬별 경쟁률 및 합격선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어 응시직렬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접수 취소】원서접수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기간 및 취소마감일 종료('11년의 경우 21:00시 까지) 전에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Q	<p>【주민등록 말소자 원서접수 가능 여부】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주민등록 말소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나요?</p>
A	<p>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공무원 시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귀하의 신분 및 연령 확인 등을 위해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일단 말소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바랍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담당부서에 조회요청하여 귀하의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필기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주민등록 말소상태를 반드시 해소하셔야만 합니다.</p>
Q	<p>【주소지 및 연락처 수정】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 주소지 및 연락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p>
A	<p>주소,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등은 원서접수 종료 후라도 언제든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필수 인적정보는 수험생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명, 주민번호 정정 등의 사유로 필수 인적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접수팀(02-751-1471)으로 연락하시고, 입증서류(주민등록초본) 및 정정신청서를 채용관리과로 제출하셔야만 합니다.</p>
Q	<p>【지역구분모집단위와 주소지 입력】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나 주민등록지는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산지역 모집에 응시하려면 응시원서의 주소란에 어떤 주소를 입력해야 하나요?</p>
A	<p>인터넷 원서접수시 입력하는 주소는 수험생과의 연락 등 시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력하는 것으로 어느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지역구분 모집 응시자의 응시요건 판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9급 공채)에 의해 판단하며, 원서접수시 입력한 주소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p>
Q	<p>【응시직렬 등 수정가능 여부】 원서접수 종료 후, 응시직렬, 선택과목, 응시지역 및 지방인재여부 표기 등을 수정할 수 있는지요?</p>
A	<p>원서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중에는 응시원서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취소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직렬, 근무예정지역(지역구분 모집단위), 시험불지역(응시지역), 선택과목, 시험면제 여부,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지역인재 여부 표기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p>

Q	【응시표 재출력】 응시표를 분실했습니다. 응시표를 재출력할 수 있나요?
A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에 접속한 후 각 시험별 「접수확인·결제·출력」에서 시험종료시까지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Q	【7급과 9급 중복접수】 시험 중복접수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7급 공채 및 9 Q 급 공채 중 하나에만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요?
A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7급 공채와 9급 공채는 시험일시와 원서접수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7·9급 공채시험을 모두 합격하실 경우 하나의 시험에 대해서 임용포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응시번호 부여】 친구와 원서접수를 같이하면, 응시번호가 연속으로 부여되어 Q 시험장에서 앞뒤로 앉아 시험 볼 수 있나요?
A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공채시험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응시번호는 원서접수가 종료되고, 출원인원이 최종 확정된 이후 부여되며, 부정행위 방지차원에서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응시번호를 연속으로 부여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수수료 이중 결제】 응시수수료가 이중으로 결제되었습니다.
A	원서접수 취소마감일이 지난 후, 응시수수료 정산과정에서 중복결제 사항을 확인합니다. 중복결제가 된 경우에는 승인취소(카드, 휴대폰 결제) 또는 환불조치(계좌이체)를 해드립니다. 처리기간은 신용카드·휴대폰 회사의 사정에 따라 14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5. 다양한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공직환경이 열립니다

□ 근거 : 「 국가공무원법 」 제37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조 및 제19조

□ 주요내용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근무예정 지역별 · 근무예정 기관별 ·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음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음

□ 거주지제한 및 임용안내(당해연도의 공고문을 통해 거주지 제한요건 공고)

시험단위	주요내용
5급 공채 중 지역 구분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1.1.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②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③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대체됨
7·9급 공채 중 지역 구분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입리더과정 수료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1.1일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3개월이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원서접수일이나 시험일과는 관련이 없음 •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 • 부처별로 모집하면서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지방 소속기관에 임용(예:우정사업본부 지역구분모집) • 9급 우정사업본부 행정직의 합격자는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 • 9급 행정직의 경우, 부처배정시 지역모집 응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 ‘본인의 출신학교’의 인정범위

- 최종학교가 아닌 초·중·고교는 졸업한 학교만 인정
- 최종학교인 초·중·고교와 대학, 대학원은 졸업, 중퇴, 재학, 휴학 등 인정
- 학교의 소재지는 본교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출신 ‘분교’, ‘단과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인정

※ 예시

학교명	분교	소재지	지역구분모집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서울
	자연과학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경기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
	원주캠퍼스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 전국모집과 지역구분모집 비교

구 분	거주지 요건	근무예정지역	합격자 결정	응시지역
전국 모집	제한없음	임용예정부처의 사정 에 따라 각 지역으로 발령	응시지역에 관계없이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격자 결정 (전국이 하나의 합격선)	편리한 지역 선택 (응시지역은 주민등록지, 발령지역 등과 관련 없음)
지역별 구분모집	거주지 제한있음	<5급 공채> 구분모집 시·도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 <7·9급 공채> 구분모집 지역내의 국 가 일선기관에 임용	구분모집 지역별 응시 자를 대상으로 합격자 결정 (합격선이 지역별로 다름)	구분모집 지역에서 응시 (여러개의 시도가 하나의 구분모집 단위일 경우 그 중 응시를 원하는 시·도 선택)

□ 합격자 전보제한(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

-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금지
- 다만,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시 전보 가능

▶ 지방직 공채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변경(2013년 부터 본격 적용)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요건에서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단일화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 당해 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
- 특별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1월 1일로 동일 적용
- *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 시험 담당부서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02-2100-3777) 문의
- * 지방직 임용시험계획 공고 당시, 거주지 제한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임용시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 지역(시·군·구)별 구분모집이 있는 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필요

Q	【지역별 구분모집제 폐지건의】 지역별로 모집함으로써 특정지역의 합격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면 향후 지역간 전보 등을 생각할 때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봅니다.
A	지역별 구분모집제는 지역출신 인재를 발탁하여 충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자신과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전국을 순수하게 하나의 단위로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임용을 한다면, 해당 부처의 인력운용 사정에 따라서는 임용예정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규충원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인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지역별 구분모집제는 그 나름대로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전보제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발령지역 및 기관】 5급 공채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단위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어느 기관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까?
A	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단위에 응시하여 합격한 수험생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신입리더과정을 수료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됩니다. 구체적인 발령기관 및 발령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리부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7·9급 공채의 지역별 구분모집 단위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예:부산지방병무청, 광주지방보훈청)에 임용됩니다.
Q	【전보 제한】 지역별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만 근무를 해야 하나요?
A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지역별 모집 공채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되나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이때 3년은 근무기간을 말하므로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에 따른 경우에는 전보가 가능합니다.
Q	【지역별 모집단위와 시험 볼 지역 선택】 9급공채 행정직 광주·전남지역구분 모집단위에 응시하는 수험생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아닌 서울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도 동일)
A	9급공채 행정직 광주·전남지역 모집단위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을 광주 또는 전남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스템상 서울지역 선택 불가능) 응시번호에는 지역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국모집 응시자의 지역코드는 응시 희망지역을 지역별 모집 응시자의 지역코드는 지역별 모집단위(하나의 시험단위)를 의미합니다. 시험장 배정, 답안지 관리 및 전산채점 등 모든 시험과정이 응시번호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오류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일 시험단위(구분모집단위 포함)의 응시자에게는 응시번호가 연속하여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구분 모집단위에는 응시지역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5급 공채시험 지역별 모집 응시요건 판단】 2011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2010년 1월 1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A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에 당해 지역단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즉, 2011년 1월 1일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합산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과거의 주민등록사항은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 변동사항을 근거로 확인합니다.
Q	【등록기준지의 개념】 기존의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대체되었다는데, 등록기준지의 개념이 무엇인지요? 또 종전의 호적이 등록기준지로 자동 변경되나요?
A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본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작년부터 본적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로 대체되었으며, 최초의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신고 절차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올해 5급공채시험에서 어머니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지역모집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2008.1.1.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호적등초본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위 5가지 증명서에는 해당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5가지 증명서 중 하나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시면 어머니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군 복무지역 인정 여부】 강원도에서 2년 2개월간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5급공채시험 강원지역 모집단위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A	5급공채시험 지역별 모집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동안 군 복무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여타 다른 요건(등록기준지, 출신학교 소재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강원지역 모집단위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출신학교 소재지 판단】 ○○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서울에, 자연계열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출신인 저는 행시 행정직 서울지역단위에 응시가 불가능합니까?
A	특정대학의 소속 단과대학이 2개 이상의 광역시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행정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의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규정은 수험생의 출신 단과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자연계열 단과대학이 있는 경기 지역 구분모집 단위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Q	【9급 거주지 제한규정】 9급 공채시험 지역구분모집 단위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저의 본적지에서도 시험응시가 가능한지요?
A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7·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지 제한요건은 연도별 시험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7·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2011.1.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지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하지 않는 한 등록기준지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 단위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7·9급공채 수험생들이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변인의 말만 듣고 본적지에 원서를 제출하여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지역단위 세분화】 9급 공채 우정사업본부 지역구분단위가 대전·충남지역과 충북지역으로 세분화되었던데 그 사유와 거주지 제한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십시오.
A	대전·충남과 충북의 분리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임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지역별 모집 거주지제한 규정에 따라 2011.1.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단위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2011.1.1일 현재,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대전·충남지역 단위에만 응시가 가능하며, 충북지역 단위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Q	【발령기관 구체적 안내】 7·9급 공채 지역별 모집에 합격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요?
A	7·9급공채의 행정직(일반행정직류) 지역별 모집단위의 합격자는 대부분 지방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임용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관청에 소속하여 일정한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그 중앙 관청의 특수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며, 지방병무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사무소, 지방기상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행정직의 경우는 지방국세청(세무서)을 제외한 기관에 근무하게 됩니다. 9급공채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지역구분 모집단위의 합격자는 대부분 해당 지역소재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Q	<p>【모집단위내의 거주지 이전】 저는 9급 행정직 대구·경북지역 모집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 중순경에 대구에서 경북으로 주소를 옮기려하는데요, 그러면 응시자격이 없어나요?</p>
A	<p>9급 공채의 지역모집단위를 보면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모집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대구 또는 경북지역에 주민등록이 유지된 경우라면 9급 행정직 [대구·경북] 모집단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일 모집단위에 속한 지역 내에서의 주민등록 이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12.5일에 대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1.10일에 다시 경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도 경북지역에 3.4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면 거주지 제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p>
Q	<p>【주소지 이전에 따른 원서 효력】 지역별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낸 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구분모집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효력이 없어집니까?</p>
A	<p>우리부에서 시행하는 7·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응시자는 2010년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충족된 날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응시자격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예 : 부산지역 구분모집 응시자가 부산에 2009.12.5일부터 2010.3.4일까지 3개월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응시요건이 충족되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0.3.5일 이후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응시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p>
Q	<p>【지방직 공채의 거주지 제한규정】 저는 본적(등록기준지)은 전남이고, 주민등록은 현재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 공무원 Q 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까?</p>
A	<p>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거주지 제한규정은 매년 시험실시기관장인 시·도지사가 정하여 임용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거주지 제한규정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p>

□ 근거 :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조

□ 주요내용

-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장애인 구분모집 적용시험 : 7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직렬 : 행정직군(공안분야 제외) 및 기술직군
 - 장애인 구분모집 비적용 직렬 : 교정직(교정, 교회, 분류), 보호직,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공안직
-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인원 : 비적용 직렬을 제외한 총 선발인원(5(등)급 공채, 7·9급공채)의 6%이상
 - ※ 구분모집 비율확대 : 2%('89) → 3%('97) → 5%('00) → 6%('09~)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1급~7급)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판단 및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류) 외의 다른 직렬(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Q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요건】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A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Q	【연도별 장애인 선발비율】 행정안전부 시행, 공채시험에서 전체 채용인원 중 장애인은 얼마나 되나요?
A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3%이상이며, 장애인 신규채용비율은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 채용하되, 직종별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3%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 비율을 6%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5(등)급 공채, 7·9급 공채)에서는 공안직을 제외한 전체 채용인원의 장애인 신규채용비율을 6%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5(등)급 공채시험에서는 별도의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상이등급자 장애인등록 여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장애인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A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상이군경이라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구분모집 대상자 가산점】 저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더라도 유공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A	그렇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과 유공자 가산점은 각각 별도의 법령에 의해 적용되는 것으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유공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합격 30% 상한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에서는 유공자 가산특전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자 사정이 이루어집니다.
Q	【장애인의 일반인 모집단위 응시여부】 상이등급 7급(경증)인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아닌 일반인 시험단위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A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모집단위 별도공고】 장애인만이 응시하는 장애인 채용공고가 별도로 나 Q 는 것인가요? 그리고 장애의 등급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한가요?
A	7·9급 공채시험에서는 공안분야 (교정직렬, 검찰사무직렬 등)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 렬에서 장애인을 구분모집하고 있으며 연초에 공고되는 당해년도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에 그 모집인원을 구분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장애인으 로 유효하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장애의 등급에 관계없이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Q	【장애인 등록 취소】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는 장애6급이었으나, 이후 재진단을 받아 장애등 록이 취소되면 시험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지요?
A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다면 이후 건강이 회복되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이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지급 대상자】 이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장애급여지급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이었는데, 현재는 장애인 구분모집 대 상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A	정부의 장애인 채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 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는 2004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활법」 개정으로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별도로 장애인 등 록이 가능한 데 따른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장애인등록 후 장 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는 관할(주민등록지)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가 가능 합니까? 취업지원가산점도 부여됩니까?
A	지원공상군경도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구분모 집 증빙서류(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로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공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 인하여야 합니다.

□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및 제20조의 4

□ 적용대상시험

- 일반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 기능직 채용은 각 부처별로 시행하며, 부처별 연간 채용인원의 1% 채용

□ 주요내용

-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 선발예정인원의 1%를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

□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판단 및 유의사항

- ‘2년 이상 계속하여 수급한 자’란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예) 2011년 시험응시자는 2009.1.1.전에 수급자로 선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계속하여 수급한 자
 - ※ 군복무로 인한 급여 중지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능.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Q	<p>【응시자격】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저는 수급자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Q 응시자격이 있는지요?</p>
A	<p>시험응시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어야 하므로 부모님은 수급자이나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가구단위로 수급자를 선정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로 보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급자인지를 시험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p>
Q	<p>【저소득층 여부 확인】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 싶은데 제가 저소득층인지 Q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나요?</p>
A	<p>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부서에 문의하셔서 자격여부와 수급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p>
Q	<p>【연도별 저소득층 선발규모】 행정안전부 시행, 공채시험에서 전체 채용인원 중 Q 저소득층 채용비율은 어느 정도 인지요?</p>
A	<p>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합니다.</p>
Q	<p>【수급자 자격 취소】 응시원서 접수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이후 가구의 Q 상황이 변동되어 급여가 중지되면 시험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지요?</p>
A	<p>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저소득층 응시자로서 자격요건에 해당했다면 이후 발생한 가구원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에 따라 급여가 중지되었더라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p>
Q	<p>【저소득층 구분모집이란】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려고 합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인원의 1%를 구분모집제로 선발한다고 하는데 무슨 Q 의미인지 알려주세요.</p>
A	<p>저소득층 구분모집이란 일반 응시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자들만 구분하여 지원받고 필기·면접 등 일련의 선발과정에서 저소득층 응시자끼리의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는 뜻입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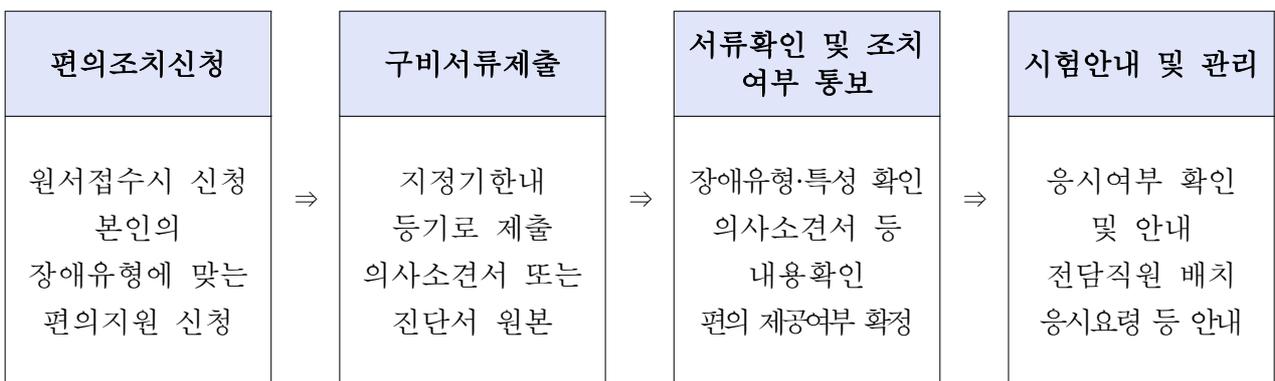
□ 적용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 5(등)급, 7급 및 9급 공채
- 특별채용시험
 - 중증장애인특별채용시험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외부적 신체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시각장애인(전맹인 및 약시자, 망막이상, 녹내장 등 질환자 포함)
 -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 청각장애인(농아인 및 난청인)
 - 기타 장애인(복합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편의조치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지원절차



가.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 신청기간 : 원서접수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 5(등)급 공채 2·3차시험, 7·9급 공채 면접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별도로 편의지원 신청을 받음

○ 신청방법 : ①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

② 응시원서 등록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

③ 우리부에서 유선으로 신청내용 및 특이사항 등 직접 확인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방법

① 응시원서 작성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여부를 선택하고, 본인의 장애유형,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항목, 장애유형 및 정도, 필요성 등 기재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요건 및 내용' 팝업창 반드시 확인

장애인 편의지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시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기타장애

전맹(양안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도 10도 이내인 자로서 의사소견상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약시(양안교정시력 0.04이상 0.30미만)

기타 시각장애(시각중복장애 및 안과 질환 등)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장애인편의제공

시험시간 1.2배 연장
 확대문제지(118%)
 확대문제지(150%)
 확대문제지(200%)
 확대답안지(A3 표기형)
 확대답안지(A3 기입형)
 확대답안지(B4 표기형)
 확대답안지(B4 기입형)
 보조공학기기 자참 허용

※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입력 (500자 이내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구비서류 제출

- 제출기간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제출
- 제출처 : (100-17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무교동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 구비서류
 - 종합병원 전문의가 발급한 소견서(경우에 따라 진단서 추가) 원본 1부
 - ※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장애유형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

제출대상	미제출대상
시각장애인(전맹, 약시), 기타 시각장애인 상지 지체장애인(중증, 경중) 뇌병변장애인(중증, 경중)	하지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 ◆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전문의 소견서 원본만을 인정함
 -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찾기서비스]→[병원·약국]을 차례로 클릭하여 지역별 종합병원을 조회할 수 있음
- ◆ 장애인 응시자는 본 안내자료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된 답안지·문제지 견본 등을 가지고 종합병원 전문의에게 진찰(상담)받은 후,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대상은 시험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음성지원 s/w, 대필 등을 신청한 수험생이 해당되며,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의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할 경우에 편의조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 특히, 국가유공자증으로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이등급자가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에는“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종합병원에 가실 때,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장애등급 기준표”를 출력하여 가져가시기 바람

다. 의사소견서 작성 샘플

-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샘플 녹색 표시 내용)
 - 시각 장애 : 좌/우 각각의 교정시력 포함
 - 뇌병변 장애 : 장애등급 및 장애의 정도 포함
 - 상지지체장애 : 장애등급 및 상지지체 여부 확인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샘플 적색 표시 내용)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샘플 청색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 시 : 시험시간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가 필요할 경우

- 시험시간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의사소견서에 의하여 편의 제공

장애유형		의사소견서 샘플
시각장애	전맹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0.03, 우0.02, 시야 5도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크기)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점자문제지, 음성지원S/W,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약시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0.1, 우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크기)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불요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과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뇌병변장애	중증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2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문제풀이 및 답안작성과 관련해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현저하게 손상되어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경증	※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불요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과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상지지체장애	중증	상기인은 지체장애 3급(상지지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경증	※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불요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과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라. 서류확인 및 제공여부 통보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판단
- 구비서류 확인 후, 유선상으로 제공여부 및 응시요령 등 안내

마. 시험안내 및 관리

- 시험시행 전, 장애인 수험생 응시여부 확인 및 시험안내
- 시험전일, 희망자에 한해 시험장 안내 및 응시요령 등 설명
- 시험당일, 중증장애인 전담 도우미를 배치하여 안내

check point

▶ 시험시간 연장의 신청요건 및 검증방법

• 신청요건

- 전맹 또는 약시에 해당하면서 시력손상으로 문제 판독이나 OMR답안지 작성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상지 지체장애인에 해당하면서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OMR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려운 자
 - ※ 단, 중증(1~3급)이 아닌 경증(4~6급)의 경우 시험시간 연장을 받기 위해 의사소견서 외에 제3의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별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면서, 손, 목, 눈 등의 운동장애로 문제지 판독 및 OMR답안지 작성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
 - ※ 단, 중증(1~3급)이 아닌 경증(4~6급)의 경우 시험시간 연장을 받기 위해 의사소견서 외에 제3의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별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검증방법

-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함께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받아 장애종류 및 정도 등을 확인
- 의사소견서상으로 신청자의 장애정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소견서 외에 진단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소견서 발급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

1. 시험응시방법과 관련하여 장애유형별로 제공되는 편의지원은 다음과 같으며, 장애인 수험생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다음의 기준을 참조하여 원하는 편의지원항목을 직접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응시원서 접수시 안내)

가. 시각장애인 : 전맹, 약시 및 기타 시각장애인으로 구분하여 편의를 지원합니다.

○ 전맹(점자 사용자)

구분	주요내용
지원요건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로서 의사 소견서상 점자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구비서류	의사소견서 원본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 전년도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지원 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에 한해 당해년도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함 ※ 의사 소견서로 응시자의 시력과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점자문제지 ②음성지원 S/W가 탑재된 컴퓨터 ③시험시간 연장(1.5배)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 답안지 작성은 음성지원 컴퓨터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점자답안지를 제공받아 표기할 수 있음 - 필요시, 점자판·점필 등의 점자도구 지참 허용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점자문제지 ②음성지원 S/W가 탑재된 노트북 ③시험시간 연장(1.5배) 중 원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 음성지원 컴퓨터에 답안을 직접 입력 - 법령집을 음성지원 컴퓨터에 셋팅하여 스크린리더로 청취 가능 《면접시험》 - ①장애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관련서식 점자 지원 ④자료작성용 노트북 제공 및 프린터 출력 제출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check point

- 전맹 수험생에게는 일반 문제지와 답안지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직접 답안을 입력하도록 하나, 점자답안지를 원하는 경우는 별도 제작하여 제공
- ※ 시험시간 연장은 7·9급의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에만 해당 됨

○ 약시자(확대문자 사용자)

구분	주요내용
지원요건	두눈의 교정시력이 0.04초과 0.3미만인 자로서, 의사소견서상 시력손상으로 인하여 문제 판독 및 통상의 OMR답안지 작성이 어려워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제공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구비서류	<p>의사소견서 원본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지원 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에 한해 당해년도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함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의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p>※ 의사 소견서로 응시자의 시력과 해당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p>
지원내용	<p>《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확대문제지 ②확대답안지 ③시험시간 연장(1.2배)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 필요시, 확대독서기·확대경·조명기구 등 지참 가능 <p>《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확대문제지 ②답안작성용 컴퓨터 ③시험시간 연장(1.2배)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 법령집을 컴퓨터에 셋팅하여 화면을 확대하여 봄 <p>《면접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장애 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작성서식 18point로 확대 제공 ④자료작성용 노트북 제공 및 프린터 출력 제출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check point

-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를 제공받는 수험생에게는 별도로 일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음
- 확대문제지는 A4용지에 1단으로 구성하며, 기존의 신명조 12P를 견고딕 14P(확대비율 118%) 18P(150%) 24P(200%)세종류로 확대하였음
- 확대답안지는 용지크기를 A3 또는 B4크기로 확대하고, 답안(숫자)를 직접 기재할수 있는 형태와 흑색사인펜으로 마킹하는 형태의 답안지를 함께 제공하며, 총 네가지 형태의 답안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음
 - ※ 시험시간 연장은 7·9급의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에만 해당 됨
 - ※ 시각·지체·뇌병변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확대문제지·확대답안지와 동일함
- 확대독서기 등의 특수기구 중 저장 또는 통신기능이 있는 기기는 지참이 제한되며, 만약, 시험 도중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간주됨

○ 기타 시각장애인(예 : 망막손상, 녹내장 등)

구분	주요내용
지원요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전맹, 약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각장애의 유형 및 특성(예; 망막이상, 녹내장 등)으로 인해 의사소견서상 확대문제지 등 편의제공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구비서류	의사소견서 원본(시간연장시 진단서 추가)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 전년도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지원 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에 한해 당해년도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함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의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의사소견서로 응시자의 시력과 해당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 하여야 함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 확대문제지 ② 확대답안지 ③ 시험시간 연장(1.2배)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 필요시, 확대독서기·확대경·조명기구 등 지참 가능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 확대문제지 ② 답안작성용 컴퓨터 ③ 시험시간 연장(1.2배)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 법령집을 컴퓨터에 셋팅하여 화면을 확대하여 봄 《면접시험》 - ① 장애 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고지 ② 전담 도우미 지원 ③ 작성서식 18point로 확대 제공 ④ 자료작성용 노트북 제공 및 프린터 출력 제출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나. 뇌병변장애인 :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편의를 제공합니다.

○ 중증장애인 : 뇌병변장애 1~3급 및 상이등급 1~3급

구분	주요내용
지원요건	뇌병변 장애 1~3급(동종 장애로 인한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자로서, 의사소견서상 필기능력 장애로 인하여 확대문제지 등 편의제공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구비서류	의사소견서 원본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 전년도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지원 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에 한해 당해년도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함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의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의사 소견서로 응시자의 시력과 해당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확대문제지 ②확대답안지 ③ 문제지에 직접 답안 표기 후 대필 실시 ④시험시간연장(1.2배)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있음 - 필요시, 필기 보조도구 지참 가능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답안작성용 컴퓨터 제공 ② 시험시간 연장(1.2배)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 시험시간 연장은 손, 목, 눈 등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문제지 판독 및 OMR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해 줌 ※ 시험시간 연장은 7·9급의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에만 해당 됨 《면접시험》 - ①면접시간 20분 연장 ②장애 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고지 ③전담도우미 지원 ④작성서식 18point로 확대 제공 ⑤자료작성용 노트북 제공 및 프린터 출력 제출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있음

○ 경증장애인 : 뇌병변장애 4~6급 및 상이등급 4~7급

구분	주요내용
지원요건	뇌병변장애 4~6급(동종 장애로 인한 상이등급 4~7급 포함)인 자로서 의사소견서상 필기능력 애로 인한 확대문제지 등 편의제공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인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의사소견서 원본(시간연장시 진단서 추가)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 전년도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지원 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에 한해 당해년도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함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의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의사소견서로 응시자의 시력과 해당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확대문제지 ②확대답안지 ③시험시간 연장(1.2배)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 필요시, 필기보조도구 지참 가능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확대문제지 ②답안작성용 컴퓨터 ③시험시간 연장(1.2배) 중 필요로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장애 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작성서식 18point로 확대 제공 ④자료작성용 노트북 제공 및 프린터 출력 제출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check point

- 경증 뇌병변장애인에 해당되지만,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한 손 떨림이 심하여OMR답안지 작성이 어려워 시험시간 연장(1.2배)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소견서를 발행한 종합병원 이외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전문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
 -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소견서와 진단서를 토대로 의사협회 등의 자문을 거쳐 연장여부를 최종결정·통보함
- ※ 시험시간 연장은 7·9급의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에만 해당 됨

다. 지체장애인 : 필기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와 거동이 불편한 하지 지체로 구분하고, 상지 지체는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 편의를 지원합니다.

○ 중증 장애인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 1~3급 및 상이등급 1~3급

구분	주요내용
지원요건	<p>상지 지체장애 1~3급(동종 장애로 인한 상이등급 1~3급 포함)에 해당하면서 의사소견서상 필기능력 장애로 통상의 OMR답안지와 일반 답안지 작성이 어려워 확대문·답지, 대필, 시험시간 연장, 컴퓨터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p>
구비서류	<p>의사소견서 원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 전년도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지원 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은동일한 편의지원에 한해 당해년도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함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의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p>※ 의사 소견서로 응시자의 시력과 해당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p>
지원내용	<p>《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확대문제지 ②확대답안지 ③ 문제지에 직접 답안 표기 후 대필 실시 ④시험시간연장(1.2배)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 필요시, 필기 보조도구 지참 가능 <p>《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답안작성용 컴퓨터 제공 ②시험시간 연장(1.2배)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p>※ “시험시간 연장”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OMR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해 줌(장애정도가 불명확할 경우, 기존 소견서 외에 진단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소견서 발급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p> <p>※ 시험시간 연장은 7·9급의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에만 해당 됨</p> <p>《면접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장애 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작성서식 18point로 확대 제공 ④자료작성용 노트북 제공 및 프린터 출력 제출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 경증 장애인 : 상지 지체장애 4~6급 및 상이등급 4~7급

구분	주요내용
지원요건	<p>상지 지체장애 4~6급(동종 장애로 인한 상이등급 4~7급 포함)인 자로서 의사소견서상 필기능력 장애로 인한 확대문제지 등 편의제공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p> <p>※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p>
구비서류	<p>없음. 다만,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의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p>※ 의사 소견서로 응시자의 시력과 해당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p>
지원내용	<p>《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확대문제지 ②확대답안지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 필요시, 필기보조도구 지참 가능 <p>《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확대문제지 ②답안작성용 컴퓨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p>《면접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장애 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작성서식 18point로 확대 제공 ④자료작성용 노트북 제공 및 프린터 출력 제출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 거동이 불편한 하지지체 장애인

구분	주요내용
지원요건	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
구비서류	없음
지원내용	<p>《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별도시험장(실) 배정 신청 ②전용책상 제공(휠체어 사용자) <p>《면접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장애 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라. 청각장애인

구분	주요내용
지원요건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
구비서류	없음
지원내용	<p>《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수화통역사 등 의사전달 보조요원 배치 ② 응시요령 및 알림 등을 서면자료로 제공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가능 <p>《면접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필답으로 면접진행 ② 수화통역사 또는 의사전달 보조도우미 배치 ③ 면접질문을 서면으로 제시 ④ 면접시간 20분 연장 ⑤ 장애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⑥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p>※ “언어장애인이거나 뇌병변장애에 수반된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으로 면접시험시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는자는 청각장애인 편의조치내용에 준해서 편의지원 신청이 가능함</p>

마. 기타장애인

구분	주요내용
지원요건	기존 편의제공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특수장애, 복합(중복)장애 등으로 인하여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구비서류	<p>의사소견서 원본(경우에 따라 진단서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 장애의 유형과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기재되어야 함 <p>※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장애의 유형과 장애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b.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제공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전년도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일한 편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년도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함

지원내용	<p>《제1·2차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을 검증하여 기존 편의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p>《면접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을 검증하여 기존 편의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 “특히, 언어장애인이거나 뇌병변장애에 수반된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으로 면접시험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청각장애인 편의조치 내용에 준해서 편의지원 신청이 가능함
------	---

2. 장애인 수험생의 시험장 접근, 이동 및 응시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시험장을 활용합니다.

- 시각(전맹, 약시)장애인,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중증, 1~3급)
 -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장애인 특수학교를 전용시험장으로 선정·활용
 - 시각(전맹·약시)장애 : 국립맹학교
 - 중증인 지체·뇌병변장애 : 지체부자유자 특수학교
 - 특수학교 교직원을 시험관리관으로 차출·운영
 - ※ 중증장애인 수험생의 수와 시험장 임차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경증, 4~6급)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험장 위주로 배정
 - 시험장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인접한 시험실에 우선 배정
 - 실별 수용인원을 축소하여 수험생 좌석 간격 확대
 -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확보

3. 중증장애인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담 안내도우미 배치, 보호자 대기실 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합니다.

- 시각(전맹),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중증, 1~3급)
 - 시험전일, 시험장 안내 및 응시요령 등 교육(희망자에 한함)
 - 중증장애인 전담 안내 도우미 배치
 - 시험장 내에 보호자 대기실 마련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장애유형 사전공지(희망자에 한함)
 - 필요시, 119 구급대 대기 조치

□ 기타 사항

- 5(등)급 공채와 7·9급공채 장애인 모집단위의 경우 시험시간 연장조치를 제공하나, 7·9급공채 일반인 모집단위에서는 시험시간 연장조치를 제공하지 않음
- 청력손실이 심한 청각장애 2·3급 응시자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를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청각장애인용 기준점수 이상이면 5(등)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청각장애 2·3급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구분		TOEFL (PBT)	TOEFL (CBT)	TEPS	TOEIC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5급(행정·기술)	352점	131점	375점	350점
	5등급(외무공무원)	372점	146점	417점	385점

- 교시당 시험시간이 14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험관리관 동행하에 화장실 이용이 허용됨.
 - 이 때, 화장실 이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 시험별 시험시간 운영현황(음영처리된 경우에 한해, 화장실 이용 허용)

구분	시험시간	시간		지체/뇌병변 (1.2배)
		전맹(1.5배)	약시(1.2배)	
7급필기	140분	210분	170분	170분
9급필기	100분	150분	120분	120분
5(등)급 2차	120분	180분	145분	145분
5(등)급 1차	90분	135분	110분	110분

- 시험시간 연장시, 문제지 개봉시기가 다르므로 시험의 공정한 관리차원에서 시험실 입실 또는 시험시작 전에 휴대폰, MP3 등의 전산기기 소지여부를 확인하며, 만약 시험 중 전산기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됨.

Q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지원을 받고 싶은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상에 귀하의 장애종류 및 등급·정도 등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해당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신청하십시오. 이후, 우리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부에서는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제공여부를 최종 통보합니다.
Q	【의사소견서 발급기관】 “김○○내과”처럼 일반 개인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경쟁률이 대단히 높은 상대평가 시험으로, 개별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종류와 정도에 대한 확인 및 판단없이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경우, 공채시험의 실질적 형평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 때문에 일반 개인병원 보다는 전문성·신뢰성이 높은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 있는“찾기서비스”코너에서 조회·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 하체가 불편한 지체장애인 수험생입니다. 별도 시험장 Q (실)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때에도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각장애인(전맹, 약시, 기타), 뇌병변장애인(중증, 경증), 그리고 상지 지체장애인(중증, 경증)만 해당되며, 하지 지체장애인은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일반모집에서의 편의조치 제공여부】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일반 Q 인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험생에게도 편의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A	장애인 수험생의 경우도, 일반 모집에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실 수 있으며 확대문·답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편의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악용가능성이 높은“시험시간 연장 조치”의 경우는 공채시험의 특수성 및 장애인 구분모집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일반 모집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Q	<p>【시험시간 연장】 척추(다리) 지체장애2급인데요, 저도 7급공채에서 시험시간 연장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p>
A	<p>먼저, 공채시험에서 제공하는 편의조치 중“시험시간 연장”은 시험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악용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는‘전맹인 수험생’과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초과 0.3미만인 약시 수험생’, ‘기타 시각장애인(중복장애, 안과질환 등)’그리고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중증인 뇌병변 1~3급 및 상지 지체 1~3급 수험생’이면서 수험생이 제출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상, 시력 저하 또는 손 떨림 등으로 문제 풀이 및 답안지 작성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입니다.이에 따라, 하지 지체장애인으로 통상의 OMR 답안지 작성에는 현저한 지장이 없는 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 연장 조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Q	<p>【시험 중 화장실 이용】 시험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험 도중에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p>
A	<p>배탈 등으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시간이 연장되는 응시자의 경우 시험도중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험시간이 연장되어 교시당 시험시간 140분을 초과하는 시험에 한해 시험관리관 동행 하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이용시간은 해당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시험시간 연장사례(*음영 처리된 시험의 응시자에 한해 화장실 이용 가능)</p>
Q	<p>【확대문제지】 수능시험처럼 시험문제지의 확대비율을 수험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까? 확대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p>
A	<p>연구문헌 및 타 기관의 운영사례, 수험생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전 B4용지의 2단 구성을 1단으로 변경하고, 글씨폰트 및 크기를 신명조 12P에서 견고딕 14P(확대 120%), 견고딕 18p(확대 150%), 견고딕 24p(확대 200%)의 3종류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약시자에게 적합한 문자크기에 관한연구(Ekin&Pratt 1961)」에 의하면 18P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p>

Q	<p>【시간 연장의 남발 방지】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시험시간 연장을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데, 답안지 작성에 별 어려움이 없는 지체장애인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p>
A	<p>지체장애인 중 시험시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상지 지체 1~3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사소견서상 손가락 절단 또는 양 팔의 관절이상 등이 심각하여 OMR답안지 작성 자체가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입니다. 이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은 OMR답안지 작성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의사소견서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장애정도가 과장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견서 외에 다른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증하거나, 소견서 발급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인 확인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소견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p>
Q	<p>【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조치】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면접시 다양 Q 한 편의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같은 처지인 언어장애인은 받을 수 없나요?</p>
A	<p>면접시험 단계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언어장애인의 경우도, 청각장애인에 준해 수화통역사 배치, 필답허용, 면접질문의 서면제시, 면접시간 20분 연장, 장애특성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고지 등의 편의지원이 이루어집니다.</p>
Q	<p>【면접위원에게 장애종류 등 통지여부】 저는 난치인 청각장애인입니다. 면접관이 Q 저의 장애종류와 정도를 미리 알고 면접시험을 진행하시나요?</p>
A	<p>면접시험 평가과정에서 장애의 종류 및 정도가 선입견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접위원에게 개별 응시자의 장애종류 및 정도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장애종류 등에 적합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응시원서 접수시 희망자에 한해 면접위원에게 장애종류 등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p>
Q	<p>【경증 뇌병변장애인의 시험시간 연장조치 여부】 뇌병변 4급으로 경증장애인에 해당하지만, 손 떨림 등으로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없나요?</p>
A	<p>뇌병변 4~6급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시험시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증인 뇌병변 4~6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손 떨림 등으로 통상의 OMR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수험생은 기존에 제출한 의사소견서 외에 제3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부는 수험생이 제출한 구비서류를 토대로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거쳐 조치여부를 최종결정·통보합니다.</p>

□ 정 의

-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

□ 적용대상 시험

- 5(등)급 공채, 7·9급 공채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 교정직렬 및 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 채용목표비율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검찰사무직은 20% 적용)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 실시방법

- 적용요건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 합격자 결정방법
 - 5(등)급 공채 1·2차 시험
과락자를 제외하고 하한성적(합격선 -2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 7·9급 공채 필기시험
과락자를 제외하고 하한성적(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 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과락자 제외)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p>Q</p>	<p>【양성평등 실시대상 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 Q 되는 것인가요?</p>																																																																
<p>A</p>	<p>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정직 및 보호직은 제외합니다. -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p>																																																																
<p>Q</p>	<p>【양성평등 적용】 9급공채 행정직 선발예정인원이 8명이고, 필기시험 합격선에 따른 필기합격자 11명 중 여성이 1명, 남성이 10명일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후의 필기시험 합격인원은 몇 명입니까?</p>																																																																
<p>A</p>	<p><<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예시 >></p> <table border="1" data-bbox="256 1008 715 1556"> <thead> <tr> <th>순위</th> <th>응시자</th> <th>성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td>1</td><td>가</td><td>남</td><td>92</td></tr> <tr><td>2</td><td>나</td><td>남</td><td>92</td></tr> <tr><td>3</td><td>다</td><td>여</td><td>91</td></tr> <tr><td>4</td><td>라</td><td>남</td><td>90</td></tr> <tr><td>5</td><td>마</td><td>남</td><td>89</td></tr> <tr><td>6</td><td>바</td><td>남</td><td>89</td></tr> <tr><td>7</td><td>사</td><td>남</td><td>89</td></tr> <tr><td>8</td><td>아</td><td>남</td><td>88</td></tr> <tr><td>9</td><td>자</td><td>남</td><td>87</td></tr> <tr><td>10</td><td>차</td><td>남</td><td>86</td></tr> <tr><td>11</td><td>카</td><td>남</td><td>85</td></tr> <tr><td>12</td><td>타</td><td>남</td><td>84</td></tr> <tr><td>13</td><td>파</td><td>여</td><td>83</td></tr> <tr><td>14</td><td>하</td><td>남</td><td>81</td></tr> <tr><td>15</td><td>거</td><td>남</td><td>80</td></tr> </tbody> </table> <p>if 일반행정직렬 최종 선발예정인원 : 8명 and 필기시험 합격선 및 인원 : 85점, 11명(여1,남10) △필기시험 합격자 중 양성평등채용목표인원 : 3명 -11명(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30%(채용목표비율)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의한 추가합격자 : 1명(파;여) △필기시험 합격인원 : 12명 △최종선발예정인원 : 9명(8명+1명) ※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채용목표비율-제2차 시험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8명×30% - 1명 = 1.4명)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p> <p>시험실시 단계별 양성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최종선발예정인원 8명인 직렬에서 필기합격자가 11명일 경우, 필기시험에서의 목표인원은 11×30%=3.3→3명(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채용목표인원에 2명 미달되므로, 하한성적(5급 : 커트라인-2점 / 7·9급 : 커트라인-3점) 이상인 여성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필기합격인원(11명)을 초과하여 1명을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 후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12명(남 10, 여2)이 됩니다.</p>	순위	응시자	성별	점수	1	가	남	92	2	나	남	92	3	다	여	91	4	라	남	90	5	마	남	89	6	바	남	89	7	사	남	89	8	아	남	88	9	자	남	87	10	차	남	86	11	카	남	85	12	타	남	84	13	파	여	83	14	하	남	81	15	거	남	80
순위	응시자	성별	점수																																																														
1	가	남	92																																																														
2	나	남	92																																																														
3	다	여	91																																																														
4	라	남	90																																																														
5	마	남	89																																																														
6	바	남	89																																																														
7	사	남	89																																																														
8	아	남	88																																																														
9	자	남	87																																																														
10	차	남	86																																																														
11	카	남	85																																																														
12	타	남	84																																																														
13	파	여	83																																																														
14	하	남	81																																																														
15	거	남	80																																																														

Q

【양성목표제 면접시험 적용여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도 증가하는지요?

A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시(5(등)급 공채의 경우,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채용 목표 비율 30% - 필기시험(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범위 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및 제25조에 의거, 면접위원이 특정 성의 응시자에 대해 면접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한 경우에 양성평등채용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정 의

-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

□ 지방인재 및 지방학교의 개념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이하“지방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 지방학교는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이하의 다음 학교로 함
 -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지역대학 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과학기술원(KAIST)에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 ※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등은 제외
 - 지방에 소재하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 외국학교,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지방인재의 해당여부 판단

- 지방인재 해당 여부는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로서 학력별로 다음과 같음
 - ① 지방대학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 상의 지방학교와 과학기술대학 졸업(예정)자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한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를 말함

② 지방학교 중퇴가 최종학력인 자

③ 지방대학 재학·휴학자

-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방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 중인 자
- ※ 서울소재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 편·입학자는 제외

④ 기 타

- 최종학력이 초·중등교육 이하인 경우는 최종 출신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자
- ※ 학력이 없는 경우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전체 기간의 1/2을 초과하는 자
-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는 중퇴한 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자
- 아래에 열거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자 또는 열거된 학력의 보유자는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지방학교인 자
 - 대학원, 사이버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독학 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취득자
 - 검정고시 합격자

□ 지방인재의 판단시점 및 검증방법

- 판단시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 검증대상 : 응시원서상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자
- 검증방법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제2차시험 시행 전 검증
 - 재학·졸업증명서 등 지방인재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

□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이내로 제한됨(단, 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실시방법

- 적용요건 : 지방인재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2점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이상의 지방인재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 제2차 : 추가합격상한의 범위내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1점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 지방인재의 해당여부 판단의 예시 ■

<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

- ①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 졸업 : 해당
- ②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 졸업(예정) : 해당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①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②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단,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① 서울지역대학에서 지방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② 지방지역대학에서 서울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① 지방대학 중퇴 후 서울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② 서울소재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단,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① 지방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 중퇴자의 경우 : 해당
- ② 서울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사관학교 중퇴자의 경우 :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①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②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Q	【적용대상 시험】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A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5(등)급 공채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에만 적용됩니다. 더불어, 5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단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분교, 캠퍼스】 각 대학별 분교는 지방에 있는 지방학교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A	고등교육법 제24조의“분교”인 경우만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 인정되어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나,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므로 지방학교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다. 참고로, 2009.11월 현재,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입니다
Q	【지방학교 졸업 후 외국대학 졸업(중퇴)】 지방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외국대학 졸업(중퇴)을 한 경우 지방인재에 해당이 됩니까?
A	외국학교(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포함)에 재적중이거나 졸업(중퇴)하였다면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지방학교 졸업 후 서울소재 대학 재학】 지방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서울소재 대학을 중퇴(재학 포함)한 경우 지방인재에 해당됩니까?
A	최종학력이라 함은 졸업(이수) 뿐 아니라 중퇴(재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서울 소재 대학 중퇴(재학)가 최종학력이 되어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지방학교 중퇴 후 서울소재 대학 중퇴】 지방소재 대학 중퇴(지방소재 고등학교졸업) 후 서울 소재 대학을 중퇴하였다면 지방인재에 해당되니까?
A	가장 최근에 중퇴한 학교가 최종학력의 기준이 되므로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 소재 대학 중퇴의 경우 지방인재에 해당이 됩니다.
Q	【대학원 진학】 지방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재학중인데요 저는 지방인재에 해당되는지요?
A	지방인재 여부는 대학원 등을 제외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귀하는 지방소재 대학졸업이 최종학력입니다. 따라서, 지방인재에 해당됩니다.
Q	【증빙서류 제출】 지방인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A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서류제출과 관련된 장소, 일시 등을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중 지방인재로 표기하신 수험생들만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대학의 위치변경】 서울에 소재한 단국대(본교)로 입학하였으나 동 대학이 2007년 경기도 용인으로 위치 변경되었어요, 현재 용인에 소재한 단국대(본교)에 재학중인 경우, 지방인재에 해당되니까?
A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는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자”에 해당하시면 지방인재에 해당하므로, 현재 경기도 용인 소재의 단국대(본교)에 재학 중이시라면 지방인재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치 변경 후 졸업(예정),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상태라면 지방인재에 해당하지만, 위치 변경 전 졸업, 중퇴하셨다면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채용시험 가산특전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 특전

□ 가산점 적용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상시험 및 가산방법

- 대상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 가산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 10% 가산
 -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5% 가산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의거,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예:면접시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 30% 상한제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선 이상인 수험생은 30% 상한제에서 제외하고도 합격선 이상인 수험생은 30% 상한제에서 제외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

□ 공통적용 가산점

- 가산대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중 시험령 별표10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
- 대상시험 : 6급이하 채용시험(필기시험에 한하며, 전산직은 제외)
- 가산방법
 -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0.5%~1%)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별표10) ■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일반직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가산대상 :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시험령 별표 1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
- 대상시험 : 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함)
- 가산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의 직렬별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별표11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
 -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 행정직군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교정·교회·분류)·보호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 기술직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 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기술직군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별표 11) ■

구분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상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시험령 별표 12의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건축직 6급 이하:5% / 농산물품질관리사-농업직 8급 이하:3%)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서 자격증이 신설되거나 기존 자격증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을 통하여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변경될 수 있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적용기준일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해당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필기시험 답안지에 표기를 하지 않았거나, 필기시험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은 해당 시험에서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 가산특전 중복인정 여부

①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자격증 소지자	
	② 공통적용 가산점	③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0% 또는 5%	0.5%~1%	3%~5%
※ 분야별로 각각 1개씩 인정되므로 ①+②+③에 의하여 최고 16%까지 인정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사전에 본인이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적용 비율을 국가보훈처(각 지방의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여야 함
-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및 직렬별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공통/직렬별)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씩의 자격증만 인정됨
-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참고]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

대상별	10% 가산	5% 가산
독립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 유공자의 제대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 민주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 기타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 5·18 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 민주유공자의 제대 중 1인
특수임무수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대 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

[참고] 6급 이하 행정직군 가산대상 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참조)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	그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비율
교정	교정	-	변호사, 법무사	5%
	교회	-		
	분류	-		
보호	보호	-		
검찰사무	검찰사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5%
	검찰수사	-		
	마약수사	마약수사		
철도공안	철도공안	-	변호사, 법무사	5%
행정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5%
	법무행정	-		
	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5%
	국제통상	-		
	교육행정	-	변호사	5%
세무	세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관세	관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5%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 3급	5%
통계	통계	사회조사분사 1급	-	5%
		사회조사분석사 2급		7급 3%, 9급 5%
감사	감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5%

[참고]6급 이하 기술직군 가산대상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참조)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농업(일반 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능사자 격증가산비 율적용:농: 산물품질관 리사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업(산림 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산림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 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 용:건축사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건축독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시설 (디자인)	기술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 용:건축사
	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 디자인	
방송통신 (전송기술)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 기능사(1997.6.1 이전 취득)	

Q	【사전준비 절차 유무】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로 봐야 할 절차가 있습니까?
A	우리부에 필기시험 합격 전에 서류를 제출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 02-2020-5291~4) 또는 각 지방의 관할 국가보훈지청에 문의를 해서 확인하셔야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필기시험 당일, OMR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해당사항을 표기하셔야만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가점 적용시점】 아버지(또는 본인)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합니까?
A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Q	【훈장 수여자】 훈장 수여자의 자녀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되는지요?
A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무공수훈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그 자녀들까지도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밖의 훈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 02-2020-52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국가유공자 가산점 통계】 국가유공자 합격 30% 상한제 적용과 관련하여 전년도 직렬별 취업지원대상자 합격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A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 30% 상한제규정은 2005년 7월부터 적용되었으나, 진행 중인 시험은 제외한다는 경과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2006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과년도 7급, 9급 직렬별 취업보호대상자 합격비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채용정보마당" "시험통계"에 들어가시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30% 상한제 적용】 장애인 구분모집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을 수 없나요?
A	장애인 모집단위 또는 일반 모집단위 구분없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고 응시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고, 원 득점점수로만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적용하여 1명이라도 합격하게 되면 이미 30% 상한을 넘기 때문입니다.
Q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가점여부】 취업지원대상자가 어느 과목에서 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하였을 경우,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까?
A	종전에는 매 과목별 과락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이 부여되었으나, 2007.3월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2007.7.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부터는 어느 과목에서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Q	【면접시험시 유공자 가산점 적용여부】 면접시험에서도 필기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10% 가산점이 적용되는지요?
A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면접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은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자력합격자 30%상한 제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10%를 가산하지 않은 원 점수가 커트라인을 넘은 사람도 30% 상한제의 적용을 받습니까?
A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하여야 하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에 자기득점(원점수)으로 합격선을 넘은 사람(이하 “자력합격자”)은 그 3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취업지원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력합격자”는 제외하고,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30%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자력합격자”에게도 다른 취업지원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성적을 통보합니다.

Q	【유공자 가산 횟수 제한】 국가유공자 가산점으로 가산특전을 받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은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는 유공자 가산점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위 해당법률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횟수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더라도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격증 가산점 인정범위】 자격증 가산점은 최고 몇개의 자격증에 대하여 몇%까지 인정됩니까?
A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0.5%~1%), 직렬별로 가산되는 자격증 1개(3% 또는 5%)에 대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됩니다.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과 직렬별로 가산되는 자격증을 각각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격증 각각 1개에 대해서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 6%까지 자격증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가산비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공통적용 가산대상 자격증 2개 보유】 제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과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7급 공채 행정직에서 가산점을 몇 %받을 수 있나요?
A	귀하는 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 공통적으로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을 2개 소지하고 있으나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으로 1%의 가산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격증 취득시기】 자격증 가산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까?
A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의 가산점 적용 인정시점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입니다. 일부 수험생은 원서접수일 또는 최종면접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증 가점은 수험생이 얻은 필기시험 성적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자격증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해당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Q	<p>【통신직렬의 자격증 가산】 전송기술직 등 통신분야에 응시할 때,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공통분야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 둘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p>
A	<p>자격증 가산점은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하나 하나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자격증들이 공통적용 가점과 직렬별 가점에 각각 인정이 되는 것이라면 영역별(공통/직렬별)로 하나씩의 자격증에 대하여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정보처리기사(직렬별 가점 5%)와 정보처리산업기사(공통 가점, 7급 0.5%, 9급 1%) 두 개의 자격증에 대하여 각각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p>
Q	<p>【1개의 자격증 중복가산 여부】 전송기술직의 경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공통적용가산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에 모두 해당하는데, 복수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p>
A	<p>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공통적용 가산점(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1)으로는 1%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으로는 5%를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시험의 경우, 하나의 자격증으로는 하나의 가산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산비율이 높은 직렬별 가산점 5%에 대해서만 자격증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p>
Q	<p>【자격증 취득제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비전공자는 응시가 제한되는 것이 사실인가요?</p>
A	<p>국가기술자격 취득시 학위소지자의 경우 전공과 관련 없이 자격증의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자격증별 전공학과를 지정하여 해당 전공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의 소관 부처인 고용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14호"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을 통해"관련학과"를 고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증(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은"모든 학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격증 시험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Q	<p>【정보통신기술자 가산 적용여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초급기술자) 자격증으로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p>
A	<p>공무원임용시험령은"국가기술자격법령"을 근거로 하여 가산대상 자격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은 가산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p>

Q	【자격증 취득 인정시점】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에 최종합격을 하고, 아직 자격증 발부는 안 받았는데 가산점 적용이 됩니까?
A	필기시험 전일까지 최종합격한 경우라면 자격증 발부와 상관없이 자격증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산 대상 자격증 확인】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과 그 가산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A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가산 특전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 가산점으로 구분됩니다. 공통적용 가산대상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격증에 따라 0.5%~1%의 가산비율이 적용됩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별표 12에, 가산비율은 별표 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대통령령"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제한특채시 가산특전】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도 사무자동화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에 대하여 가산점이 인정됩니까?
A	그렇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자격증 가산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특별채용시험 등 채용의 방법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을 시행할 경우 가산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를 필수요건으로 하여 시행되는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시험에서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가산적용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특별채용시험 실시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직렬통합에 따른 가산특전 변경사항】 노동직렬이 행정직렬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존 노동직렬에 적용되던 상담사자격증 가산점은 폐지되나요?
A	2007년부터 노동직렬이 폐지되었으나, 행정직렬 노동직류로 편입되어 노동직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과목이나 가산점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분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p>【국가유공자 합격선】 합격자 통계에서 직렬별 유공자 합격선이 기록되지 않은 직렬은 어떤 이유로 기록되지 않은 것인지요?</p>
A	<p>국가유공자 합격선은 합격선 결정시 국가유공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함으로써 본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취득했음에도 탈락하는 국가유공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합격자에 대한 하한 점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합격선이 기재되지 않은 직렬은 국가유공자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여 탈락하는 국가유공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합격선만 존재하는 것입니다.</p>
Q	<p>【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p>
A	<p>우리부가 시행하는 국가직 공채의 경우 5급공채시험에서 사회복지직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으나, 7·9급 공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선발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수요부처에서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7급 및 9급 공채시험에서 사회복지직의 경우 5%의 가산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직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나 지방직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02-2100-3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Q	<p>【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시점】 제가 7.20일에 세무사 제2차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2011.7.23.에 시행예정인 7급 공채 세무직렬에서 가산점 5%를 받을 수 있나요?</p>
A	<p>"세무사법"에 의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의 자격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7급 공채 세무직 필기시험 전일까지 세무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하셨다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쳐야만 자격이 인정되며, 감정평가사는 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자격이 인정되어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관세사 등도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에 합격과 동시에 자격취득이 인정되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p>
Q	<p>【외국 공인회계사 인정여부】 외국에서 취득한 공인회계사 자격증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p>
A	<p>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자격증 가산특전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및 별표 10~12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에 대해서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취득한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특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p>

Q	【한자자격증 소지자】 국가공인 한자자격증이 공무원 가산점에 포함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귀하께서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공인 한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Q	【교정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7급공채 교정직(분류직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임상심리사 자격증도 가산점 적용이 되나요?
A	교정직(분류직류)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에 의해 변호사, 법무사 두개 뿐입니다. 따라서 임상심리사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의 공통적용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그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공정한 룰!

누구나 지켜야만 합니다

□ 일반적인 준수사항

매년 우리부에서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문" 및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문" 그리고 시험당일 제공해드리는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준수사항 (답안지 작성요령 및 부정행위등 금지)" 등을 통해 수험생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응시자에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서 정한 "그 시험의 무효나 취소,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게시된 당해시험의 공고문 및 각종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당일에는 지정된 시간(오전 09:20, 오후 13: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07:00 이후 시험장 개방)
 -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음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함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mp3플레이어, 이어폰 등) 또는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됨
-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함
-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이 가능한 시계를 지참 가능함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계산기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불가

□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답안지는 OMR기기로만 판독하므로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함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맞는지 여부, 문제지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함
-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함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음
 - 올바른 표기 : ● / 잘못된 표기 : 
 -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됨

□ 제2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

- 답안지는 1부씩만 배부되며 답안지를 받으면 먼저 표지 우측상단의 "검인란"의 날인여부와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답안지의 매수와 쪽 번호(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함
- 초안작성은 초안작성용지 또는 문제지 여백만을 사용하여야 하며(시험 시작전 작성 금지), 초안작성용지는 시험 종료 시 반드시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답안지에는 통상적인 농도와 굵기의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되, 동일 답안지에는 농도, 굵기, 색상이 같은 필기구만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함
 - 특히, 2008년도부터 사본에 의한 채점을 시행함에 따라, 지나치게 굵기가 가는 펜이나 농도가 흐린 펜 등의 사용으로 채점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기구 선택시 유의
- 답안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다음부터 (또는 여백에)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및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 사용가능)

- 시험기간 중 본인이 응시하여야 할 과목에 결시한 응시자는 그 시간 이후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음

□ 제1차 및 제2차시험 공통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됨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 또는 정지될 수 있음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출입할 수 없음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종료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OMR 답안지 견본 ■

2011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답안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 사용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외무영사직 선택과목		책형		* 시험관리관 서명란 (성명을 정자로 기재할 것)																			
성명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적색 볼펜만 사용
자필성명	본인 성명 기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필적감정용 기재】 * 아래 예시문을 옮겨 적으시오 과측 응시자와 동일함
응시직렬		④	⑤	⑥	⑦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④	⑤	⑥	⑦	기재란
응시지역	채용관리 과 인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시험장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가산표기란			문번	제1과목	문번	제2과목	문번	제3과목	문번	제4과목	문번	제5과목	문번	제6과목	문번	제7과목
취업지원 대상자	10%	①	1	① ② ③ ④	1	① ② ③ ④	1	① ② ③ ④	1	① ② ③ ④	1	① ② ③ ④	1	① ② ③ ④	1	① ② ③ ④
	5%	②	2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통신 / 정보처리 /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1%	①	6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0.5%	②	7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행정직 가산자격증	5%	①	11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3%	②	12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기술직 가산자격증	5%	①	16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3%	②	17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 논문형 답안지 견본 ■

2011년도 5급 공채 (행정) 제 2 차 시험 답안지																						
※ 시험관리관 서명 (직렬을 임의로 기재할 것)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과목명</td> <td style="width: 60%;"></td> </tr> </table>						과목명														
	과목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직렬(번호) 및 과목(번호) 일람표</td> </tr> <tr> <td colspan="5" style="padding: 10px;"> 직렬(번호) 및 과목(번호)는 뒷장에 있는 『직렬(번호) 및 과목(번호) 일람표』를 참고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검 인 란</td> </tr> <tr> <td style="height: 40px;"></td> </tr> </table> </td> </tr> </table>							직렬(번호) 및 과목(번호) 일람표							직렬(번호) 및 과목(번호)는 뒷장에 있는 『 직렬(번호) 및 과목(번호) 일람표 』를 참고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검 인 란</td> </tr> <tr> <td style="height: 40px;"></td> </tr> </table>		검 인 란	
직렬(번호) 및 과목(번호) 일람표																						
직렬(번호) 및 과목(번호)는 뒷장에 있는 『 직렬(번호) 및 과목(번호) 일람표 』를 참고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검 인 란</td> </tr> <tr> <td style="height: 40px;"></td> </tr> </table>		검 인 란															
검 인 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응시자 준수사항</td> </tr> <tr> <td colspan="7" style="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앞표지 뒷면에 있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답안 작성 시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답안작성란</u> 제1쪽에 과목명과 과목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td> </tr> </table>							응시자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앞표지 뒷면에 있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답안 작성 시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답안작성란</u> 제1쪽에 과목명과 과목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앞표지 뒷면에 있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답안 작성 시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답안작성란</u> 제1쪽에 과목명과 과목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과목명</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과목 번호</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직렬(번호) 번호</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2011년도 5급 공채 (기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응시 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글)</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자)</td> <td></td> <td></td> </tr> </table>							과목명		과목 번호		직렬(번호) 번호		2011년도 5급 공채 (기준)	응시 번호		성명	(한글)	(한자)				
과목명		과목 번호		직렬(번호) 번호		2011년도 5급 공채 (기준)																
응시 번호		성명	(한글)	(한자)																		
행 정 안 전 부																						

Q	【응시표 미지참】 응시표를 분실했습니다. 시험을 칠 수 있습니까?
A	응시표를 분실했다더라도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만, 응시표가 없을 경우, 본인의 시험장소 및 시험실 좌석을 확인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응시표를 재출력·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표는 최종시험 종료시까지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붉은펜 등 예비마킹】 OMR답안지 작성 시, 붉은펜, 연필 등으로 예비답안 체크를 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A	OMR답안지에는 "e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은펜, 연필, 형광펜 등 기타 다른 필기구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차시험의 채점은 OMR판독기기에 의한 판독결과에 의해서만 처리됩니다. OMR답안지 판독과정에서 붉은펜, 연필 등이 인식되어 중복 마킹으로 오답처리 될 수 있습니다.
Q	【과목점수 0점】 필기시험 성적을 확인했는데 "과목에서"0"점이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A	귀하가 지정된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가 아닌 다른 필기구로 OMR답안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험당일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답안지는 OMR기기의 판독결과에 의해서만 채점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가지고 계신 필기구가 지정된 필기구인지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 값싸게 만든 중국산 컴퓨터용 사인펜은 정상적으로 판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품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답안지 회수】 시험관리관이 답안지를 앞에서부터 회수하는데, 뒤에 있는 수험생은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요?
A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해 답안지를 무효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시험시작 전에 실시되는 시험관리관 교육시, "시험종료 후에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필기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를 뒤집은 다음,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려놓도록 안내한 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교육하고 있습니다.
Q	【시험 중 퇴실 가능여부】 필기시험 도중 퇴실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시험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탈 등으로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퇴실이 인정되나, 재입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은 없으며, 퇴실 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한 답안지로 처리됩니다.

Q	【기한만료된 여권】 기한만료된 여권을 제외하고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기한 만료된 여권으로 응시가 가능합니까?
A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등입니다. 기한이 만료된 여권은 응시자 본인확인에 유효하지 않으므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득이 시험당일까지 재발급 받지 못할 경우에도 응시는 가능하나 본인확인을 위한 우무인 날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Q	【시험당일 지참물】 7급공채 필기시험 당일 무엇을 지참하고 가야 하나요?
A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시험시작 시간이 10:00일 경우, 09:2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그리고 답안표기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시간 확인을 위한 시계(계산기능이 포함된 것 제외)를 소지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5급공채 기술직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과목별 문제유형에 따라 계산기 사용이 허용되므로, 계산기를 추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Q	【시험 전, 개명】 필기시험일 이틀 전에 개명이 되었어요. 시험장에 어떤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까?
A	일단 개명 전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이후, 저희 인터넷 접수팀(02-751-1471)으로 연락하시고, 개명 후의 성명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초본을 행정안전부(채용관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명 전의 신분증이 없으시다면, 개명사실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를 지참하여 시험실에 입실하시고,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에게 해당사항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Q	【OMR 판독】 답안지 작성시간이 부족하여 답안마킹을 점으로만 살짝 찍었는데 이러면 OMR기기가 인식을 하지 못하나요?
A	시험당일"응시자 준수사항(답안지 작성요령 및 부정행위 등 금지)"교육에서도 안내한 바와 같이 답안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 OMR판독기기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필기시험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기에 의한 판독결과에 의해서만 처리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불이익 처분내용 규정

□ 부정행위자 등 금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 불응

□ 부정행위자 등 처벌규정

○ 처벌규정

-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 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함.

Q	<p>【시험종료 후 답안지작성】 시험종료후 약 30초간 답안지를 더 작성하다가 자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됩니까?</p>
A	<p>우리부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1~2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쟁이 치열한 시험이기 때문에 특정 수험생이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는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불공정행위로 불이익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7일 전에 공고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문"과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답안지 작성요령 및 부정행위등 금지)"을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수험생이 직접 작성한 자술서 및 시험관리관 확인서를 근거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답안지 무효처분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게 됩니다.</p>
Q	<p>【답안지 무효처분의 효력】 시험종료후 답안지 작성을 이유로 답안지 무효통보를 받았습니 다.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건가요?</p>
A	<p>귀하께서 받은 답안지 무효처분은 당해시험의 답안지에 대해서만 무효처분일 뿐,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너무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5년간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유형은 대리 응시, 전산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한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p>
Q	<p>【답안지 무효 이의제기】 시험 종료 후, 문제지에 답안마킹해 놓은 것을 5문항 정도 옮겨적 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했는데 무효라니 억울합니다.</p>
A	<p>공채시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시험여건을 제공 해주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험시간은 엄격히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선 택형 필기시험은 1~2문제로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인 점을 감안하면 시험시간 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답안지 무효처분이라는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문제지에 표기해 놓은 것을 단순히 옮겨적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고 하지만, 해당 시험시간에는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귀하의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p>
Q	<p>【부정행위자의 성적】 답안지 무효처분을 받았더라도 제 답안지 채점결과를 알 수는 있지 않나요?</p>
A	<p>답안지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의 답안지는 채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확인이 되 지 않습니다.</p>

8. 시험시행 및 채점,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 시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지역 / 일선 중·고등학교
 - 지역별 모집 응시자는 지역모집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에서만 응시가능
- 제2차 시험 : 서울 / 대학교, 상설시험장 등
- 제3차 시험 : 서울 / 중앙공무원교육원, 외교안보연구원 등(시험장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 시험 : 16개 시·도 / 일선 중·고등학교
 - 지역별 모집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이며, 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지역을 선택
- 제3차 시험 : 서울지역(전국모집) 또는 지역별 모집 시·도(지역 구분모집)

□ 7·9급 공채 시·도별 시험장소 예정지 안내

시험 불 지역(응시지역) ※원서접수시 선택	시험장소 예정지(2011년 예시)	
	9급	7급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
경기도	수원, 용인, 안양, 군포, 성남	수원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제주도	제주시	제주시
서울·부산·인천· 대구·대전·광주·울산	해당시	해당시

※ 시험장소 예정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험장소는 필기시험 시행 7일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되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Q	【응시지역과 발령지역 상관관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지역과 합격이후의 실제 발령지역이 같은지요?
A	전국모집 단위에서의 응시지역은 단순히 수험생의 시험응시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실제 발령지역은 응시지역과 관계없이 최종 합격 후 배정 받은 부처의 인사여건 및 소속기관 소재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지역별 모집단위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원서를 제출한 지역단위에서만 시험응시가 가능하므로 응시지역과 실제 발령지역이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Q	【응시지역 선택】 필기시험 보기가 편한 지역에서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A	<p>대규모로 시행되는 5(등)급 공채 제1차시험 및 7·9급공채 필기시험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에 수험생 본인이 주민등록지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시험응시가 편리한지역을 선택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시험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 단위의 경우는 응시희망지역 선택시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p> <p>※ 5(등)급 공채 제1차시험 : 5개 광역권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7급 및 9급 공채 필기시험 : 전국 16개 시·도(지역구분모집은 별도확인)</p> <p>5(등)급 공채 제2차(주관식)시험, 제3차(면접)시험, 그리고 7·9급공채 제3차(면접)시험은 응시인원이 적은 관계로 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시험이 시행됩니다.</p> <p>※ 7·9급공채 지역별 구분모집단위의 면접시험은 면접시험 지역을 별도로 공고함</p>
Q	【중학교 책걸상 불편】 전년도에 중학교에서 필기시험을 봤는데, 책상 등이 불편했습니다. 중학교를 시험장으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A	<p>모든 조건이 구비된 쾌적한 상설 시험장을 전국에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불편은없을 텐데, 우리부로서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p> <p>현재, 5(등)급 공채 제1차시험 및 7·9급 공채 필기시험의 경우, 일선 중·고교를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장 임차가 학교 측의 의무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므로 특별활동이라든가 자율학습, 대입을 위한 보충학습 등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거절하면 시험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임차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불어 국가시험시행 예산부족에 따른 낮은임차단가도 시험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험장의 불편사항등에 대해 우리부에서도 고심하고 있으며, 쾌적한 시험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p>
Q	【경기도 응시지역 변경요구】 저는 경기북부에 살고 있는데 수원시 인근뿐만 아니라, 의정부 쪽에도 시험장을 설치해 주시면 안되니까?
A	<p>서울지역 외의 시험장은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출원인원, 당해 지자체의 여건 등 여러 가지 시험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직접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은 문제책의 원활한 배송·관리,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을 위해 시험장이 모두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부득이 경기도청이 소재한 수원시 인근에서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쪽에 시험장을 설치하더라도 응시번호 부여 및 시험장 배정이 전산으로 자동처리되기 때문에 의정부에 사는 수험생이 수원인근 시험장에서, 수원인근에서 사는 수험생이 의정부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응시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향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가능한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법전 배부

- 대상시험 :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 부여기준 : 법률과목의 경우에만 법전 배부
- 주의사항 : 법전은 훼손(절취, 낙서 등)하여서는 안되며, 시험시간 종료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전자계산기 사용

- 대상시험 : 5급(기술) 공채 제2차시험
- 허용기준 : 해당 시험의 출제문제 유형 및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험 당일 문제 유형에 따라 사용여부를 매시간 공지함
- 기종제한 : 기종에 관계없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기를 초기화하여야 함
 - 이후 다른 계산기로 교체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Q	<p>【조약집 배부】 5급(행정) 공채시험 국제통상직이나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등의 제2차시험 중 국제법 과목의 경우 조약집이 배부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학 등 법률과목이 아닌 과목의 시험에도 법전이 배부되는지요?</p>
A	<p>조약집은 배부되지 않으며, 사회복지학 등 법률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p>
Q	<p>【세법과목 법전배부 여부】 5급공채시험 행정직(재경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입니다. 제가 2차시험 선택과목으로 세법을 신청하였는데, 시험당일 법전이 배부되나요?</p>
A	<p>5급공채시험 제2차시험 세법과목 시간에 우리부에서 준비한 법전을 제공해 드립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져오시는 법전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p>
Q	<p>【제1차시험 계산기 사용여부】 5(등)급공채시험 제1차시험 자료해석영역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나요?</p>
A	<p>5(등)급공채시험 제1차시험 자료해석영역 시간에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해석영역에서 수치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계산은 자료의 추세를 판단하기 위한 대략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실제 문제의 출제 의도는 그 수치의 분석 및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계산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출제위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 문제를 출제·선정하고 있습니다.</p>
Q	<p>【과목별 계산기 사용여부】 5급 공채시험(기술) 제2차시험 과목 중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과목과 사용할 수 없는 과목을 알려주세요.</p>
A	<p>현재 5급 공채시험(기술) 제2차시험의 경우 계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만, 시험과목에 따라 일률적으로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 문제유형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출제위원이 계산기 사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당일 문제책 개봉 이후에나 사용여부가 확인되므로, 수험생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며 됩니다. 계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초기화(reset)를 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수험생이 각종 내용을 저장한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p>

□ 시험문제 공개

- 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01년 부터
-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07년 부터

※ 수험생은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정답확정 절차

시험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
수험생 이의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행 후 5일 이내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과목별 책 형별 문 항별로 구분하여 시험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한 의견 제시
↓	↓↓
정답확정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험생 의견 및 문제와 정답 전체 재검토 • 출제위원과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된 정답확정 회의에서 최종정답 확정
↓	↓↓
최종 정답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정답 공고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Q	【문제공개의 편익】 시험문제 공개가 수험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우리부는 그간 행·재정적 제반여건 개선을 통해 2007년부터 7·9급 필기시험의 경우에도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및 정답의 공개는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오답 및 복수정답 시비 등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험생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시험성적을 예상하여 합격권에 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면접시험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수험생도 조기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문제공개 절차】 시험 문제·정답가안 공개, 이의제기 및 정답확정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우리부는 시험종료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시험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5일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수험생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출제위원과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된 정답확정위원단 회의를 개최하여, 수험생이 제시한 의견을 포함해 시험문제와 정답가안을 면밀히 재검토한 뒤 최종정답을 확정·공개합니다.
Q	【수험생 의견반영 결과 통보】 수험생이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나요?
A	수험생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은 정답확정회의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게 되며, 최종정답 확정과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최종정답을 확정·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단계별 채점방식

- 제1차시험(선택형) : OMR에 의한 전산채점
- 제2차시험(논문형) : 답안지 사본에 의한 일괄 채점

□ 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필기시험 과락기준
 - 제1차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
 - 제2차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하고
- 영어를 제외한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필기시험 과락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 제1·2차시험 병합실시(제24조 제1항)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 ※ 단,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2배수 범위에서
-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Q	<p>【시험일정 장기화】 시험일정이 너무 길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늦는 것입니까?</p>
A	<p>공채시험에서의 시험일정 장기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첫째, 우리부는 연중 10종류의 시험을 25여회(월 평균 2회이상) 실시함에 따라 시험시행 준비, 문제출제, 채점 등의 업무가 중복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채점기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대기기간 발생이 불가피합니다.</p> <p>둘째로 매년 시험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한편, 지역별 구분모집,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등 시험단위가 세분화되어 업무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p> <p>셋째, 공무원 채용시험에 타 법령에서 규정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국가유공자 합격 30% 상한제 및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등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합격자 결정과정이 대단히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OMR채점과 그 결과로서 합격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자 사정시 위에 언급한 여러 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또한, 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영어성적 등을 일일이 조회·확인하는 등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p> <p>우리부는 그간 채용관리업무의 양적·질적 증가에 대응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도입, 답안지 개선, 영어성적 조회방법 변경 등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시험일정을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험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험일정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
Q	<p>【필기시험의 과락기준】 공무원시험에 있어 과목별 과락규정과 평균점수 과락제가 동시에 적용되는지요?</p>
A	<p>우리부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5(등)급 공채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에만 과목별 과락규정(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미만)과 더불어 평균점수 과락(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이 있으며, 이외의 5(등)급 제2차시험 및 7·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는 과목별 과락규정(과목별 40퍼센트 미만)만 있습니다.</p>
Q	<p>【수채점 요청】 OMR기기가 답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수작업으로 채점하여 성적을 인정해주시면 안 될까요?</p>
A	<p>우리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OMR에 의해서만 채점을 합니다. 만약, OMR에 의한 판독 외에 수작업으로 채점하여 성적을 인정해준다면, 불합격자 대부분이 수채점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중국에는 OMR에 의한 답안지 채점방식은 폐지되고, 모두 수작업 채점을 해야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럴 경우, 채점기간이 장기화되어 전체 시험진행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Q	【답안 복수 마킹】 OMR답안지 하나의 문항에 복수마킹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해당 문항만 무효처리되나요? 과목전체가 무효처리되나요?
A	OMR답안지 작성시 동일문항에는 하나의 정답만을 마킹해야 합니다. 만약 복수로 마킹한 경우에는 해당 문항만 오답처리되며, 과목 전체가 "e0"점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제2차시험 평가기준 공개】 5급 공채 제2차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시험위원별·문항별 채점결과와 채점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5급 공채 논문형 필기시험은 응시자의 전문지식에 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채점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므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하므로써 비로소 평가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문항별 채점결과 및 채점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두 6114 참고).
Q	【답안지 열람】 필기시험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A	<p>우리부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답안지의 열람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매주 수,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대상 : 5(등)급 공채시험 응시자(수요일),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목요일)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출구) ▶ 열람방법 : 담당직원 입회 하에 열람(사진촬영, 복사, 필사, 훼손 금지) ▶ 신청방법 : 전화(02-751-1340,1341,1397)로 매주 화요일까지 신청

□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등록

- 2010년도부터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 서류를 감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필기합격자 면접등록 실시
 - 대상 : 5(등)급 공채 2차시험 합격자, 7·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 기간 : 합격자 발표일 부터 3~5일 (합격자 발표시 안내)
 -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면접시험 > 면접시험등록

① 합격자정보 확인 및 수정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회원가입 | 사이트맵 | 합격지침 >

시험안내 | 원서접수 | 시험문제/정답 | 면접시험등록 | 채용후보지등록 | 자료실 | 온라인지원 | 마이페이지

면접시험등록 Interview Registration

면접시험등록 | 면접시험안내 및 등록관련 내용입니다.

- 면접시험안내
- 면접시험등록
- 면접시험등록확인

면접시험대상자 등록정보 수정

지원사항

- * 현주소: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 직렬: 공업(일반기계:일반)
- * 응시번호: 000001

합격자 정보

- * 성명: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 주민번호: 공업(일반기계:일반)
- * 주소: 123 - 456 우편번호검색
서울 중랑구 목동
20 신내 대림 아파트 (나머지 주소)
- * 이메일: Test @ hanmail.net 다음(한메일)
- * 전화번호: 010 - 111 - 2222
- * 휴대전화: 02 - 111 - 2222

② 응시자격 확인정보 입력

- 대상 : 장애인·저소득층·지역별 구분모집 및 전산직렬 응시자

응시자격 확인

- *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 등록일 1234567
 - 국가유공자
- * 전산직 자격증:
 - 현재 자격증 소유 취득 예정
 - 자격증번호 [] 자격종목 [선택] 합격취득일자 1234567
- * 지역별 구분모집:
 - *2010.1.1을 포함하여 1월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확인 (서울·인천·경기 제외)
- * 저소득층 구분모집: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XX.XX(X)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 (제출 마감일자 무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③ 가산점 확인정보 입력

- 대상 : 7·9급 공채시험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직렬별·공통가산점) 적용 대상자

■ 가산특전대상 확인			
•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	<input type="text"/>	
• 통신/정보처리/사무 관리분야가산자격증	자격증번호	자격종목 <input type="text" value="선택"/>	합격(취득)일자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폐지 또는 명칭변경 자격증		
	자격증번호	<input type="text"/>	
• 행정직 가산자격증	자격증번호	자격종목 <input type="text" value="일반기계"/>	합격(취득)일자 <input type="text"/>
• 기술직 가산자격증	자격증번호	자격종목 <input type="text" value="선택"/>	자격종목 <input type="text" value="선택"/>
	자격종목 <input type="text" value="선택"/>	합격(취득)일자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폐지 또는 명칭변경 자격증		
	자격증번호	<input type="text"/>	
	자격증번호	<input type="text"/>	

④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해당자)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 대 상 : 저소득층 구분모집단위 필기 합격자
- 기 간 : 합격자 발표 공고문에서 정한 지정기간 내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직접제출 불가), 제출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1통 (수급기간 명시)

□ 유의사항

- 정해진 기한내에 필기합격자 면접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서류를 제출하지않은 수험생은 실기 및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응시직렬(류), 전화번호(휴대폰,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자격 또는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Q	【필기시험 합격 후 개명】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원서접수 후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명 전·후의 성명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을 행정안전부(채용관리과)로 우편제출(등기우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최종합격 후 개명이 되었다면, 개명 즉시 전·후의 성명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초본 제출시에는 인적사항 정정 신청서(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증명 서식란에 게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필기합격자 면접등록】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합격자에 대한 서류제출이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면접시험에 참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기존에는 필기합격자가 주민등록표초본 등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했으나 2010년부터 서류제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대신 필기합격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e필기합격자 면접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응시자격(지역구분,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산직) 및 OMR답안지에 기재한 가산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별로 감축 시기가 다르고 일부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하므로 해당시험의 필기합격자 발표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필기합격자 면접등록】 전산직렬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필기합격자 면접등록 마감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 면접등록시 자격증 정보를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면접시험까지는 자격을 취득할 예정인데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A	전산직렬 응시자격인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취득하시면 됩니다. 면접등록마감일 이후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경우 자격증 사본, 자격취득확인서(발급기관 직인 포함) 등 증빙자료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법적근거

- "공무원임용시행령"제23조 제4항(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등)
- "공무원임용시행령"제25조 제5항(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추가합격 요건

- 제2차시험(7·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 실시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모집단위별 충원사정 및 성적분포 등을 고려하여 추가합격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추가합격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추진절차

- 필기합격자 면접 등록 공고(제3차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문)
 - ⇒ 등록 및 서류접수·확인
 - ⇒ 미등록자 및 서류미제출자 명단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확인
 - ⇒ 모집단위별 합격요건 심사 및 추가합격자 결정
 - ⇒ 추가합격자 발표
 - ⇒ 추가합격자 서류접수·확인 ⇒ 추가합격자 최종결정

Q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요건】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요건이 궁금합니다.
A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 제도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4항 및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제3차(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 시험 응시자수가 당초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부 충원사정, 성적분포 등을 고려하여 추가합격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추가합격 인원 산정】 7급공채 추가합격 인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니까? 추가합격을 할 때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니까?
A	제3차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 인원은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과락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물론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및 국가유공자 합격 30%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합격인원은 각 모집단위의 성적분포, 동점자 수, 성별 합격비율 및 국가유공자 합격인원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최종합격자에 대한 추가합격】 9급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 포기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합니까?
A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합격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3차(면접) 시험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받은 수험생을 단순히 당초의 선발인원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합격 처리하는 것은 공채시험의 취지 및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충원 미달인원은 추후 각 부처별로 특별채용시험 등을 통해 별도 선발할 수 있습니다.

Q	【제한경쟁특채 최종합격자에 대한 추가합격】 교정직 특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임용포기자 발생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하던데요?
A	<p>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3항)</p> <p>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결원발생 등 필요 인원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본래의 충원목적 달성을 위해 임용포기 등에 따른 추가합격자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p>
Q	【추가합격자의 면접시험】 당초 합격자와 추가합격자를 구분하여 면접시험이 진행되니까?
A	<p>필기시험 추가합격자와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구분하여 면접시험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면접시험이 진행되며 오로지 면접시험 결과에 의해서만 합격 당락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면접위원에게 해당 응시자가 추가합격자인지 아니면 당초 합격자인지를 알리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p>

□ **대상직렬** : 교정직, 철도공안직

□ **대상시험** : 교정직렬(류) 6급 이하 채용시험

□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5조
-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39호)
-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7호)

□ **실시방법**

- 시험종목(4개 종목)

구분	교정직		철도공안직	
	남	여	남	여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48회 이상	24회 이상	42회 이상	20회 이상
약력	47kg 이상	27kg 이상	43.6kg 이상	25.2kg 이상
윗몸일으키기(60초)	38회 이상	26회 이상	34회 이상	23회 이상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12.29초 이내	14.6초 이내	13.6초 미만	16.21초 미만
눈감고 외발서기	-	-	11.9초 이상	8.5초 이상
비 고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3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	

- **진행절차** :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등록(행정안전부)

- ⇒ 실기시험 대상자 통보(행안부→법무부/국토해양부)
- ⇒ 체력검사 공고·실시·합격자 발표(법무부/국토해양부)
- ⇒ 면접시험 대상자 확정(행정안전부)

- **평가종목,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 체력검사 실시 관련 문의처**

- 교정직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교정기획과(02-2110-3375)
- 철도공안직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철도운영과(02-2110-8800~1)

□ 무자료 면접방식 도입·시행(2005년~)

-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서 학력란 폐지
- 면접위원의 선입견 배제를 위해 응시자의 출신학교, 경력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오로지 면접시험 평가결과에 의해서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면접시험방식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필기시험 성적이 좋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될 수 있음

□ 면접운영방식(2011년 기준)

구분	면접위원	집단토론	개인면접 (개인발표 포함)	개인발표문 작성
5(등)급 공채	3인 1조	90분	40분	30분
7급 공채	3인 1조	×	35분	25분
9급 공채	2인 1조	×	25분 (개인발표 미실시)	×

※ 면접시험 운영방식은 연도별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접시험 전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지하는 "면접시험 응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 면접시험 평정요소 및 평정방법

○ 평정요소

- | | |
|--------------------|-----------------|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평정방법 : 합격 및 불합격 여부만을 결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미흡)로 평정한면접시험 응시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

□ 응시자 주의·확인사항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5(등)급 공채의 경우,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e면접시험 장소 공고문"을 통해 면접일시 및 면접장소를 확인하여야 함
- 면접시험 시행 7일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한 면접시험 개인별 응시일정을 확인하여야 함
- 면접시험일에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필기구를 지참하여 지정시간까지 면접시험 응시자 대기장에 입실하여야 함

□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 3차(면접) 시험 강화

- 정예 외교인력 선발을 통해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0년도 부터 심층면접기법을 도입하는 등 3차 시험을 강화
- 심층면접에서는 1박2일 합숙 등 면접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개인 및 집단 역량평가, 영어 집단토론 및 개별 심층면접 등 다양한 면접기법을 활용하여 외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외교역량, 어학능력, 가치관·태도 등을 검정
 - 기존 면접방식 : 모의협상 90분, 개인발표 15분, 심층면접 25분
 - 심층 면접방식 : 역량평가(개인발표 및 집단평가), 집단토의, 자유면접, 영어 능력평가 및 개별면접 등 실시

※ 세부 내용은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공고시 별도 안내

Q	【면접시험 평가요소】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요소별 배점은?																
A	<p>면접시험의 평가요소는</p> <p>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접시험에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합니다만, 각 평정요소별로 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면접시험 평정결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최종 불합격 처리됩니다.</p>																
Q	【필기시험 성적반영 여부】 면접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은 어느 정도 고려되니까? 필기시험 성적이 좋아도 면접에서 불합격될 수 있나요?																
A	<p>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관,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발표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상 필기시험과는 다른 별도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당락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결과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성적이 좋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p>																
Q	【면접운영방식】 시험별 면접방법과 절차, 소요시간은?																
A	<p>면접시험은 연도별·시험별로 방법 및 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5(등)급 공채의 경우,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하는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문" 및 면접시험 시행 7일 전에 공고하는 "면접시험 응시요령" 등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p> <p>■ 참고 ■ 2011년도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운영 방식</p> <table border="1" data-bbox="255 1624 1165 1803"> <thead> <tr> <th>구분</th> <th>면접위원</th> <th>집단토론</th> <th>개인면접 (개인발표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5(등)급공채</td> <td>3인</td> <td>90분</td> <td>40분</td> </tr> <tr> <td>7급공채</td> <td>3인</td> <td>×</td> <td>35분</td> </tr> <tr> <td>9급공채</td> <td>2인</td> <td>×</td> <td>25분 (개인발표 미 실시)</td> </tr> </tbody> </table>	구분	면접위원	집단토론	개인면접 (개인발표 포함)	5(등)급공채	3인	90분	40분	7급공채	3인	×	35분	9급공채	2인	×	25분 (개인발표 미 실시)
구분	면접위원	집단토론	개인면접 (개인발표 포함)														
5(등)급공채	3인	90분	40분														
7급공채	3인	×	35분														
9급공채	2인	×	25분 (개인발표 미 실시)														

Q	【개인발표 평가요소】 개인발표 면접방식에서의 주요 평가요소는 무엇입니까?
A	개인발표 면접방식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의 면접으로, 개별면접으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자질 즉,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나 기타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면접방식입니다. 면접위원은 수험생에게 특정 역량과 관련된 발표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이 때, 발표내용의 타당성, 논리성 및 현실성 등을 평가하며, 더불어 프리젠테이션 스킬을 평가합니다.
Q	【개인발표문 작성방법】 "개인발표내용 작성용지"를 작성할 때 별도의 지정된 형식이 있는지요? 그리고 작성내용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요?
A	발표내용을 작성할 때, 별도로 지정된 형식은 없습니다. 응시자 본인이 면접위원 앞에서 발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어구를 나열하거나,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셔도 되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도형이나 그림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발표시에는 작성한 용지의 원본을 가지고 발표하며, 사본은 면접위원에게 제공됩니다. 물론, 응시자가 작성한 개인발표 서면내용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응시자가 실제 발표한 내용과 프리젠테이션 스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Q	【면접강화를 위한 그간의 조치】 무자료 면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응시자간 변별력을 따지기 위해 마련한 장치가 있는지요?
A	2004년 이전까지는 5급공채시험은 약 10분, 7급과 9급은 5분~7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면접시험이 이루어졌고, 질문내용도 감명깊게 읽은 책, 존경하는 인물 등 직무와 크게 무관한 신변잡기적 질문이 다수였습니다. 이러한 형식화된 면접을 지양하고, 응시자의 직무역량과 공직적격성을 실제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5급공채시험은 40분, 7급은 35분, 9급은 25분으로 면접시간을 연장하였으며, 더불어 면접질문도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면 개편하였고, 면접위원마다 제각각이던 질문도 전체를 통일시킨 구조화된 질문을 개발·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래 2인이었던 면접위원을 헤드헌터 등 민간 인사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으로 증원하고, 개인발표 면접방식을 도입·시행함으로써 면접의 변별력을 크게 강화하여 오고 있습니다.

Q	【자의적 판단방지】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까?
A	먼저, 면접위원의 주관과 자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면접위원이 특정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높게 또는 낮게 주는 것은 자의적인 행위로서 현재 시험관리 체계는 면접위원의 자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면접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질문과 답변 기준을 표준화 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직급·직렬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질문과 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면접시험 시작 전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통해 이를 충분히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재량행위임을 법원도 인정(대법원97누11911, 대법원 2008두8970)하고 있으므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의 주관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Q	【필기시험 성적 반영】 면접시험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기시험 성적을 일정 부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A	정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 지식측면은 필기시험으로, 기타 측면은 면접시험에서 검증하는 것이 시험제도의 본래 취지입니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요소들 즉,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별개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면접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면접시험의 본래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필기시험 성적과 면접시험 성적을 합산할 경우, 필기시험 고득점자는 면접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시험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합산하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면접시험 결과 공개요구】 면접시험 평정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A	면접위원의 평정결과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면접시험의 속성상 다의적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正合性) 여부를 둘러싼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접위원이 면접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송 등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면접에 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고등법원 99누12375 참조)

Q	<p>【면접시험의 평가방식】 면접시험에서는 업무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며, 이에 따라 합격, 불합격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대평가라니요?</p>
A	<p>면접시험이 각 응시자별로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면접시험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일부로서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당해 직렬의 직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최종선발인원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자들 상호간의 상대평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판례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서울고법 2000누11439 참조)</p>
Q	<p>【병역미필 또는 저연령자 불이익】 면접시험에 병역미필자나 연령이 낮은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정을 받아 불합격될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p>
A	<p>그러한 내용은 터무니없는 내용입니다. 면접위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의 평정요소별로 응시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역량 및 공직관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지, 병역을 마쳤는지 여부나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병역이행여부나 수험생의 연령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p>
Q	<p>【공무원 재직사실】 저는 과거에 공무원 재직경험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다시 공직의 문을 두드리는데 면접위원이 저의 공무원 재직사실을 알고 있나요?</p>
A	<p>우리부에서 시행하는 면접은 응시자의 학력, 경력 등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한 응시원서의 사진과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제외), 면접시험실 입실 전에 응시자가 작성한 "사전조사서"(봉사활동경험, 자신의 장점과 단점 등)입니다.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과거의 공무원 재직 및 퇴직사실은 귀하가 언급하지 않는 한 시험주관기관 및 면접위원이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면접위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거의 재직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사항입니다.</p>
Q	<p>【선발예정인원 미충족】 제가 응시한 모집단위의 선발예정인원은 38명인데, 면접을 본 인원이 38명입니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자가 없는 것인가요?</p>
A	<p>"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및 제25조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면접위원이 특정 수험생에 대하여 공직적격성 등의 부족을 이유로 불합격에 해당되는 면접평정을 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불합격처분을 하게 됩니다. 민간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도 우수인재의 채용이 중요하므로 단순히 채용인원을 충족하기 위해 공직부적격자를 선발하지는 않습니다.</p>

Q	【조별 탈락】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자를 면접조별로 할당하여 최종 불합격자를 선정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시험단위별 응시인원이 많음에 따라 10~16명 단위로 조를 구분하여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시험방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조별로 불합격인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부합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면접시험 종료 후 각 면접조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면접위원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직렬별 최종불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Q	【면접위원의 질문】 전공이 뭐냐는 질문에 통계학을 전공했다고 했더니, 면접관 한분이 통계학 전공자가 왜 농업직을 지원했느냐며,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7급공채에서 탈락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A	면접위원은 35분의 면접시간 동안 응시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5개 평정요소별로 해당 응시자의 공직관 및 직무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항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의 사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어진 면접위원의 후속질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내용을 근거로 평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언급한 사항만으로 면접시험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위원은 면접시간 35분 동안 이루어진 개인발표 및 개별면접의 전체 질의·답변 내용을 고려하여 평정을 하며, 면접위원 3분이 작성한 "면접시험 평정표" 결과를 토대로 최종 당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응시자는 하나의 질문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개인발표 및 개별면접의 전체 질의·답변내용을 꼼꼼이 따져보시고, 부족한 점을 발견하여 다음 기회에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면접시험일자 조정】 2011년도의 경우 7급 공채시험 면접기간이 10.27.~10.29.이더군요. 이 기간 중에 면접일이 정해질텐데 만약, 제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면 면접일을 조정요청할 수 있나요?
A	동일직렬의 면접시험은 동일일자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수험생 개개인의 사정으로 면접일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부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공고문"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

-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함)

□ 성적 공개 시기

- 5(등)급 공채시험 : 3회
 - 1차시험 응시자 전체 성적공개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 2차시험 불합격자 성적공개 :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 2차시험 합격자 성적공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공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 발표후 1년간 확인 가능

□ 성적확인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마이페이지 > 성적확인에서 확인

□ 채용시험 각종통계 공개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자료실 > 시험통계에서 확인
- 직렬별 합격인원 및 합격선, 여성합격현황, 연령 분포현황 등

Q	【필기시험 성적 확인】 필기시험 성적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p>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로그인 한 후 “마이페이지” > “합격/성적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ID나 PW를 잊어버리신 경우 E-mail 또는 SMS로 임시 PW를 받아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p> <p>* 임시 비밀번호 변경방법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 비밀번호 변경</p>
Q	【필기시험 성적에 가산점 포함여부】 7·9급 필기시험 성적은 가산점이 포함된 점수인지요?
A	그렇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필기시험 성적은 가산점이 포함된 점수입니다. 다만, 모든 가산점은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였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Q	【시험위원 명단 공고】 공채시험 출제위원 명단이 공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공고가 되는지요?
A	출제위원 명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2월 말경에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Q	【면접시험 성적확인】 면접시험 성적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나, 면접시험은 합격, 불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점수화하지 않는 시험이므로 면접점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유공자 커트라인 확인】 9급공채 채용통계에서 합격선 부분에 제가 응시한 직렬은 별도의 유공자 합격선이 없던데 몇 점인지 알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의 합격선은 해당 직렬에서 국가유공자 30% 상한규정이 적용되었을 경우의 합격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합격선이 따로 없는 직렬은 국가유공자 30%상한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응시한 시험단위에 별도의 유공자 합격선이 없다면 비유공자와 합격선이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 근거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합격증명서등의 발급)

□ 발급대상

○합격증명서 : 5·7·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 증명

○합격확인서 : 5·7·9급 공채시험 제1차 및 제2차시험의 합격 확인

□ 합격증명서(확인서) 발급 방법

구분	온라인 발급	방문 발급
발급 장소	민원24 (www.minwon.go.kr)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발급 방법	신청자 프린터로 출력	직접 발급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신분증
비 용	무료	1통당 200원(수입인자)

■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메인화면의『합격증명서 발급신청』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Gosi Center (사이버국가고시센터). The navigation bar includes '시험안내', '원서접수', '시험문제/정답', '면접시험', '채용후보자', '자료실', '온라인지원', and '마이페이지'.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several sections: '최근소식 및 공지사항', '원서접수', '응시표출력', '합격 및 성적조회', and '시험절차안내'. At the bottom, there is a '시험일정' (Exam Schedule) table and a '합격증명서발급' button highlighted with a red box. Other buttons include '나리일터', '장예인구직신청', and '합격증명서발급' (repeated).

5급(행정직)	5등급(외무직)	5급(기술직)	7급공채	9급공채		
원서접수	1차시험	1차합격자발표	2차시험	2차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6 ~ 8.27	2.26	4.20	6.28 ~ 7.2	10.12	11.11 ~ 11.12	11.23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신청, 신청자 프린터에서 발급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에 방문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합격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1통당 2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부착(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판매)

※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5층(교통편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9. 공직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 채용후보자 등록

- 2005년 이후 공채시험의 채용후보자 등록은 인터넷으로만 실시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 → 채용후보자 → 채용후보자등록
 - ※ 채용후보자 등록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효력이 상실됨

□ 임용결격사유 존부 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검찰청법 제50조, 외무공무원법 제9조)

- 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후,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
 - 공안기관의 신원조사, 중앙징계위원회의 비위면직 조회, 등록기준지 시군구의 신원조회 등
- 5(등)급 공채는 행정안전부에서, 7·9급 공채는 각 임용예정부처에서 확인

□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2조, 제12조의 2, 제14조, 외무공무원법 제11조)

- 각 부처에 임용추천하기 위해 모집단위별로 성적순(5(등)급 공채의 경우, 제2차시험 성적순)에 의해 명부를 작성하며,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는 개별적으로 통지함
-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 5년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 2년 (7급 외무영사직은 3년)

check point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여 복무한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됨(의무복무기간 : 현역 입대자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전투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전문요원 등의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을 말함)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채용후보자가 임용추천을 받은 후 해당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때
 -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하거나
 - 교육수료점수 미달 및 교육 중 퇴학처분 등을 받은 경우

□ **임용추천, 임용유예**(국가공무원법 제39조, 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13조의 2)

-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및 임용추천
 - 채용후보자명부 등록번호순(개인성적순) 및 개인희망을 반영하여 추천부처 결정
 - 행정안전부는 채용후보자들이 선택한 부처에 해당 합격자를 임용 의뢰
- 임용(추천)의 유예
 - ‘학업의 계속’,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추천의 유예 신청가능
 - 임용(추천)의 유예는 1년 단위로 실시, 5급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신청, 7급·9급의 경우 임용추천된 부처에 신청
 - * 채용후보자가 임용(추천) 유예를 신청하면 임용권자 등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임용유예 여부를 결정하며, 인력관리상 임용유예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추천)유예의 철회 및 연장**

- 임용(추천)유예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추천)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임용유예철회원 및 관련증명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임용유예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유예 연장신청서와 관련증명서 제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받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① 신원진술서 2부 " 동일한 사진(3cm × 4cm) 3매 부착 " 신원조회용
- ② 가족관계등록서류 5종 각1부 " 신원조사용
 -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부 " 인사부서 보관용
 - ※ 호적편제사유와 신분사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④ 주민등록초본 1통(군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1통 추가) " 호봉산정시 참고
- ⑤ 최종학교졸업(재학·휴학·재적)증명서 1통
 - ※ 졸업증서 사본이나 검정고시합격증 사본도 가능함
- ⑥ 경력증명서 1통(공무원경력 또는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해당자)
- ⑦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⑧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참고】 주요 공채시험 직렬별 직무 개요

직렬(직류)	직무개요	비고(시험 시행 계급)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직류로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법령입안 및 관리 감독업무 ○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직과 법무행정직의 경우 각 부처의 수요에 따라 해당 부처임용 (전 부처 대상) ○ 재경직과 국제통상직의 경우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외교통상부 등 재정·경제 관련 부처에 주로 임용 ○ 교육행정직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직 : 5급, 7급, 9급 *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직 : 5급 * 교육행정직 : 5급, 7급, 9급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로 임용 * 시험 시행 : 5급
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 ○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로 임용 * 시험 시행 : 5급, 7급, 9급
보호 (구 소년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 소년의 자질을 분류·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 제공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감독 등 소년보호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로 임용 * 시험 시행 : 5급, 7급, 9급
보호 (구 보호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 ○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 구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검찰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검찰사무의 보조 ○ 국가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검찰청으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직렬(직류)	직무개요	비고(시험 시행 계급)
출입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의 출·입국 허가 ○ 출·입국 관리사범의 단속·수사 및 조치 ○ 외국단체의 등록·활동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공업(일반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철도차량·공작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농업기계와 냉난방·원동기·수도·위생설비·계량기 등 각종 기계기구·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 운용이 있는 부처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공업(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시설·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품·전력생산 등의 전기기술 분야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과학기술·산업관련 부처와 그 밖에 전기기술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공업(화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및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부처와 그 밖에 화공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으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공급 등 산림 자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 ○ 임산물 이용가공, 목재가공 등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산림청으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시설(일반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 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 설계, 측량 제도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토목 기술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직렬(직류)	직무개요	비고(시험 시행 계급)
시설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준공검사 ○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토목기술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조정 ○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운용 ○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로부터 수요가 있을 경우 전 부처대상 임용 가능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방송통신 (통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무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각종 통신시설의 설계·공사·감독·유지·보수 ○ 기술·역무제공에 따른 시설의 신설·증설·유도·수탁업무 등 통신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을 비롯하여 수요가 있는 부처 임용 * 시험 실시 : 5급
방송통신 (전송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지·보수 ○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등 통신정책에 수반한 장거리 통신시설의 신·증설 ○ 국가안보통신·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업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등을 비롯하여 수요가 있는 부처 임용 * 시험 실시 : 7급, 9급

※ 직렬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부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직, 세무직 등 특정 부처로 배정되는 직렬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해당 부처의 기능이나 업무소개 등을 참고하기 바람

※ 직급별 시험시행여부는 각 부처의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초에 공고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를 반드시 참고 바람

Q	【대리등록】 제가 해외에 체류중인 관계로, 등록기간내에 등록이 어렵습니다. 저 대신 부모님이나 친구가 대리등록을 해도 가능합니까?
A	채용후보자 등록은 반드시 등록기간 중에 해야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없을 경우, 부모님이나 친구를 통해서라도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되고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Q	【등록서류 성명 불일치】 등록서류를 떼어보니,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의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혹시 이름을 잘못 적었다고 불이익을 주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상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필요시 법원에 개명신청 등을 하여야 함) 이후 법원 판결문 등의 증명서류와 함께 인적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채용후보자 이중등록】 국가직의 다른시험이나 지방직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둘 이상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도 됩니까?
A	채용후보자 등록은 중복되어도 됩니다. 가령, 국가직 9급에 합격한 후 지방직 7급에 합격하고, 다시 5급공채시험에 합격하였다면 각각 채용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둘 이상의 기관에 임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7급으로 임용되기 전에 9급 임용을 포기(또는 사직)하거나, 5급으로 임용되기 전에 7급 임용을 포기(또는 사직)하여야 합니다.
Q	【부처 배정】 7급 공채시험 행정직에 합격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면 기획재정부로 배치 받을 수 있나요?
A	<p>현재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margin: 10px 0;"> <p>1.채용후보자 명부 및 등재순위(성적순) 작성 ⇒ 2.채용후보자 인원과 부처별 수요를 고려하여 부처별 배정인원 확정 ⇒ 3.명부등재순위 및 부처별 배정인원 공개 ⇒ 4.채용후보자 소집 ⇒ 5.명부등재 선순위자부터 희망부처 선택</p> </div> <p>따라서, 모든 채용후보자가 본인이 원하는 부처에 배치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가령,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임용예정기관에서 동 자격증 소지자를 원할 경우 등재순위에 관계없이 특별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p>

Q	【신체검사서】 5개월 전에 채용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A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신체검사서라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Q	【편입학과 임용유예】 올해 합격하고, 내년 초에 편입을 해서 졸업 후 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5급이상 5년, 6급이하 2년)내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와 같은 제도는 사실 민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어느 기관이나 조직이든 채용의 목적은 다음 연도나 필요한 때에 즉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시험을 통한 채용의 목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학력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학업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도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자(채용후보자)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임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상 일반적으로 시험합격 당시의 학업을 마칠 때까지만 임용유예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편입이나 휴학, 진학 등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합격 후 바로 복학을 하여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Q	【임용유예 미승인】 공무원임용령상의 임용유예사유가 있다면 무조건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A	우리부에서 매년 초에 공고하는 채용인원은 다음년도 국가기관의 인력수급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년도에 채용된 인원은 다음년도에 모두 임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 임용을 유예하여 주지만, 이 경우도 국가인력수급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용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임용유예 기간】 7·9급공채 합격자로서 대학교 2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중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1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던데요?
A	7·9급 채용후보자가 임용유예를 신청할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5급의 경우는 5년)의 범위내에서만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의 범위내에서 학업을 마치시고 임용에 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용에 불응할 경우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1년 연장은 필요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장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용후보자에게 보장되는 임용유예신청기간은 2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임용유예 신청】 5급공채시험에 최종합격하였는데, 개인발전을 위해 임용유예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대학원 진학 등 시험합격 후 새로이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e학업의 계속" f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용유예가 승인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학원 재학중인 경우에도 국가인력수급사정으로 인해 임용유예승인이 어렵습니다.
Q	【방송통신대 재학 중 임용유예】 저는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방송통신대 재학 사실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가능합니까?
A	방송통신대 재학생의 경우,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업의 계속에 따른 임용유예는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 인해 학교출석을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일정기간 임용을 유예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방송통신대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동안 출석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용이 학업의 계속을 방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용유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w국가공무원복무규정"x에는 방송통신대 수업(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을 위해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임용 후에도 얼마든지 학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Q	【임용유예기간 중 어학연수 가능여부】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휴학을 할 수 있습니까?
A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은 유예사유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학연수나 휴학으로 인해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야간대학 재학시 임용추천유예】 현재 야간대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용추천유예가 가능합니까?
A	임용유예제도의 근본취지와 야간대학의 수업은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용추천유예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대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임용추천유예가 불가합니다.

Q	【군 복무기간의 임용유예기간 산입여부】 대학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7급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내년엔 군 입대도 해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군 복무기간은 명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제대한 후 학업을 위해 1년간 임용(추천)유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직업군인의 임용유예 가능여부】 군 복무기간은 임용유예 가능기간 2년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7급을 합격하고, 남은 복무기간 5년을 마친 후에 임용될 수 있습니까?
A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병역법상의 의무복무가 아닌 직업군인의 경우는 군 복무기간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귀하는 군 복무를 사유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채용후보자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임용을 받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므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Q	【군 장학생의 임용유예】 제가 군 장학생 신분으로 졸업 후 7년간 장교로 복무해야 하는데, 군 입대 전에 7급을 합격하고, 군 복무를 사유로 7년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A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기간을 벗어나는 기타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상 의무복무기간인 2~3년(장교 3년, 육군사병 2년, 해군사병 2년2월, 공군사병 2년4월)간의 기간만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군 의무복무기간(최대 3년)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4년간 군복무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용유예가 가능한 기간은 2년(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어 연장하는 경우 3년)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군 장학생 등의 사유로 7년간 복무를 해야 하는 상태에서 올해 7급 시험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종료 후에 공무원으로 임용 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재추천 가능여부】 원하지 않는 부처로 추천받았습니다. 타 부처로 재추천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정부 인력충원상 채용후보자별로 희망하지 않는 부처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만, 정부전체의 인력운용상 재추천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임용유예 기간】 5급공채시험 합격 후, 대학 진학을 준비하여 입학한 후 졸업까지 소요되는 5년을 임용유예 할 수 있나요?
A	행정·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의 임용유예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사정으로 가능합니다. 최종합격 당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의 신분이라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합격한 이후에 새로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라면 임용유예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용유예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Q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순서】 시험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시험성적은 가산점이 포함된 성적인가요? 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임용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A	채용후보자명부의 등록순서는 시험성적순에 의해 부여되고, 성적은 가산점까지 모두 포함한 점수입니다. 각 부처에서 임용을 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등록번호, 임용지역, 개인의 의사반영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만, 제1기준은 채용후보자등록번호 순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상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합격자에게도 위의 임용원칙이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Q	【자녀양육을 위한 임용유예 가능여부】 가정주부로 임신한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육아를 위하여 임용유예할 수 있나요?
A	임용유예는 대학 재학 등의 학업의 계속, 병역 의무수행, 6개월 이상의 질병,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각 기관의 인력운용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각 기관의 인력사정이 용이하다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결원이 계속되기 어렵다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임용유예자의 발령상 불이익 여부】 임용유예를 한 사람은 부처배치 및 임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부처배치는 시험성적과 개인희망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임용유예자라 하더라도 부처배치 및 임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본인의 성적을 부처배치시의 성적 비율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임용유예자를 별도로 먼저 혹은 나중에 부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 5(등)급 공채 ■

□ 시보임용(수습행정관·수습 외무관)

- 시보임용 기간 : 1년
- 시보임용 시기 : 중앙공무원교육원(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외교안보연구원) 입교와 동시
 - 신규자 기본교육과정 교육기간 : 5급 공채(행정·기술) - 4월~11월
5등급 공채(외무공무원) - 8월~12월
- 시보임용 기간 중 신분
 - 수습행정관·외무관은 시보기간 중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시보공무원으로 임용
 -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
 - 시보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규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처분도 가능하며,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함

□ 정규 임용예정기관 결정

- 시기 : 중앙공무원교육원 신규자 기본교육과정 수료와 동시
- 부처 임용(배정)방법 :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성적, 업무적합성, 인터뷰)에 따른 점수와 교육성적을 합산한 순위에 의해 부처 선택 우선권 부여

■ 7급 및 9급 공채 ■

□ 시보임용

- 시보기간 : 6월
- 시보임용기간 중의 신분
 -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조치 될 수 있음

□ 신규채용자 교육

- 원칙적으로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임용됨

Q	【교육수료 후 부처배정】 5급 공채시험 합격자는 중공교의 신임리더과정 수료후, 부처배정을 받게 되는데 개인희망에 따라 부처가 결정되는 것인가요?
A	부처별 인재선택기준(필기시험 성적, 업무적합성, 인터뷰)에 따른 점수와 중공교 교육성적을 합산한 순위가 가장 높은 합격생부터 희망하는 부처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위가 낮은 합격생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처에 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신규자 교육훈련】 7급공채 합격자입니다. 임용받기 전에 신규자교육이 있다던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A	신규자 교육은 각부처별 임용이 결원발생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처의 계획에 따라 신규자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자 교육에 대한 자세한 일정 등은 배치된 부처의 교육훈련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임용 전 재직기관의 사직문제】 현재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을 위해 현재의 직장에 언제 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부처에 추천된 후 곧바로 임용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받은 부처에서 임용일을 통보 받으면 그 임용일 전일까지 사표가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Q	【군 미필자 입영 연기】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로서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후, 입영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연기를 원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제1항제8호에 의거, 통지서를 발부한 지방병무청에 입영기일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연기가능기간은 2년 범위 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현역대상) 또는 복무관리과(보충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